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2. 12

정재호·이명헌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적 개발전략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성장배경에는 정부의 수출에 대한 지원제도가 큰 몫을 하였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관세환급제도도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로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관세환급을 허용함으로써 수출을 자유무역 상황으로 환원시켜 수출제품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수출경쟁력을 보장하고, 한편으로는 관세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다시 환급받을 때까지 국내 수출업체가 금융 및 행정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국내 원재료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세환급제도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여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관세환급제도는 여러 차례 절차 및 제도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변천과정이 뚜렷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별기업들의 상반된 요구에 이끌려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세환급제도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제도이다. 따라서 행정을 통한 관세환급의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환급의 행정적인 개선보다는 경제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부분균형과 일반균형분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환급제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관세율을 낮출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관세환급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업체별,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연관된 사항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다. 현재 진행중인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일명 DDA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관세율 정책을 고려할 때 각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과 함께 관세환급제도 이용실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박사와 이명헌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자료제공에 많은 도움을 준 관세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김진수 박사와 홍익대 장근호 교수,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저자들의 자료수집과 분석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주희 연구원, 봉재연 연구원, 김용대 연구원과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노고를 한 안상숙 연구조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정부의 수출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통해 국산화에 이바지한다는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197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여러 차례 절차 및 제도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변천과정이 뚜렷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세계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개별기업들의 상반된 요구에 이끌려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세환급제도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제도이다. 따라서 행정을 통한 관세환급의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환급의 행정적인 개선보다는 경제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의 자유무역상황으로 국내생산과 수출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부분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국산화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관세부과와 함께 실시된 관세환급제도는 국내 소비를 억제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는 정부가 수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유지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른 나라들의 정책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개발 초기 수출 등

을 위해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후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전면세제도에서 관세환급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그 후 관세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관세환급제도에 의한 문제점이 부각되게 되면, 관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보세제도 등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책 수순이다.

이러한 추이에 견주어 분석한 결과 현 상태의 세수입을 유지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고 관세환급제도도 폐지할 경우 지금의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후생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로 관세환급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견해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분석에는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관세환급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 및 행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 및 순응비용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의 축소 또는 폐지와 이에 따른 관세율의 인하가 국민경제적으로 적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관세환급과 관련된 여타 비용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이는 또 다른 연구의 주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관세수입 대비 환급액 비율이 0.5%에서 2% 수준인 일본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38%로 매우 높기 때문에 환급 관련 비용도 높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환급제도 폐지와 함께 관세율 인하정책은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부분균형분석에서 이용하였던 수출지향적인 정책 가중치이다. 위의 관세제도 폐지에서는 수출에 대한 정책적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출증대에 대해 정부가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관세환급 유지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부의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왔다. 개별환급이 전체 환급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2001년 기준 94.2%)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액환급은 향후에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비중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수입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8.4%로 미국의 약 2% 수준, 일본의 0.5%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 이처럼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수출지향의 가공수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재료, 특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미미한 면세제도 및 보세제도의 이용 부진,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원재료의 관세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높은 환급비율은 관세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환급업무가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1997년 시행된 관세환급제도의 개편은 사후정산제도(일괄납부제도)를 신설하여 관세환급제도의 두 가지 목표 중 국산화 장려는 사실상 포기하면서 수출지원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부분균형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도 관세환급제도가 국산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과 일맥상통하여 사후정산제도는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재료수입에서 환급을 받기까지 약 100여일이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이와 연관된 여타 비용을 감안할 때 사후정산제도는 사전관세면세와 상당히 가까운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수는 약 200여개이며, 그 금액도 전체 환급액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업체별·산업별 관세환급 실적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수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총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0.33%이지만 나머지 약 3만여개의 기업들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상위 20개 기업에 비해 높았다. 이는 놀라운 결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많은 큰 기업에 비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한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쉬우나, 이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공업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이 관세환급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정액환급 중에서 가장 많은 정액환급을 받는 산업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섬유·식품산업의 정액환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 예로 1998년의 경우 정액환급의 절반 이상이 섬유 및 가죽제품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개별환급을 받은 수출액이 정액환급을 받은 수출액보다 많았지만, 단 인쇄·출판 및 복제는 예외적인 산업으로 정액환급을 받은 수출액이 더 많다. 이런 특징은 아마도 이들 분야에 중소기업 규모의 수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정액환급 대상 품목 선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관세율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다. 이번의 WTO DDA협상을 위한 관세율 정책을 고려할 때 각 산업별 관세환급제도 이용을

함께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경공업의 음식료품과 중공업의 석유제품의 환급비율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섬유 및 가죽제품의 환급이용도 눈에 띈다. 이들 산업의 관세율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1980~1995년 사이에 국내 부가가치는 중공업, 경공업, 광산품, 농수산품의 순으로 증가해 왔으며 중공업은 연도에 따라 경공업의 2~3배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왔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중공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경공업에서도 음식료품과 섬유·가죽제품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매우 낮아 농림수산품에 가깝고 이외 인쇄·출판 및 복제는 중공업의 평균치 수준이며 목재·종이도 높은 편이다. 한편 중공업 가운데는 전기·전자기기와 수송기계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어서 3~5배에 이른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 투입된 일정 규모의 자원으로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중공업 가운데 전기·전자기기와 정밀기기 등이 크고 농림수산품과 섬유·가죽제품 등은 작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에 자원이 배분되도록 관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 다른 제조업보다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음식료품과 석유제품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이유로 관세환급 이용도 높다고 여겨지므로, 관세환급 등을 고려하여 섬유 및 가죽제품과 음식료품의 관세율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환급제도를 없앨 경우 전자기기 및 수송장비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제한된 자원을 이용

하여 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큰 산업에 자원을 배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하나 눈에 두드러지는 산업은 석유제품으로 전 산업 중에서 관세환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산업으로 2000년 환급액이 5,644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25.8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환급액을 받고 있는 자동차 및 부분품의 환급액이 1,483억원임을 감안할 때 4배 이상 되는 매우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석유제품의 환급액이 가장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석유제품의 가장 대표적인 원재료인 원유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원유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이 안 되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여타 비경쟁 원재료의 관세율 수준인 0~2%에 비해 5%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균형분석에서 검토한 대안 3에서 나타났듯이 광산품(원유 등) 등 5개 부분의 관세를 1%로 대폭 낮추고 관세환급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정태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중간재의 생산수준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산업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또다른 대안 1과 대안 2의 결과가 제시하듯이 일정부분 관세율을 낮춤으로써 환급제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많은 환급액을 수령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여타 비용을 고려하면 국민경제적으로 나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¹⁾.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기기 부분품의 경우

1) 원유관세 인하에 따른 국내의 석유소비 증가를 염려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국내 석유소비에 대한 조절은 내국세(교통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등)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휘발유를 기준으로 주유소 판매액의 약 70%가 세금이며 관세는 판매액의 약 0.8%를 차지하여 매우 미미하다.

환급받은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 1/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전체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도 0.38%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ITA 협정 등에 의해 무세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무세화 추세는 2004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도 이들 산업의 환급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관세율과 환급제도와의 관계를 볼 때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면서도 낮은 관세율로 환급에 대한 의존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에 따른 비용도 적을 것이며, 이러한 낮은 관세율이 절대 수출액과 관계없이 환급제도의 이용의 낮춤을 보여주고 있다.

목 차

I. 서 론	21
II.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25
1. 관세환급제도 개요	25
가. 관세환급의 개념	25
나. 관세환급의 목적	27
2.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	30
가. 관세율 조정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30
나. 보세제도를 이용한 수출지원	32
다. 감면세제도	35
라. 상계제도	36
3.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실시배경 및 관련 법규	39
가. 도입 배경	39
나. 관세환급특례법 제정	41
다.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및 주요 내용	42
4. 관세환급제도 종류	46
가. 개별환급제도	46
나. 정액환급제도	54
III.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63
1. 관세환급실적	63
가.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의 환급실적	64
나. 관세수입과 환급액	66

2. 기업체 환급실적	71
3. 산업별 환급실적	80
가. 경공업 분야	83
나. 중공업 분야	86
다.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88
라. 개별환급과 정액환급 이용	90
IV.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고찰: 부분균형분석	114
1. 모형 도입	116
가. 소국경제모형	116
나. 소국의 목적함수	118
2. 국산 원재료가 없는 경우	119
가. 자유무역 상황	119
나. 수입 원재료에 관세 부과	121
다. 사전관세면세 및 관세환급효과	123
라. 완제품에 관세 부과	126
마. 소국 정부의 목적함수	130
3. 국산 원재료 생산이 가능한 경우	132
가. 국산화 수준이 낮은 경우	133
나. 국산화 수준이 높은 경우	138
4. 관세환급비용과 국산화 촉진	142
5. 요약 및 평가	144
V. 관세환급제도 폐지시의 경제적 효과: 일반균형분석	148
1. 모형의 구조	149
2. 자료 및 모수설정	152
3. 정책변화와 그 경제적 효과	156
가. 정책대안	156

나. 정책효과	158
4. 소 결	163
VI. 요약 및 결론	166
1. 현 황	166
2.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분석	168
3. 향후 방향	170
4. 결 어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 산업별 관세환급제도 현황(1990~1994년)	179
부록 2.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부표	182
부록 3. 일반균형계산모형의 구조	186

표 목 차

<표 II- 1> 상계제도의 운영 현황	38
<표 II- 2>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주요 내용	45
<표 II- 3> 개별환급제도의 환급 실적	49
<표 II- 4> 선환급·후정산제도의 운영 현황	51
<표 II- 5> 선지급·후심사제도의 운영 현황	53
<표 II- 6> 일괄사후납부제도의 운영 현황	54
<표 II- 7> 정액환급제도의 환급 실적	56
<표 II- 8>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운영 현황	57
<표 II- 9>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의 운영 현황	61
<표 III- 1> 정액환급과 개별환급 비중(건수 기준)	65
<표 III- 2> 기본 관세율 구조 변화 추이	68
<표 III- 3> 미국과 일본의 관세수입 대비 환급비율	69
<표 III- 4> 개별환급기준 환급실적 누계치	74
<표 III- 5> 개별환급기준 수출대비 환급 비중	75
<표 III- 6> 정액환급기준 환급실적 누계치	76
<표 III- 7> 정액환급기준 수출대비 환급 비중	77
<표 III- 8> 총수출액기준 환급실적 누계치	78
<표 III- 9> 총수출액기준 수출대비 환급 비중	79
<표 III-10> 2000년 기준 기본 및 실행관세율의 가공도별, 품목별 평균관세율	82
<표 III-11> 부가가치증가율, 무역특화지수, 수입의존도의 변화 ..	89
<표 III-12> 산업별 관세 환급제도 이용 현황	92

<표 III-13> 산업별 개별 관세 환급제도 이용 현황	93
<표 III-14> 산업별 정액 관세 환급제도 이용 현황	94
<표 III-15> 산업별 환급수출비중 현황	95
<표 III-16> 환급액과 환급받은 수출액	96
<표 III-17> 개별환급액과 개별환급받은 수출액	98
<표 III-18> 정액환급액과 정액환급받은 수출액	100
<표 III-19> 환급액 비중(1998년)	102
<표 III-20> 환급액 비중(1999년)	104
<표 III-21> 환급액 비중(2000년)	106
<표 III-22> 총수출액과 환급받은 수출액(비율)	108
<표 III-23> 총수출액과 환급받은 수출액(전체비중)	110
<표 III-24> 환급액 대비 총수출액과 환급받은 수출액	112
<표 V- 1> 사회계정행렬의 개요	150
<표 V- 2> 산업별 환급액	154
<표 V- 3> 환급액의 수출액 및 수입액 대비 비율	155
<표 V- 4> 관세환급폐지와 실질세수 중립적 관세율 인하의 효과	159
<표 V- 5> 대안별 생산효과	162
<표 V- 6> 관세환급폐지와 사전적 명목세수 중립적 관세율 인하의 효과(수출입)	163
<부표 1> 관세환급제도의 산업별 이용 현황	179
<부표 2> 정액환급제도의 산업별 이용 현황	180
<부표 3> 개별환급제도의 산업별 이용 현황	181
<부표 4>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의 비중	182
<부표 5> 관세수입 대비 환급실적	183
<부표 6> 관세수입액, 환급액, 수출액의 비교	184

<부표 7>	IO28 교역재산업 총내수 수입의존도 추이	185
<부표 8>	노동자본 대체탄력성과 전환탄력성	197
<부표 9>	모형에 사용된 국산재-수입재간 대체탄력성	198

그림 목 차

[그림 II-1]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의 산출	47
[그림 III-1] 정액환급과 개별환급 비중(금액 기준)	65
[그림 III-2] 관세수입과 환급액	66
[그림 III-3] 총관세징수액과 환급액	67
[그림 III-4] 환급비율 변화 추이	69
[그림 III-5] 관세수입액, 수출액, 환급액의 비교	70
[그림 III-6] 총수요 수입의존도	85
[그림 III-7] 중공업 수입의존도	85
[그림 III-8] 부가가치 비중 변화	88
[그림 IV-1] 수입 원재료에 관세 부과	120
[그림 IV-2] 수입 완제품에 관세 부과	128
[그림 IV-3] 국산화 수준이 낮은 경우	135
[그림 IV-4] 국산화 수준이 높은 경우	139

I. 서 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적 개발전략을 이용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성장배경에는 정부의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큰 몫을 하였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관세환급제도도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이는 관세환급특례법 제1조(목적)¹⁾에도 나와 있듯이, 첫째는 능률적인 수출지원이고, 둘째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 수출업자가 관세환급을 통해 수출제품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수출을 지원하고, 또 한편 관세환급은 사전관세면제와는 달리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다시 환급받을 때까지 국내 수출업체가 금융 및 행정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려는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 및 행정상의 여타 제반비용은 국산 원재료의 보호를 유도할 수 있지만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는 1975

1)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 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년 처음 실시된 이후 여러 차례의 제도적 변화를 겪어 왔다. 제반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간편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별환급보다는 정액환급을 더 이용하게 하려는 노력과 함께 기존 제도를 대체하여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는 제도적 변화가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²⁾.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한 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별환급의 이용은 금액기준 거의 대부분(94.2%, 2001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총환급액은 약 2조 3천억원으로 전체 관세징수액의 약 28%를 다시 환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³⁾. 따라서 여전히 금융 및 행정상의 큰 제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경제에서 관세환급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관세환급제도는 원래부터 복잡한 제도이다. 원자재수입 근거를 밝히고 이를 수출재에 체화시킨 정도(원재료 소요량)를 증명하여, 그 품목을 수출했음을 밝혀야 한다. 한편 경제가 발전할수록 품목수가 증가하고 기술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증명사항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EDI시스템 도입 등으로 환급신청 및 결제에는 상당한 시간절약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환급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빠르고 단순하고 정확한 환급은 근본적으로 이루기 불가능한 과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복잡한 관세환급제도에서 행정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잦은 행정 개편은 오히려 이미 안정된 제도에 혼란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행정적 제도개선보다는 현재 관세환급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

2) 그 동안 관세환급특례법은 8번,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31번과 28번 개정되었다.

3) 2001년 관세수입액은 5조 9천억원으로 관세수입액 대비 관세환급액 비율은 38.4%이다.

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여 향후 관세환급제도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본고는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와 정책적 과제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환급제도 유지의 목적을 고려해 봄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개별 산업과 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롭게 본고에서는 관세환급제도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관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그 해답은 환급과 관련된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후생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시도한 것도 이번 연구의 또 하나의 의의라고 여겨지며, 정책당국에게도 하나의 잣대를 제시했다고 여겨진다. 이 밖에 제한된 환급자료이지만 산업별, 업체별 환급제도 이용 실적을 새롭게 분석하여 향후 WTO 협상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세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환급제도의 개념, 관세환급법 개정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관세환급제도의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개관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환급제도와 연관될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개관한다. 제Ⅲ장에서는 현행 관세환급제도의 운영 현황 및 특징 등을 업체별 그리고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우선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환급제도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수출에 대한 가중치 및 수출 증대의 의미를 분석하고, 제Ⅴ장에서는 일반균형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일반균형계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모형)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와 환급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관

세율을 낮출 경우의 사회 후생 변화를 서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여 이를 검토함으로써 환급제도의 경제적 의미를 분석한다. 제VI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II.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1. 관세환급제도 개요

가. 관세환급의 개념

1) 관세환급의 종류

환급이란 국가가 부과 혹은 징수한 조세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조세환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조세의 과오납(過誤納)으로 인한 환급과 물품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다⁴⁾.

이 중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⁵⁾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세환급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⁶⁾.

첫째,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납부해야 할 관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것이 확인될 경우 그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과오납환급이다. 이 제도는 관세환급 계산의 착오, 관세를 적용의 착오, 또는 관세평가지 과세가격 평가의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4) 조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은 국세기본법과 각 개별 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5)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징수하는 조세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이 중 관세환급특별법에서 관세 등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를 의미한다.

6) 김진수·장근호(1997), p. 21~22.

둘째,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수입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위약환급이다. 이 제도는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수입업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된다.

셋째, 수출용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다.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관세가 국내 기업이 수출을 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환급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환급의 거의 대부분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국한하기로 한다.

2) 관세환급의 요건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 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 혹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⁷⁾. 또한 관세환급법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생산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 금형, 포토마스크 등과 연료, 기름 등 에너지 요소는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었던 당해 원재료

7) 관세환급법 제3조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도 해당되어 환급대상이 된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8)고 법에서 언급하고 있다(8).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과 함께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혹은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한다. 환급신청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해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9). 또한 수입신고수리일이 수출신고수리일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환급이 가능하다. 즉 선수입 후수출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관세환급은 최종 수출자만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중간 원재료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아직 수출되지 아닌 상태이기에 중간 원재료를 공급한 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환급대상수출은 일반 유상수출 이외에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수출, 국내에서의 외화판매·외화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 등의 물품공급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나. 관세환급의 목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가장 큰 목적은 관세환급법 제

8) 관세환급법 제3조

9) 1997년 7월 1일 이전에 수입한 원자재는 1년 6월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한다.

1조(목적)¹⁰⁾에도 나와 있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능률적인 수출지원이고, 둘째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 수출업자가 관세환급을 통해 수출제품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수출을 지원하고, 또 한편 관세환급은 사전관세면제와는 달리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다시 환급받을 때까지 국내 수출업체가 금융 및 행정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려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

1) 수출의 지원

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그런데 수출용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수입 원재료는 국내로 수입되어 제조 및 가공을 거쳐 결국은 다시 수출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비세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곧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시장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국내 수출업체에게는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최종 수출재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진다. 만약 다른 수출 경쟁국에서는 동일한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혹은 자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체에게는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그만큼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출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환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0)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 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자본과 천연자원 그리고 협소한 시장 등으로 수출을 통한 고도성장을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국내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출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수입도 증가해야 했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에게는 다른 수출 경쟁국에 비해 관세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정부도 원재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이를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했기 때문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수출 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

관세환급법에서는 수출지원과 함께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제도와 관세환급제도의 차이점은 관세면제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과 동시에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이 이루어진 사후에 이를 환급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후 환급으로 인해 국내업체는 사전면제제도와 달리 환급신청에 필요한 행정비용과 함께 관세를 납부하고 이를 환급받을 때까지의 자금에 대한 금융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이런 제반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부담이 없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수입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관세부담이 적은 기초 원재료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원재료의 국산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을 연결시켜 국내부가가치를

높이며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환급제도 중 정액환급제도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과 상관없이 수출물품별로 일정금액을 법으로 정해 환급을 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는 국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합법적으로 과다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업체는 수입 원재료보다는 국산 원재료를 선호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2.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세제, 금융, 행정절차 등 수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제도가 운용되어 왔다. 관세환급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 이외의 관세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혹은 운영되었던 수출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이들 제도로는 관세율 조정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보세공장제도 및 자유무역지역 등의 보세제도를 이용한 수출지원제도, 사전감면세제도, 현재는 실시되고 있지 않는 사전면세제도와 상계제도 등이 있다.

가. 관세율 조정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수입되는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세가 없을 경우에 비해 그만큼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수입되는 시점에서 관세가 부과되고 추후에 서류제출 등으로 관세가 전액 환급된다고 하여도 관세징수절차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및 환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원재료에 대해 무세화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상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또는 무세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관세율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 기본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관세환급특례법 제19조에 의한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인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기본관세율 인하 및 탄력관세 부과는 궁극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수출용으로 이용되는지, 내수용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게 된다. 이를 구분할 경우 수출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환급에 갈음한 세율인하(환특세율)제도는 원재료 중에서 수출용으로 대부분이 수입되고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거의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용으로 제공되는 비율만큼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대신 그 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때 내수용으로 제공되는 비율만큼만 관세가 납부되도록 정한 세율을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환특세율)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사후관리가 따르는 감면세제도나 원재료 수입에서 물품 수출 후 환급까지 관세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환급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또는 관세부담 등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의 감소는 없다.

환특세율은 1977년 7월 신설되어 1987년말까지 시행되었다. 초기 환특세율 적용 품목은 원피(HS 4101), 크라프트 라이너(HS 4801), 가발원사(HS 5101, 5102), 인발(人髮)(HS 6703) 등이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친 이후 1987년말부터는 환특세율의 적용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따라서 관세환급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구체적인 적용대상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지

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품목이 없어 적용물품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수출의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환특세율은 명목 관세율에 총수입 대비 내수용 수입의 비율을 곱한 세율이다. 따라서 이 세율을 적용할 경우 원자재를 내수용으로만 사용하는 기업은 환특세율로 관세부담은 줄어든다. 하지만 내수용 수입은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경우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다른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 환급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환특세율을 찬성하는 반면, 전문 인력 고용 등으로 환급비용이 관세환급액에 비해 미미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환특세율 적용을 반대한다.

환특세율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문은 내수용 비율이 아주 낮은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다.

나. 보세제도를 이용한 수출지원

보세(保稅)란 국경선을 통과하여 국내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아직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내국 물품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제154조에 의하면 보세구역에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보세제도 중에서 수출지원과 관련이 있는 제도로는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 포함), 관세자유지역¹¹⁾과 자유무역지역¹²⁾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 11)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12) 1999년 12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1) 보세공장제도

관세법 제185조에 의해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세공장제도는 관세면제제도와 유사하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관세환급제도가 있지만 환급제도보다는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을 혼합한 성격의 Foreign Trade Zone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관세환급이 실시되면서 보세공장제도가 대폭 제한된 적이 있다. 이는 보세공장제도가 관세환급제도 시행목적 중의 하나인 원재료 국산화 촉진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산화 촉진 효과가 미미하고 수출지원 효과가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다.

2) 자유무역지역제도

자유무역지역은 1999년 12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0년에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은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은 특정구역을 한정하여 외국으로부터 원재료와 시설재를 관세부담 없이 반입,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공무역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은 1971년에 지정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1974년에 지정된 이리(1995년부터 익산으로 변경)수출자유지역이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대부분 전자, 전기 제품 생산업체이며, 그 외에 정밀기기, 섬유 및 봉제업, 기계류 생산업체 등이 있다. 제조업 이외에도 물류업, 무역업, 무역대리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입주 업체는 관세는 물론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도 감면된다.

3) 관세자유지역제도

관세자유지역제도는 공항과 항만 등을 중심으로 일정지역을 관세상 부담이 없는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가간 물류를 원활하게 하여 해당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에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되며, 부가가치세는 수출물품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입주 업체는 관세는 물론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도 감면된다.

4) 평 가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은 수입 원재료에 대해 수입단계에서부터 관세부담을 면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세환급제도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원재료가 수출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직접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보세공장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도 있다.

다. 감면세제도

감면세(減免稅)는 납부의 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세액을 일부 경감하는 감세와 납부세액 전액을 면제하는 면세를 통칭한다.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감면세 규정은 관세법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다양한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밖에 관세 이외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의 감면여부는 해당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관세법상 감면세가 규정된 조항은 관세법 제4장 제1절에 언급되어 있다¹³⁾. 다양한 감면세 가운데 수출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감면세는 시설·기자재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시설·기자재에 대한 감면세는 직접적으로 생산제품의 원가를 하락시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관세 감면이 허용된 수입기자재가 수출물품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면세 허용의 주된 정책 목표는 수출지원이 아니라 당해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 수출을 내수판매와 병행하고 있는 여건에서 시설기자재에 대한 감면세는 수출지원으로서 상당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13)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 세울불균형물품의 감면세(관세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 감면세(관세법 제90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1조), 정부용품 등 면세(관세법 제92조), 특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93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4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관세법 제95조),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6조), 재수출면세(관세법 제97조), 재수출감면세(관세법 제98조),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 손상감세(관세법 제100조), 해외입가공물품 등의 감세(관세법 제101조) 등.

한편, 처음부터 순수하게 수출지원이란 정책 의도하에 감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관세법 제104조)이다. 이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61년 제8차 관세법 개정(관세법 제33조의 2)에서이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면세제도는 해당 원재료 수입시점에서 과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에서 당해 원재료를 이용하여 수출한 후 사후에 면세효과를 주는 환급제도와 대비하여 흔히 사전면세제도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전면세제도를 1961년 7월부터 1975년 6월까지 운영하였으며, 1975년 7월 관세환급특별법이 시행되어 수출용 원재료에 환급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으로 실효성을 잃어 지금은 사문화된 상태로 남아있다.

오늘날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호주의 TEXCO(Tariff Export Concession Scheme)제도이다.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면세이므로 수출이라는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수반된다. 수입이 이루어질 때 그 용도를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원재료일지라도 내수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율로 과세를 하고, 수출용에 대하여는 면세를 하게 되므로 이중세율구조가 형성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라. 상계제도

상계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업자에게만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주게 되는 관세징수유예제도¹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

14) 관세징수유예제도는 1975년 사전면세제도로부터 관세환급제도로 전환되면서 수출업자에게 주는 자금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서 3년 예정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제도였다. 그러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인들이 이 제도의 존속을 선호함에 따라 계속 존속하였고, 그 결과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업자에게만 자금완화의 혜택이 주어지

세환급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198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가 1997년 6월 사후정산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제도이다.

상계제도는 수출용 최종재 생산에 사용될 수입 원재료의 관세납부를 수입 면허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입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을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납세고지유예한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면 유예된 납세고지를 취소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세고지유예된 관세와 그 금액의 25%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상계제도의 장점은 사전면세제도처럼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대한 수출입 물량에 대해 정부가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데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상계제도는 일부 한정된 업체에만 적용되었으며, 상계업체로 지정된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세고지유예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했다.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납세고지를 유예하기 때문이다.

1985년에 도입된 상계제도는 단기간 내에 활성화되어 1987년에는 상계액이 3,491억원에 이르기도 했으나, 그 후 이용실적이 점차 감소하여 1996년의 상계액은 238억원에 불과하였다. 1995년에 상계제도를 이용한 업체수는 24개사로 1986년의 158개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상계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수도 세번이 더 세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2,264개에서 1995년 106개로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상계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게 된 이유는 이 제도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와 유사하게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계제도의 관리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가 번잡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을 촉진하게 되었다. 장근호·김진수(1997), p. 73.

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이다¹⁵⁾.

<표 II-0> 상계제도의 운영 현황

(단위: 개, 억원)

	업체수	품목수 ¹⁾	납세고지 유예액	상계액	납세고지 유예중
1985	117	824	631	33	598
	127	926			
1986	138	1,098	2,095	890	1,803
	152	1,159			
	158	1,275			
1987	136	1,047	2,904	3,491	1,216
	130	2,264			
1988	116	431	2,021	2,663	574
1989	84	299	760	1,076	332
1990	59	209	526	642	264
1991	51	193	334	401	202
1992	47	189	241	333	110
1993	40	174	158	199	68
1994	26	110	159	157	79
1995	24	106	200	184	83
1996	49	257	312	238	158

주: 1) 1987년 상반기까지 CCCN 4단위를 기준으로 품목수가 지정되었으나, 1987년 하반기부터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1988년 이후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품목수가 지정됨.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15) 장근호 · 김진수(1997), p. 92.

3.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실시배경 및 관련 법규

가. 도입 배경

1975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그 이전까지 수출 지원정책으로 시행되던 사전면세제도를 대체한 제도이다. 사전면세 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수출을 조건으로 1년 동안 조건부로 관세를 면세조치하고, 1년 이내에 수출을 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전면세제도의 목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사전에 면제해 줌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전면세제도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작고 단순가공무역 단계에 있던 국내산업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국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전면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¹⁶⁾.

첫째,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가 다단계로 복잡해짐에 따라 사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면세수입된 원재료는 수출을 조건으로 면세되었기 때문에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재료를 면세수입하여 수출할 때까지 가공단계별, 거래단계별로 일일이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전면세제도는 면세받은 원자재를 수출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면세금액을 징수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가 다단계로 복잡해짐에 따라 수출이행확인을 위한 실물관리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이행확인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수출업체의 인력과 자금부담이

16) 장근호·김진수(1997).

가중되어 생산원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더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국내산업이 발전하여 수출·내수 겸용 공장이 일반화됨에 따라 다단계화된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수출이행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고가공 원재료의 수입이 촉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단순가공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사전면세제도는 수입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생산 여부나 가공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면세제도였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중간재의 수입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은 단순가공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외화 가득물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결국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이 신장되어도 국제수지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자립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셋째, 수출용 원재료를 내수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국내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출·내수 겸용 공장이 일반화되면서 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수출용 원재료와 내수용 원재료를 완전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이 수출될 때까지 대응수출이행의무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것을 악용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내수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내수용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대응수출이행의무를 행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면세제도의 문제점은 1973년에 석유 파동과 국제 원재료 파동이 일어나면서 부각되었다. 당시 사회에는 단순가공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단순가공형태에 머물러 있게 한 요인 중의 하나로 사전면세제도가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7

월 1일부터 사전면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관세환급제도는 사전면세제도와는 달리 면세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복잡한 사후관리가 필요없어 세관 업무를 대폭 감축시켰다. 특히 정액환급제도의 경우 수출 후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매우 간단하였다. 다만 개별환급제도는 정액환급제도와는 달리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전면세제도에 비해서는 간단한 편이다. 또한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지원효과만 갖고 있는 반면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지원효과와 함께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음으로써 제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없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었다.

나. 관세환급특례법 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1974년 12월에 제정되어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관세환급특례법의 제정 목적으로 수출물품제조용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내국소비세 등의 사전면세 및 사후관리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산 원자재의 사용과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출물품제조용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법·내국소비세법 등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환급특례법 적용대상 조세를 관세 및 내국소비세 등으로 규정하고, 수출용 원재료의 사전면세제도 불인정, 징수유예 인정, 환급방법의 개별 또는 정액환급 규정,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은 2000년 12월 29일에 일부 개정되어 24개 조문의 법, 33개 조문의 시행령, 15개 조문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및 주요 내용

관세환급특례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¹⁷⁾.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해 오는 동안 문제점으로 부각된 과다·과소환급의 발생소지, 구비서류 및 환급절차의 복잡성, 환급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업체의 자금부담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었다.

제1차 개정은 관세환급특례법이 시행된 지 채 6개월이 안 된 1975년 12월에 실시되었다. 본 개정에서는 보세공장이나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과 수출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수입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할 경우에도 이를 환급대상으로 확대 조정하였다.

1976년 12월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세환급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가 되었다. 이러한 제2차 개정에서는 종전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던 정액환급률표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변경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별소비세 신설에 의해 내수용물품 제조용 원재료의 수입시에 세관장이 징수하던 내국소비세에 대한 내국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되었다.

1977년 7월에는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인하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정이 있었다.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관세환급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급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84년에 있었던 제4차 개정에서는 수입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17)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제정 이래 각각 31번과 28번 일부 혹은 전문 개정되었다.

의 수출에 제공된 경우에만 환급해 주던 것을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경우 기간산정방법을 변경하여 환급범위를 넓혔다. 또한 평균세액증명제도, 선환급 후정산제도, 상계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은 그 동안 정액환급제도를 모든 수출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정액환급률 책정방법의 문제 등으로 개별환급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점을 시정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1980년대초 악화된 국제무역 환경 아래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그후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설에 따른 제5차 및 제6차 개정이 있었고, 1996년 제7차 개정을 통해 관세환급특별법의 큰 변화가 있었다.

제7차 법개정은 환급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출지원에 있어서 정부의 사전적인 통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환급비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 환급제도 운용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절차 이해에 따른 각종 인적·물적 비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제7차 개정에서는 무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운영의 의미가 없어진 일부 환급관련 제도를 통폐합하는 등 환급특별법에 대한 전면개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후정산제도의 신설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해당 원재료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하면 당초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선징수 후환급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수출업체에게 금융비용 등을 초래하여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제도를 유지한 이유는 관세환급제도 도입시 상정한 두 가지 목적 중의 하나인 국산화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국산화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환급을 통한 수출지원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7개월로 하여 수입신고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원재료의 통관을 허용하고 같은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의 지급도 보류하여, 일정 기간별로 관세납부액과 환급액을 정산하는 차액만큼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 제도이다.

또한 기업자율의 소요량계산제도를 시행하였고, 환급절차의 전산화, 환급후 심사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들 수 있다. 그 밖에 수출이행기간을 종전의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종전의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가 법 개정으로 인해 소요량계산제도, 사후심사제도, 사후정산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져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신설된 제도이다. 석유화학제품 등 단일 원재료에서 다수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어 수출물품별로 산출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해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자율적인 환급을 중시하여 과다환급 또는 과소환급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된다. 과다환급금에 대해 종전과 달리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과소환급에 대해서도 추징 때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벌칙 규정도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징수유예제도, 상계제도, 개산환급제도,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개편된 제도에 흡수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같은 통·폐합에 따라 환급제도는 종전에 비해 단순하고 간편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표 II-2>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차 개정 (1975.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상대 수출에 대한 환급인정 • 환급대상 수출범위 확대 • 정액환급률표 작성방법 개정
2차 개정 (1976.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신설에 따른 관세환급특례법 적용대상 내국소비세 정리 • 정액환급률 고시권자 변경 • 내수용 물품 제조용 원료에 대한 내국세액공제제도 폐지 • 소요량 증명방법 명시
3차 개정 (1977.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제도 신설
4차 개정 (1984.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거래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연장 • 개산(概算)환급제도(선환급·후정산 제도) • 평균세액증명제도 • 상계(相計)제도 신설 • 정액환급액 산출방법 변경
5차 개정 (1993.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세 신설에 따른 개정
6차 개정 (1994.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특별세 신설에 따른 개정
7차 개정 (1996.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정산제도 신설 • 기업자율의 소요량계산제도 시행 • 환급절차 진산화 • 환급후 심사제도 도입 • 수출이행기간 연장 •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 신설 •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의 명시와 가산금 부과 • 벌칙규정 신설 • 환급제도 통폐합
8차 개정 (2000.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

4. 관세환급제도 종류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환급은 각각의 수입 원재료별로 납부한 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환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정액환급은 이미 고시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이러한 환급방법의 차이로 인해 개별환급은 환급절차는 복잡하지만 과소 혹은 과대환급은 발생하지 않으며, 정액환급은 환급절차는 간단하나 항상 과소 혹은 과대환급문제가 발생한다.

가. 개별환급제도

개별환급은 정액환급에 대비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원재료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불려진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에서는 개별환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별환급 방법은 수출물품 생산에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이들 중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환급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환급액 계산이 보다 정확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성을 장점으로 갖추기 위해 개별환급제도는 복잡하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물품의 생산에는 대개 수많은 종류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기업마다 그리고 생산시기마다 제조공법과 기술수준 등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원재료의 소요량과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이 다르다.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관세율의 변동, 수입물품의 단가 변동, 과세환율 변동 등에 원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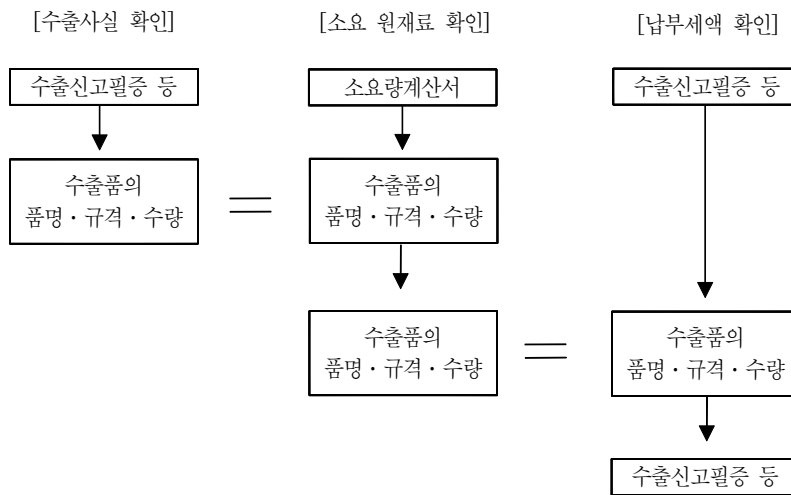
또한 개별환급 방법에 의한 환급액 산출은 원재료 소요량 파악과 수출물품과 소요 원재료의 동일성 확인에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렇

지 못할 경우 과소 또는 과다환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소요량 파악과 동일성 확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원재료의 동일성이란 수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등¹⁸⁾)에 기재된 수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환급신청을 할 때 첨부된 수입 또는 국내거래사실증명서류(수입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원재료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개별환급액 산출 방법

환급액 산출 방법은 우선 수출신고필증 등을 이용하여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재료가 소요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파악한 후 수입신고필증,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이들에 대한 분할증명서 등으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림 II-1]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의 산출



18) 물품반입확인서, 물품적재확인서, 납품완료증명서, 공사완료증명서, 면세추천서, 물품인도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있다.

2)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제도

개별환급제도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물품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급을 제한하는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의한 환급제한 대상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한정되며,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음으로써 특정 관세장벽을 이용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부산물 공제제도는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 중 부산물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환급해 주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도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화로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여러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3) 개별환급 운영 현황

현재 개별환급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전의 개별환급제도에는 선환급·후정산제도와 선지급·후심사제도가 같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구분하여 운영 현황을 정리한 것이 <표 II-3>이다. 선환급·후정산제도와 선지급·후심사제도는 다음의 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들 두 제도를 제외한 일반개별환급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1975년 관세환급법이 처음 시행되면서부터 개별환급을 이용하여 환급을 신청한 환급금액이 전체 환급액의 83.7%에 이르렀다. 이렇게 높은 비중은 198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1985년 개별환급제도의 보완제도로 선환급·후정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일반개별환급을 이용하는 환급액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당연히 선환급·후정산제도가 개별환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

<표 II-2> 개별환급제도의 환급 실적

(단위: 억원, %)

	개 별 환 급						합 계
	일반 개별		선지급·후심사		선환급·후정산		
		비 중		비 중		비 중	
1975	514	100.0	-	-	-	-	514
1976	3,132	100.0	-	-	-	-	3,132
1977	3,306	100.0	-	-	-	-	3,306
1978	3,356	100.0	-	-	-	-	3,356
1979	3,754	100.0	-	-	-	-	3,754
1980	5,153	100.0	-	-	-	-	5,153
1981	5,779	100.0	-	-	-	-	5,779
1982	5,160	100.0	-	-	-	-	5,160
1983	5,906	100.0	-	-	-	-	5,906
1984	7,301	100.0	-	-	-	-	7,301
1985	5,738	91.3	-	-	548	8.7	6,286
1986	10,058	81.6	-	-	2,274	18.4	12,332
1987	14,346	78.6	-	-	3,914	21.4	18,260
1988	14,288	79.6	-	-	3,665	20.4	17,953
1989	12,160	80.1	-	-	3,024	19.9	15,184
1990	9,459	78.8	-	-	2,538	21.2	11,997
1991	7,794	73.4	274	2.6	2,557	24.1	10,625
1992	5,280	55.0	1,620	16.9	2,703	28.1	9,603
1993	3,795	40.9	2,564	27.6	2,925	31.5	9,284
1994	3,681	39.1	2,596	27.6	3,143	33.4	9,420
1995	4,756	41.8	3,339	29.3	3,285	28.9	11,380
1996	6,779	49.9	3,371	24.8	3,430	25.3	13,580
1997	11,593	97.8	-	-	268	2.3	11,861
1998	21,776	100.0	-	-	-	-	21,776
1999	19,650	100.0	-	-	-	-	19,650
2000	20,459	100.0	-	-	-	-	20,459
2001	21,442	100.0	-	-	-	-	21,442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수출업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1년 선지급·후심사제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일반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실적은 더욱 낮아졌다. 1994년 일반개별환급을 이용하는 비중은 39.1%까지 감소하였으며, 선지급·후심사제도와 선환급·후정산제도는 각각 30% 정도의 이용 비중을 보였다. 이는 환급액이 많은 수출업체들이 개별환급을 선호하면서도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 선환급·후정산제도(개산환급제도)

선환급·후정산제도는 1985년 제4차 관세환급법 개정부터 실시되어 1997년 상반기까지 운영된 개별환급제도의 한 종류이다.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여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관련 신청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서류를 구비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국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관세환급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뒤에 정산하는 선환급·후정산제도 혹은 개산환급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업체가 개산환급률표에 품목 고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동안의 환급액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산환급률표에 없는 수출업체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개산환급금을 우선 지급받은 수출업체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기납증 제출시 6개월) 내에 개별환급을 통해 환급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금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1996년 제7차 관세환급법 개정에 의해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7차 개정을 통해 사후정산제도와 환급후 심사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선환급·후정산제도의 운영 현황은 <표 II-4>에 정리되어 있다.

시행초기 약 40여개의 수출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였으나, 1990년 초에는 약 200여개에 이르는 수출업체가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품목수도 1991년에 1,18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환급에 대비한 이용비율은 1985년 8.7%, 전체 환급액 대비는 4.8%에서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개별환급 대비 33.4%, 전체 환급액 대비 31.2%로 전체 환급의 약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환급신청서류 구비와 사후 환급에 따른 금융비용이 수출업체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4> 선환급·후정산제도의 운영 현황

(단위: 개, 억원, %)

	업체수	품목수	환급액 (A)	개별환급액 (B)	총환급액 (C)	A/B	A/C
1985	88	732	548	6,286	11,356	8.7	4.8
1986	43	606	2,274	12,332	13,786	18.4	16.5
1987	41	647	3,914	18,260	19,850	21.4	19.7
1988	42	315	3,665	17,953	18,637	20.4	19.7
1989	53	540	3,024	15,184	15,494	19.9	19.5
1990	129	987	2,538	11,997	12,239	21.2	20.7
1991	199	1,186	2,557	10,625	10,932	24.1	23.4
1992	185	-	2,703	9,603	9,945	28.1	27.2
1993	125	-	2,925	9,284	9,677	31.5	30.2
1994	100	-	3,143	9,420	10,059	33.4	31.2
1995	97	804	3,285	11,380	12,197	28.9	26.9
1996	66	670	3,430	13,580	14,357	25.3	23.9
1997	-	-	268	11,861	12,625	2.3	2.1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5) 선지급·후심사제도

선지급·후심사제도는 선환급·후정산제도의 보완제도로써 선지급업체에서 신청한 환급신청서에 대하여 간략한 형식요건만을 심사한 후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서류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도 1996년 제7차 관세환급법 개정에 의해 선환급·후정산제도와 함께 폐지되었다.

제도 시행초기에는 성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세관장이 적용대상 업체를 지정하였으나, 1994년부터 신청업체 모두를 선지급업체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업체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 제도는 선지급·후심사제도와는 달리 우선 개별환급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개산환급률표상의 금액이 아닌 개별환급 신청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또한 선지급·후심사제도에서는 사후 정산이 필요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환급기관의 심사 결과 잘못이 없으면 그대로 종결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선지급·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환급신청을 한 즉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후 환급서류에 대한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환급절차가 그대로 종결되어 일반개별환급제도에 비해 환급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다.

선지급·후심사제도의 운영 현황은 <표 II-5>에 정리되어 있다. 1991년 554개의 업체가 이를 이용하여 시행초기부터 많은 업체가 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1991년 선환급·후정산제도를 이용한 수출업체가 199개인 점을 감안하면 선지급·후심사제도를 많은 업체들이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994년에는 1,767개의 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였으며, 그 이후 신청기업은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폭이 더욱 넓어졌다.

환급실적은 개별환급 대비 1991년 2.6%, 전체 환급액 대비 2.5%로 수출업체의 수에 비해 그 금액은 작았다. 이는 이 제도를 이용한 수출업체가 대부분 환급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기업체들임을 말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개별 환급에 대비 29.3%, 전체 환급액 대비 27.4%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 환급의 각각 약 3분의 1씩은 선지급·후심사제도와 선 환급·후정산제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II-5> 선지급·후심사제도의 운영 현황

(단위: 개, 억원, %)

	환급실적		개 별 환급액 (C)	총환급실적		A/D	B/C	B/E
	업체수 (A)	금 액 (B)		업체수 (D)	금 액 (E)			
1991	554	274	10,625	13,367	10,932	4.1	2.6	2.5
1992	614	1,620	9,603	11,651	9,945	5.3	16.9	16.3
1993	1,311	2,564	9,284	11,728	9,677	11.2	27.6	26.5
1994	1,767	2,596	9,420	9,979	10,059	17.7	27.6	25.8
1995	-	3,339	11,380	12,187	12,197	-	29.3	27.4
1996	-	3,371	13,580	-	14,357	-	24.8	23.5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6) 사후정산제도(일괄사후납부제도)

사후정산제도(일괄사후납부제도)는 앞의 언급한 선지급·후심사제도와 선환급·후정산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7개월로 연장하여 수입신고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원재료의 통관을 허용하면서, 이와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의 지급도 보류하여 일정기간별로 환급액과 관세납부액을 업체별로 차액만큼 정산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납부할 관세액이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업체에서는 그 금액만큼을 납부하고, 환급하여야할 금액이 관세납부액보다 많을 경우 세관장이 해당 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II.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55

이 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제거해 줌으로써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국산화 촉진이라는 관세환급제도 도입 당시 제시한 정책목표보다는 수출촉진에 더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여겨진다.

<표 II-6> 일괄사후납부제도의 운영 현황

(단위: 개, 억원)

	업체수	징수보류액	환급보류액	정산후 환급금액
1997	111	895	1,009	384
1998	180	10,456	11,407	2,250
1999	171	10,787	9,755	1,287
2000	243	11,174	9,692	1,227
2001	262	11,022	9,455	1,350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기준 262개 업체가 이를 이용하였다. 징수보류액은 1조 1,102억 원으로 환급보류액 9,455억 원보다도 많다. 2001년 개별환급을 이용한 업체수가 6,944개로 이 중 3.8%인 262개 업체만이 이를 이용하였지만, 환급보류액은 전체 환급총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나. 정액환급제도

정액환급제도는 간편한 환급을 위해 평균개념을 채택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액환급제도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정액환급제도는 수출품목별로 정부가 환급금액을 책정하여 고시하므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 및 원재료 수입에 따른 관세납부 여부, 납부세액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 부담이 없는 국산 원재료를 가급적 많이 사용하거나 제조공정 등의 기술혁신으로 원재료 투입량이 적은 기업일수록 실제 납부한 관세액보다 환급액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정액환급제도의 정착은 원재료의 국산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관세환급법이 1975년 제정될 당시부터 환급제도를 정액환급제도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1) 정액환급제도 운영 현황

정부의 정액환급제도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액환급제도에 의한 환급액은 총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10% 미만을 밀돌았다. 정액환급제도가 1985년 간이정액환급과 부재료 정액환급제도로 나누어지면서 부재료 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다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으로 대체되면서 간이정액환급제도에 비해 여전히 이용비율이 높았다.

2) 정액환급제도 종류

정액환급제도는 환급액 산출에 따른 환급절차의 복잡함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적용범위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제도와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로 나누어진다.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는 1997년 제7차 개정을 통해 폐지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표 II-7> 정액환급제도의 환급 실적

(단위: 억원, %)

	정액환급								소계
	간이 정액		부재료 정액		종전정액 ¹⁾		업체별·품목별 정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975	-	-	-	-	100	100.0	-	-	100
1976	-	-	-	-	1,083	100.0	-	-	1,083
1977	-	-	-	-	1,120	100.0	-	-	1,120
1978	-	-	-	-	802	100.0	-	-	802
1979	-	-	-	-	774	100.0	-	-	774
1980	-	-	-	-	838	100.0	-	-	838
1981	-	-	-	-	2,397	100.0	-	-	2,397
1982	-	-	-	-	2,842	100.0	-	-	2,842
1983	-	-	-	-	3,567	100.0	-	-	3,567
1984	-	-	-	-	4,143	100.0	-	-	4,143
1985	348	6.9	57	1.1	4,665	92.0	-	-	5,070
1986	644	44.3	539	37.1	271	18.6	-	-	1,454
1987	536	33.7	1,054	66.3	-	-	-	-	1,590
1988	235	34.4	449	65.6	-	-	-	-	684
1989	104	33.5	206	66.5	-	-	-	-	310
1990	77	31.8	150	62.0	-	-	15	6.2	242
1991	92	30.0	67	21.8	-	-	148	48.2	307
1992	141	41.2	-	-	-	-	201	58.8	342
1993	264	67.2	-	-	-	-	129	32.8	393
1994	533	83.4	-	-	-	-	106	16.6	639
1995	701	85.8	-	-	-	-	116	14.2	817
1996	688	88.5	-	-	-	-	89	11.5	777
1997	763	99.9	-	-	-	-	1	0.1	764
1998	967	100.0	-	-	-	-	-	-	967
1999	1,324	100.0	-	-	-	-	-	-	1,324
2000	1,375	100.0	-	-	-	-	-	-	1,375
2001	1,328	100.0	-	-	-	-	-	-	1,328

주: 1) 종전정액이란 환급제도 개선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시행하기 이전 (1985년 8월 31일 이전의 수출면허분)의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 실적임.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가) 간이정액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제도는 환급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표 11-8>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운영 현황

(단위: 개, 건, 억원, %)

	고시일자	품목수	간이정액환급		정액 환급액 (B)	총환급액 (C)	A/B	A/C
			건수	금액 (A)				
1985	85. 9. 1	1,086	-	348	5,070	11,356	6.9	3.1
	85. 11. 4	1,038						
1986	86. 2. 3	506	-	644	1,454	13,786	44.3	4.7
1987	87. 12. 15	745	-	536	1,590	19,850	33.7	2.7
1988	88. 6. 1	819	-	235	684	18,637	34.4	1.3
	88. 9. 20	821						
1989	89. 3. 1	825	-	104	310	15,494	33.5	0.7
	89. 9. 1	876						
1990	90. 3. 1	965	4,380	77	242	12,239	31.8	0.6
1991	91. 4. 1	970	4,392	92	307	10,932	30.0	0.8
1992	92. 2. 1	1,002	6,383	141	342	9,945	41.2	1.4
1993	93. 2. 1	1,196	9,707	264	393	9,677	67.2	2.7
1994	94. 2. 1	1,341	13,945	533	639	10,059	83.4	5.3
1995	95. 2. 1	1,140	16,548	701	817	12,197	85.8	5.7
1996	96. 3. 1	1,398	16,758	688	777	14,357	88.5	4.8
1997	97. 4. 1	2,369	46,241	763	764	12,625	99.9	6.0
1998	98. 4. 1	3,068	109,811	967	967	22,743	100.0	4.3
1999	99. 4. 1	3,247	148,524	1,324	1,324	20,974	100.0	6.3
2000	00. 4. 1	3,374	120,924	1,375	1,375	21,834	100.0	6.3
2001	01. 1. 1	3,458	114,086	1,328	1,328	22,770	100.0	5.8

주: 2002년 고시된 품목수는 3,665개이다.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개별환급방법에 의해 환급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¹⁹⁾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요량의 계산이나 관세납부와 관련된 복잡한 서류의 구비 없이 수출사실만 입증하면 즉시 환급액이 확정되므로 매우 간편한 제도이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간편성을 통해 사회적 환급비용을 줄이고, 둘째, 국산화 및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물품별로 환급금액이 사전에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환급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환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다른 환급제도에 비해 수출용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에 유리하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 관세납부 여부, 납부세액 등은 확인하지 않고 평균개념에 의해 환급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국산 원재료를 가급적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기술혁신을 통해 원재료 투입량이 적은 기업일수록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제도는 평균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개별수출업체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한다. 이는 개별수출업체가 동일한 물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원재료의 수입 시점에 환율 및 과세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잘못 책정할 경우 이러한 과다 혹은 과소환급의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 동안 동일 품목에 대하여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액보다 간이정액환급액으로 책정 고시된 금액이 대체로 낮은 경향이 있어 과소환급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한편,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개별환급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단점도 있었다.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품목수는 1990년 초까지 1,000여개 수준으로 많지 않았

19)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3억원(기납 포함) 이하인 자가 생산한 물품이 수출되고 환급신청한 때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으며, 1997년 약 1,000개 품목을 더 고시하면서 점차 늘려 2002년 현재 3,665개의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 이용 현황은 1980년대 중반과 말에는 부재료 정액제도로 인해 그리고 1990년대 초에는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로 인해 그 이용률(금액기준)이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정액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이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후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제도만이 유일한 정액환급제도로 존재하게 되었다.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품목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2년 현재 3,665개이다. 품목은 선정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품목을 추천한다.

간이정액환급이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총환급액의 약 5~6% 수준이나 건수 기준에서는 약 35% 수준이며 이용업체수는 약 1만여개로 전체 이용업체의 약 65%가 이를 이용하고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상 특수성으로 인해 소요량 계산이 복잡하거나, 혹은 소요량 계산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계산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환급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 간이정액환급제도와는 달리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되기에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는 제7차 관세환급법 개정에 의해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되었다.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는 새로 신설된 소요량계산제도, 사후심사

제도, 사후정산제도 등의 도입으로 필요성이 낮아져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석유화학제품 등 단일 원재료에서 여러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어 수출물품별로 환급금 산출이 곤란한 물품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급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를 신설하였다.

폐지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정액환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평균개념을 이용하여 업체별 혹은 품목별로 항상 과소 혹은 과대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환급제도가 개별환급제도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업체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관세환급액을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정액환급률표를 책정하여 결정하였다.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전년도 평균 환급실적을 기초로 정액환급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률을 1년마다 책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의 구분 없이 동일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을 환급해 준다. 환급액 산출도 정액환급률에 수출물품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 종가환급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의 최근 일정기간²⁰⁾의 평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액환급률을 개정하여 제도 이름 그대로 업체별·품목별로 다른 정액환급액을 책정하고 있다. 환급액도 수출물품의 수량에 정액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종량환급방법을 사용하여 더 간편하다.

20)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는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와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업체의 수출용 원재료 평균납부세액의 신고를 바탕으로 정액환급을 결정한다. 1년마다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는 1997년 제7차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대신하여 현재 신설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도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로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정액환급제도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의미한다.

그 동안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한 업체수는 약 30여개 기업으로 이용기업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업체수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품목수도 약 300여개에 불과하며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한 관세환급액은 1992년을 기점으로 전체 정액환급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전체 총환급액에서는 2%에 불과하였다. 1992년을 기점으로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한 환급액은 200억원 미만으로 전체 총환급액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는 각 업체의 제조장 단위로 수입

<표 II-9>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의 운영 현황

(단위: 개, 억원, %)

	업체수 (A)	품목수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액 (B)	정액 환급액 (C)	총환급액 (D)	B/A	B/C	B/D
1990	32	144	15	242	12,239	0.5	6.2	0.1
1991	43	287	148	307	10,932	3.4	48.2	1.4
1992	39	317	201	342	9,944	5.2	58.8	2.0
1993	36	321	129	393	9,677	3.6	32.8	1.3
1994	34	311	106	639	10,059	3.1	16.6	1.1
1995	33	311	116	817	12,197	3.5	14.2	1.0
1996	33	333	89	777	14,357	2.7	11.5	0.6
1997	-	-	1	764	12,625	-	0.1	0.0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II.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63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과 수출물품에 사용한 원재료 소요량에 의하여 정액환급률을 책정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정액환급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연 2회 원재료별 평균세액산출내역서 등 복잡한 정액환급률 산출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여전히 개별환급에 비해 과소환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여겨진다.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1. 관세환급실적

관세환급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5년 총관세환급액은 614억원으로 정액환급액 100억원, 개별환급액 514억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976년에는 총관세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4,215억원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그후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87년 1조 9,85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관세환급액은 계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9,677억원으로 1987년의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세환급의 절대액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관세율체계는 198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관세율인하예시제에 의해 크게 인하되었다. 제1차 관세율인하예시제는 1984년에 시작되어 1989년까지, 제2차 관세율인하예시제는 1989년부터 1993년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관세율인하예시제로 예시제 이전에 최고 30%에 이르던 기초원료 관세율이 비경쟁 원재료(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1~2%, 경쟁 원재료(국산 원재료가 존재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3%의 균등관세율체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 관세환급액이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994년부터 관세환급액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8년에는 2조 2,743억원으로 1997년의 1조 2,625억원

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였다. 1999년 관세환급액이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1년 기준 관세환급액은 2조 2,7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이후 관세환급액이 다시 증가한 것은 제2차 관세인하에서 제 종료 이후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98년에 환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IMF 기간 동안 국내 수요는 크게 위축되어 국내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수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환급액도 증가하였다. 또한 대폭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 공급곡선 역시 좌측으로 이동하였다(그러나 국내 수요 감소폭보다는 작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환급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관세는 하나의 비용으로 환급을 받는 것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환율도 급상승하여 환급액이 크게 증가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환율의 상승은 IMF 이전과 동일하게 관세환급 관련 제반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려는 인센티브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의 환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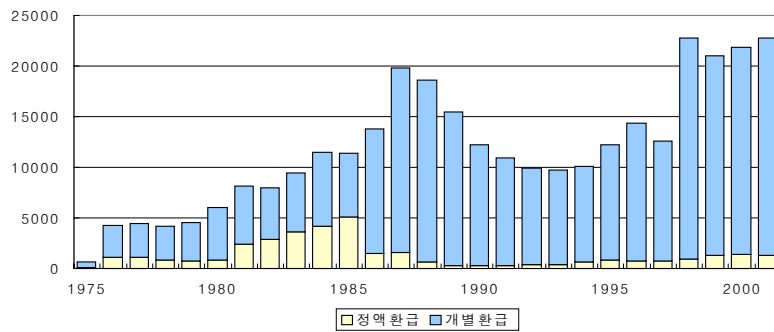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의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그림 III-1]에서 보듯이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실적이 그동안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환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정액환급제도의 이용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기준 정액환급제도에 의한 환급실적은 전체 환급

액의 5.8%에 불과하며 개별환급제도는 전체 환급액의 거의 대부분인 94.2%로 나타났다²¹⁾.

정액환급제도의 환급액 비중이 1980년대 초에는 30%를 넘어 최고 44.6%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그후 한 자리 수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정액환급은 이용업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액 기준으로는 비중이 작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약 4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급을 이용하는 업체의 약 70%, 업체수 11,000여 개의 기업이 정액환급을 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액환급 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0] 정액환급과 개별환급 비중(금액 기준)

(단위: 억원)



<표 III-0> 정액환급과 개별환급 비중(건수 기준)

(단위: 개, %)

건 수	개 별	비 중	정 액	비 중
1998	220,013	64.8	109,811	35.2
1999	198,802	57.2	148,524	42.8
2000	199,172	62.2	120,924	37.8
2001	219,439	65.8	114,086	34.2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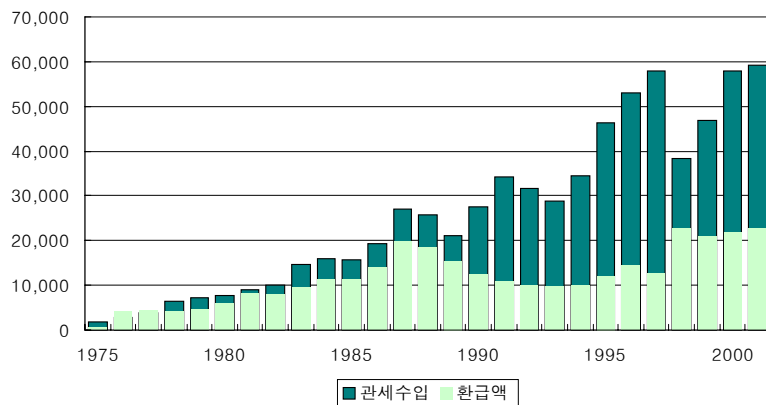
21) <부표 4> 참고.

나. 관세수입과 환급액

관세수입액은 관세부과에 따른 징수액에서 관세환급 등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로 관세부과를 통해 발생한 순수입을 의미한다. 관세수입액은 1976년 2,755억원에서 2001년 5조 9,234억원으로 20여배 이상 증가하였다. 관세수입에 대비한 환급액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자. 시행 초기인 1976년 관세수입에 대비 환급액 비율은 무려 153%로 매우 높았으나, 1970년대 말 약 60% 수준으로 안정되었으며, 1980년대는 약 70% 수준으로 상승한 후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로 1997년에는 21.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환급비율이 다시 높아져 관세수입 대비 59.3%로 그 비율이 급증하였다. 그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1년 기준 38.4%에 머물고 있다. 이런 비율은 1998년에 비해 낮아진 것이지만 1990년에 약 30% 미만인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²²⁾.

[그림 III-1] 관세수입과 환급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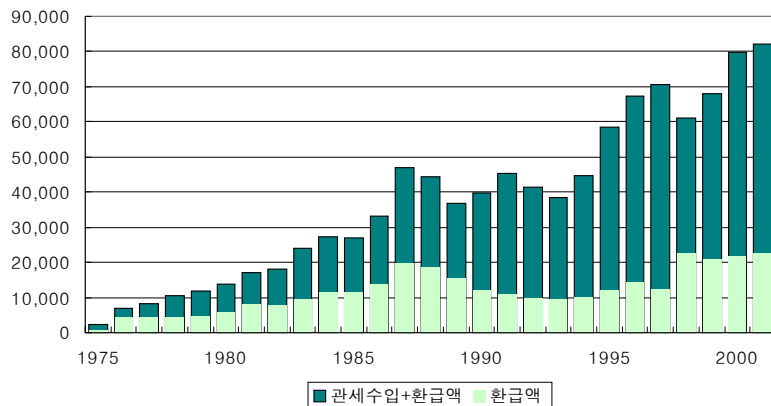
22) <부표 5> 참고.

전체 관세징수액 대비 환급액을 살펴보자. 시행 초기인 1970년대 말에는 그 비율이 높았으나, 1980년대에는 약 40%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그후 1990년대에는 이보다 낮아져 약 20%를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했다.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환급액이 전체 관세징수액 중 37.2%로 급증하였지만, 그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1년 기준 27.8%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둘째,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을수록, 셋째, 보세제도, 사전면세제도 등 대체적인 여타 제도의 이용이 낮을수록, 넷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우회 생산도) 정도가 미흡할수록, 다섯째, 수입물품 중 수출용 원재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징수액 대비 환급액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III-2] 총관세징수액과 환급액

(단위: 억원)



1970년대 말 환급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제도 시행 초기의 불안정을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1990년대 이후 관세수입 대비 환급률 및 전체 관세징수액 대비 환급률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69

이 크게 낮아진 것은 두 차례에 걸친 관세인하예시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에 비해 큰 폭으로 인하되어 환급액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전까지는 단순가공후 수출이라는 단순가공의 산업구조와 원재료에 대한 높은 관세율로 인해 환급률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990년대 수입자유화로 소비재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1> 기본 관세율 구조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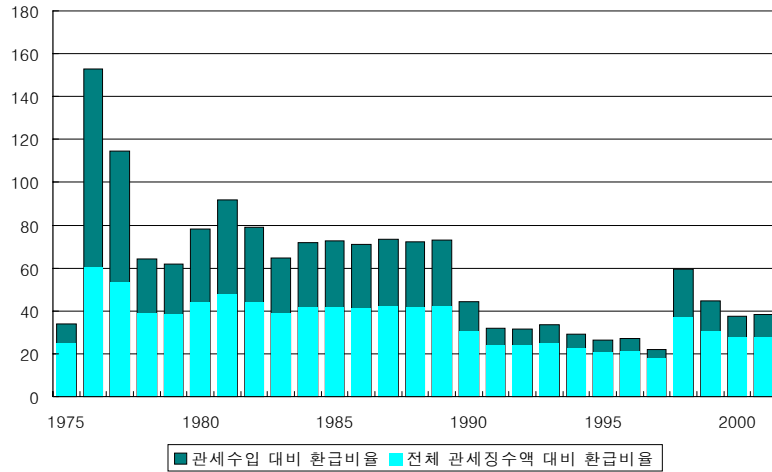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4~ 1998	1999 이후
평균관세율					
전 체	18.1	12.7	11.4	7.9	7.9
공 산 품	16.9	11.2	9.7	6.2	6.2
농 산 물	25.2	20.6	19.9	16.6	16.6
중심관세율	20	15	13	8	8
공산품					
비경쟁 기초원자재	5	1~2	1~2	1~2	1~2
경쟁 기초원료	10	5	5	3	3
중간재, 기계류, 일반소비재	20	15	13	8	8
사치성 소비재	30~50	20	16	8	8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전체 관세징수액에 대비한 환급액의 비율이 2001년 기준 27.8%이며, 가장 낮았을 때가 1995년 20.8%로서 관세업무 중에서 상당부분을 환급업무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환급비율 변화 추이

(단위: %)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세수입에 대비한 환급액의 비율은 주요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수입에 대비한 환급액의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 2%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일본은 약 0.5%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환급액 비율이 가장 낮았던 1997년 21.8%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환급액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 미국과 일본의 관세수입 대비 환급비율

(단위: %)

	2001	2000	1999	1998	1997
미국	2.05	2.04	2.11	2.87	-
일본	-	0.50	0.58	0.52	0.46
우리나라	38.4	37.6	44.7	59.3	21.8

자료: US Customs Service, 『Customs Annual Report』 각 연도; 일본재무성, 『국고세입세출현황』 각 연도;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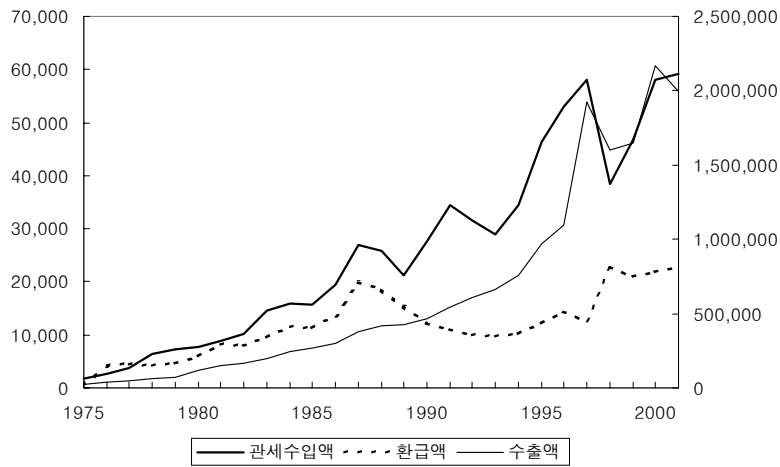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71

이와 같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수출지향의 가공수출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재료, 특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미미한 면세제도 및 보세제도의 이용 부진,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원재료의 관세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수출액, 관세수입액, 그리고 관세환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액과 관세수입액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환급액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1997년 급증하였으나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²³⁾.

[그림 III-4] 관세수입액, 수출액, 환급액의 비교

(단위: 억원)



23) <부표 6> 참고.

2. 기업체 환급실적

2001년 기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한 업체는 약 17,500여개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업체수가 약 3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절반 이상의 수출업체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환급실적과 수출실적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기업들의 관세환급의 이용실적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²⁴⁾.

<표 III-4>는 개별환급실적을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개별환급실적 상위 10개 기업의 환급액은 2000년 기준 7,812억원으로 전체 개별환급액의 3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개별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31%로 20개 기업이 전체 개별환급액의 약 절반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20개 기업이 환급받은 수출액도 전체 환급받은 수출액의 약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환급의 경우에는 <표 III-6>에서 보듯이 정액환급실적 상위 10개 기업의 환급액은 2000년 기준 55억원으로 전체 정액환급액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0개 기업의 정액환급액은 83억원, 전체 개별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3%로 개별환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액환급 자체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최근 2년간 환급실적이 3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 20개 기업의 평균 정액환급액은 4.15억원으로 다음 연도에는 정액환급을 신청하지 못하고 개별환급을 이용해야 하는 기업이 발

24) 관세환급을 이용하는 개별기업 전체의 자료는 입수가 불가능하여 관세청 협조로 업체를 이용실적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제한적인 통계자료로 인해 제한적인 분석만이 가능하였다.

생함을 알 수 있다. 상위 20개 기업의 1998년 정액환급액은 50억원, 1999년 정액환급액 65억원으로 평균 정액환급액은 각각 2.5억원에서 3.25억원, 그리고 2000년에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4.1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Ⅲ-5>에서 보듯이 환급받은 수출액에서 개별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7년 하반기 평균 2.28%에서 1998년 1.92%, 1999년 1.98%, 그리고 2000년 1.88%로 약 2%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개별환급액실적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1998년 2.87%, 1999년 2.60%로 비율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2000년에 2.08%로 낮아졌다. 상위 100~200개 기업들의 비율도 1999년과 2000년에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2000년에 상위 10개 기업들의 비율보다도 높았다. 그 이유는 상위 150~200개 기업들의 환급받은 수출액이 1998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환급받은 수출액에서 정액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 Ⅲ-7>에 제시되었다. 1997년 하반기 평균 0.80%에서 1998년 0.62%, 1999년 0.85%, 그리고 2000년 0.83%로 약 0.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개별환급에 비해 낮은 비율로서 정액환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액환급실적 상위 200개 기업들의 경우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약 9,400여개의 기업들²⁵⁾은 평균보다 낮은 비율이었다.

<표 Ⅲ-5>에서 보듯이 개별환급을 받은 수출액은 2000년 기준 109조원으로 전체 수출액 199조원의 약 절반정도이다. 그러므로 개별환급액이 전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이다. 개별환급액이 전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16%, 1999년 1.12%에서 2000년 1.03%로 낮아지고 있다. 정액환급이 전

25) 2000년 기준 정액환급 이용업체 수는 9,644개이며, 개별환급 이용업체 수는 6,694개로 총 16,338개 업체가 환급제도를 이용하였다. 2001년에는 이용업체 수가 약 17,500여개이다.

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0.05%, 1999년 0.08%에서 2000년 0.07%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정액환급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기인한다. 총수출액 기준 상위 200개 기업에서는 거의 정액환급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표 III-8>과 <표 III-9>는 총수출액 기준으로 업체를 나누어 실적을 제시하였다. 총수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기준 35.71%이지만 개별환급액 비중은 11.56%로 이들 기업의 총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0.33%에 불과하였다.

상위 200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수는 약 3만여개에 이른다²⁶⁾. 이들 기업들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07%이지만, 이들이 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별환급 59.86%, 정액환급 98.58%로 매우 높다. 총환급액이 전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개별환급 1.98%+정액환급 0.22%)로 상위 20개 기업에 비해 7배 정도 월등히 높다. 이는 매우 놀라운 수치로서 본고에서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이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6)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수출업체 수는 31,842개이며, 2002년에는 약 29,000여개의 수출업체를 예상하고 있다.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75

<표 III-3> 개별환급기준 환급실적 누계치

(단위: 억원, %)

연 도	개별환급	환급액		환급받은 수출액	
			비중		비중
1997년 7~12월	상위 10개 업체	2,913	37.59	83,291	24.55
	상위 20개 업체	3,913	50.49	143,465	42.28
	상위 50개 업체	5,025	64.85	201,028	59.25
	상위 100개 업체	5,743	74.11	229,771	67.72
	상위 150개 업체	6,080	78.46	253,231	74.63
	상위 200개 업체	6,307	81.39	264,331	77.90
	그 밖의 나머지 업체	7,749	100.00	339,314	100.00
1998년	상위 10개 업체	7,937	36.45	276,998	24.45
	상위 20개 업체	10,221	46.94	426,611	37.65
	상위 50개 업체	13,356	61.34	598,335	52.81
	상위 100개 업체	15,535	71.34	766,897	67.69
	상위 150개 업체	16,553	76.01	819,596	72.34
	상위 200개 업체	17,223	79.09	864,502	76.30
	그 밖의 나머지 업체	21,776	100.00	1,132,987	100.00
1999년	상위 10개 업체	6,626	33.72	255,257	25.73
	상위 20개 업체	8,979	45.70	431,833	43.54
	상위 50개 업체	11,951	60.82	585,209	59.00
	상위 100개 업체	13,890	70.69	713,527	71.93
	상위 150개 업체	14,817	75.41	752,874	75.90
	상위 200개 업체	15,418	78.46	780,111	78.65
	그 밖의 나머지 업체	19,650	100.00	991,909	100.00
2000년	상위 10개 업체	7,812	38.18	375,139	34.41
	상위 20개 업체	10,089	49.31	543,123	49.81
	상위 50개 업체	12,837	62.74	701,998	64.38
	상위 100개 업체	14,647	71.59	805,067	73.84
	상위 150개 업체	15,479	75.66	846,457	77.63
	상위 200개 업체	16,034	78.37	869,941	79.79
	그 밖의 나머지 업체	20,459	100.00	1,090,340	100.00

<표 III-4> 개별환금기준 수출대비 환금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개별환금	환금액 (A)	환금받은 수출액(B)	A/B
1997년 7~12월	상위 10개 업체	2,913	83,291	3.50
	상위 11~20개 업체	1,000	60,174	1.66
	상위 21~50개 업체	1,112	57,563	1.93
	상위 51~100개 업체	718	28,743	2.50
	상위 101~150개 업체	337	23,460	1.44
	상위 151~200개 업체	227	11,099	2.05
	그 밖의 나머지 업체	1,442	74,983	1.92
	합 계	7,749	339,314	2.28
1998년	상위 10개 업체	7,937	276,998	2.87
	상위 11~20개 업체	2,284	149,613	1.53
	상위 21~50개 업체	3,136	171,724	1.83
	상위 51~100개 업체	2,178	168,562	1.29
	상위 101~150개 업체	1,018	52,699	1.93
	상위 151~200개 업체	671	44,906	1.49
	그 밖의 나머지 업체	4,553	268,485	1.70
	합 계	21,776	1,132,987	1.92
1999년	상위 10개 업체	6,626	255,257	2.60
	상위 11~20개 업체	2,354	176,576	1.33
	상위 21~50개 업체	2,971	153,375	1.94
	상위 51~100개 업체	1,939	128,319	1.51
	상위 101~150개 업체	927	39,347	2.36
	상위 151~200개 업체	601	27,237	2.21
	그 밖의 나머지 업체	4,232	211,798	2.00
	합 계	19,650	991,909	1.98
2000년	상위 10개 업체	7,812	375,139	2.08
	상위 11~20개 업체	2,277	167,984	1.36
	상위 21~50개 업체	2,747	158,875	1.73
	상위 51~100개 업체	1,811	103,070	1.76
	상위 101~150개 업체	831	41,390	2.01
	상위 151~200개 업체	555	23,484	2.36
	그 밖의 나머지 업체	4,425	220,398	2.01
	합 계	20,459	1,090,340	1.88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77

<표 III-5> 정액환급기준 환급실적 누계치

(단위: 억원, %)

연 도	정액환급	환급액		환급받은 수출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997년 7~12월	상위 10개 업체	17	4.97	1,752	4.01
	상위 20개 업체	28	7.86	2,393	5.48
	상위 50개 업체	52	14.82	4,679	10.72
	상위 100개 업체	80	22.66	7,414	16.98
	상위 150개 업체	101	28.71	9,626	22.04
	상위 200개 업체	119	33.77	11,812	27.05
	그 밖의 나머지 업체	351	100.00	43,670	100.00
1998년	상위 10개 업체	33	3.36	4,267	2.75
	상위 20개 업체	50	5.22	7,088	4.57
	상위 50개 업체	89	9.18	10,536	6.79
	상위 100개 업체	139	14.40	16,685	10.75
	상위 150개 업체	186	19.25	22,811	14.70
	상위 200개 업체	227	23.47	28,932	18.65
	그 밖의 나머지 업체	967	100.00	155,150	100.00
1999년	상위 10개 업체	36	2.71	2,517	1.62
	상위 20개 업체	65	4.94	5,228	3.37
	상위 50개 업체	136	10.29	12,199	7.87
	상위 100개 업체	215	16.22	20,948	13.51
	상위 150개 업체	275	20.79	26,939	17.38
	상위 200개 업체	327	24.67	31,706	20.45
	그 밖의 나머지 업체	1,324	100.00	155,032	100.00
2000년	상위 10개 업체	55	3.98	4,682	2.82
	상위 20개 업체	83	6.03	6,878	4.14
	상위 50개 업체	150	10.89	13,164	7.92
	상위 100개 업체	228	16.60	21,304	12.82
	상위 150개 업체	288	20.98	28,164	16.95
	상위 200개 업체	339	24.61	34,146	20.55
	그 밖의 나머지 업체	1,375	100.00	166,122	100.00

<표 III-6> 정액환금기준 수출대비 환금 비중

(단위: 억원, %)

연 도	정액환금	환금액 (A)	환금받은 수출액(B)	A/B
1997년 7~12월	상위 10개 업체	17	1,752	1.00
	상위 11~20개 업체	10	641	1.59
	상위 21~50개 업체	24	2,286	1.07
	상위 51~100개 업체	28	2,734	1.01
	상위 101~150개 업체	21	2,213	0.96
	상위 151~200개 업체	18	2,185	0.81
	그 밖의 나머지 업체	233	31,858	0.73
	합 계	351	43,670	0.80
1998년	상위 10개 업체	33	4,267	0.76
	상위 11~20개 업체	18	2,821	0.64
	상위 21~50개 업체	38	3,448	1.11
	상위 51~100개 업체	50	6,149	0.82
	상위 101~150개 업체	47	6,126	0.76
	상위 151~200개 업체	41	6,120	0.67
	그 밖의 나머지 업체	740	126,218	0.59
	합 계	967	155,150	0.62
1999년	상위 10개 업체	36	2,517	1.43
	상위 11~20개 업체	29	2,712	1.09
	상위 21~50개 업체	71	6,971	1.02
	상위 51~100개 업체	79	8,749	0.90
	상위 101~150개 업체	60	5,992	1.01
	상위 151~200개 업체	51	4,767	1.08
	그 밖의 나머지 업체	997	123,325	0.81
	합 계	1,324	155,032	0.85
2000년	상위 10개 업체	55	4,682	1.17
	상위 11~20개 업체	28	2,196	1.28
	상위 21~50개 업체	67	6,286	1.06
	상위 51~100개 업체	79	8,140	0.97
	상위 101~150개 업체	60	6,861	0.88
	상위 151~200개 업체	50	5,981	0.84
	그 밖의 나머지 업체	1,037	131,976	0.79
	합 계	1,375	166,122	0.83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79

<표 III-7> 총수출액기준 환급실적 누계치

(단위: 억원, %)

연 도	수 출 액	총수출액		개별환급액		정액환급액	
			비중		비중		비중
1997년 7~12월	상위 10개 업체	314,911	23.80	1,065	13.74	0	0
	상위 20개 업체	458,169	34.62	1,464	18.89	0	0
	상위 50개 업체	642,563	48.55	2,542	32.81	0	0
	상위 100개 업체	768,522	58.07	3,290	42.46	0	0
	상위 150개 업체	829,657	62.69	3,637	46.94	0	0
	상위 200개 업체	869,253	65.68	4,003	51.65	0	0
	그 밖의 나머지 업체	1,323,380	100	7,749	100	351	100
1998년	상위 10개 업체	422,289	22.43	2,712	12.45	0	0
	상위 20개 업체	618,434	32.84	3,911	17.96	0	0
	상위 50개 업체	923,420	49.04	6,353	29.18	0	0
	상위 100개 업체	1,101,240	58.48	8,553	39.28	0	0
	상위 150개 업체	1,187,890	63.08	9,562	43.91	0	0
	상위 200개 업체	1,243,952	66.06	10,298	47.29	2	0.23
	그 밖의 나머지 업체	1,883,020	100	21,776	100	967	100
1999년	상위 10개 업체	379,605	21.67	1,830	9.31	0	0
	상위 20개 업체	585,254	33.42	3,955	20.13	0	0
	상위 50개 업체	873,515	49.88	6,064	30.86	0	0
	상위 100개 업체	1,046,926	59.78	7,843	39.91	0	0
	상위 150개 업체	1,124,202	64.19	9,059	46.10	0	0
	상위 200개 업체	1,170,610	66.84	9,742	49.58	0	0
	그 밖의 나머지 업체	1,751,357	100	19,650	100	1,324	100
2000년	상위 10개 업체	465,561	23.35	1,853	9.06	0	0
	상위 20개 업체	712,183	35.71	2,365	11.56	0	0
	상위 50개 업체	1,061,554	53.23	4,874	23.82	0	0
	상위 100개 업체	1,242,080	62.28	6,486	31.70	0	0
	상위 150개 업체	1,324,150	66.40	7,665	37.46	0	0
	상위 200개 업체	1,374,685	68.93	8,211	40.14	20	1.42
	그 밖의 나머지 업체	1,994,240	100	20,459	100	1,375	100

<표 III-8> 총수출액기준 수출대비 환급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수출액	총수출액 (A)	개별 환급액 (B)	정액 환급액 (C)	B/A	C/A
1997년 7~12월	상위 10개 업체	314,911	1,065	0	0.34	0.00
	상위 11~20개 업체	143,259	399	0	0.28	0.00
	상위 21~50개 업체	184,393	1,078	0	0.58	0.00
	상위 51~100개 업체	125,960	748	0	0.59	0.00
	상위 101~150개 업체	61,134	347	0	0.57	0.00
	상위 151~200개 업체	39,596	365	0	0.92	0.00
	그 밖의 나머지 업체	454,127	3,746	351	0.82	0.08
	합계	1,323,380	7,749	351	0.59	0.03
1998년	상위 10개 업체	422,289	2,712	0	0.64	0.00
	상위 11~20개 업체	196,145	1,199	0	0.61	0.00
	상위 21~50개 업체	304,986	2,442	0	0.80	0.00
	상위 51~100개 업체	177,821	2,199	0	1.24	0.00
	상위 101~150개 업체	86,650	1,009	0	1.16	0.00
	상위 151~200개 업체	56,062	736	2	1.31	0.00
	그 밖의 나머지 업체	639,068	11,478	965	1.80	0.15
	합계	1,883,020	21,776	967	1.16	0.05
1999년	상위 10개 업체	379,605	1,830	0	0.48	0.00
	상위 11~20개 업체	205,649	2,125	0	1.03	0.00
	상위 21~50개 업체	288,261	2,110	0	0.73	0.00
	상위 51~100개 업체	173,411	1,778	0	1.03	0.00
	상위 101~150개 업체	77,276	1,216	0	1.57	0.00
	상위 151~200개 업체	46,408	683	0	1.47	0.00
	그 밖의 나머지 업체	580,747	9,908	1,324	1.71	0.23
	합계	1,751,357	19,650	1,324	1.12	0.08
2000년	상위 10개 업체	465,561	1,853	0	0.40	0.00
	상위 11~20개 업체	246,621	512	0	0.21	0.00
	상위 21~50개 업체	349,371	2,509	0	0.72	0.00
	상위 51~100개 업체	180,526	1,612	0	0.89	0.00
	상위 101~150개 업체	82,070	1,179	0	1.44	0.00
	상위 151~200개 업체	50,535	547	20	1.08	0.04
	그 밖의 나머지 업체	619,556	12,247	1,356	1.98	0.22
	합계	1,994,240	20,459	1,375	1.03	0.07

3. 산업별 환급실적

지난 1990년부터 환급받은 액수는 경공업에 비해 중공업이 월등히 많다²⁷⁾. 그 비율은 1990년대 초에는 약 30 : 70이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약 20 : 80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공업에서의 수출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 Ⅲ-22>에서 보듯이 총수출액 중에서 환급받은 수출액 비율은 1998년 70%에서 1999년 65.5%, 2000년 63.0%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중공업은 1998년 67.0%에서 2000년 62.2%로 낮아졌으며, 경공업은 1998년 85.5%에서 2000년 71.6%로 낮아져 경공업에서의 하락 폭이 더 컸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여겨진다.

환급받은 수출액 대비 환급액비율은 경공업은 1990년 2.35%에서 1994년 1.85%로 계속 낮아졌으나²⁸⁾, 1998년 1.54%, 1999년 1.90%에서 2000년 1.93%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²⁹⁾. 반면 중공업은 1990년 2.75%에서 1993년 1.71%, 1998년 1.79%, 2000년 1.69%로 약 1.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출액 대비 환급액비율도 경공업은 1998년 1.32%에서 1999년 1.41%, 2000년 1.38%로 약 1.3~1.4%의 수준이었으며, 중공업은 1998년 1.20%에서 1999년 1.16%, 2000년 1.05%로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초에는 경공업보다 중공업의 환급받은 수출액 대비 환급비율이 높았으나, 1999년과 2000년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총수출액 대비 환급비율도 역시 중공업이 낮다.

1990년대 초 환급비율 하락은 우선 전체적인 관세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 대

27) 1990~1994년까지는 장근호·김진수(1997)를 참고하였다. 부록 1 참고.

28) <부표 1> 참고.

29) <표 Ⅲ-12> 참고.

해 관세화가 추진되면서 고관세가 적용되고 또한 1997년의 관세율 개편에 의해 섬유 등에 대해 10%, 13%, 16%의 세 가지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 인상함으로써 경공업의 환급받은 수출액 대비 환급 비율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공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실행 관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환급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관세법에 명시된 기본관세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과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등에 의해 이미 WTO 양허세율이 조정되도록 예정된 품목들의 양허세율을 고려하여 실행관세율의 변화를 살펴보자. 2000년 기본세율과 2000년 및 2004년의 실행세율을 관세청의 『수출입동향 품목분류체계』에 따른 가공도별, 품목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허세율로 인하여 중간재와 자본재의 실행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본세율은 중간재의 경우 7.92%, 자본재의 경우 7.60%로 모두 중심세율인 8%를 근접하여 있다. 그러나 양허세율의 작용으로 인하여 중간재의 실행세율은 2000년에는 7.72%, 2004년에는 6.40%로 인하될 것이다. 또한, 자본재의 실행세율은 2000년에는 6.11%, 2004년에는 5.78%로 인하될 것이다.

둘째, 양허세율로 인한 실행세율 저하 효과는 자본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간재와 자본재의 기본세율 격차는 0.32%포인트에 불과하지만, 2004년 실행세율 기준으로 볼 때에는 0.62%포인트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동일 가공도 내에서도 양허세율의 영향으로 인해 품목군간의 실행세율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간재의 경우 기본세율은 동일 품목군간의 실행세율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양허세율의 영향을 받는 실행세율을 2004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섬유류, 비철금속, 기타 중간재의 경우는 기본세율과 큰 격차가 나지 않는 반면, 화공품(기본세율 7.78%, 실행세율 5.86%), 철강재(기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83

본세율 7.12%, 실행세율 1.77%) 등의 경우는 기본세율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품목군간의 실행세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재의 경우는 전기·전자기기가 다른 품목군에 비

<표 III-9> 2000년 기준 기본 및 실행관세율의 가공도별, 품목별 평균관세율

품 명	2000		2004
	기본관세율	실행관세율	실행관세율
1. 소비재	14.19	13.76	13.29
가. 곡물	6.13	6.73	6.49
나. 직접소비재	22.81	22.06	21.36
다. 내구소비재	7.77	7.27	6.71
라. 비내구소비재	10.90	10.90	10.86
2. 원자재	7.47	7.29	6.11
기초원료	3.96	3.96	3.83
가. 연료	5.99	5.99	5.81
나. 광물	2.79	2.79	2.75
다. 경공업 원료	2.79	2.79	3.88
중간재	7.92	7.72	6.40
라. 유지	4.06	4.05	10.29
마. 섬유류	8.64	8.64	8.63
바. 화공품	7.78	7.38	5.86
사. 철강재	7.12	6.85	1.77
아. 비철금속	6.38	6.28	6.21
자. 기타	7.99	7.99	6.83
3. 자본재	7.60	6.11	5.78
가. 기계류와 정밀기기	7.86	6.56	6.26
나. 전기, 전자기기	7.84	5.24	4.84
다. 수송장비	5.85	5.45	5.41
라. 기타	7.40	6.84	6.24
전 체	9.37	8.18	8.03

해 양허세율에 의한 실행세율 인하효과가 두드러짐에 따라 품목군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즉,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그리고 기타 자본재의 2004년 실행세율은 6.26%, 4.84%, 6.24%로 전기·전자기기 품목군에서의 양허세율로 인한 인하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중공업의 관세환급 논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가. 경공업 분야

경공업 중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은 섬유·가죽제품으로 전체 경공업 수출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³⁰⁾. 이에 환급액도 전체 경공업 환급액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섬유직물과 의류 및 장신품의 환급액이 많았다.

<표 III-21>에서 보듯이 2000년 기준 전체 환급액 중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5%이다. 이 중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섬유 및 가죽제품이 경공업 환급액의 약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섬유직물과 의류 및 장신품 산업의 환급액이 각각 1,095억원과 1,05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에서 보듯이 섬유 및 가죽제품의 환급받은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1990년 2.34%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4년에는 1.82%이었고³¹⁾, 1998년 1.48%까지 하락하였으나 그후 1.84%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의류 및 장신품의 환급비율은 2000년 기준 2.55%로 높은 편이다.

경공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높아지는 추세이다. 섬유 및 가죽제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섬유사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도 1990년 14.75%에서 1995년 45.25%, 1998년 46.29%로 증가하여 섬유 및

30) <표 III-23> 참고.

31) <부표 1> 참고.

가죽제품의 환급비율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환급받은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높은 경공업으로는 음식료품이 있다(<표 Ⅲ-12>). 음식료품의 환급비율은 1990년 3.13%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3년 3.54%였으며, 그 후 1998년에는 4.05%, 2000년에는 5.87%로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곡 및 제분 그리고 조미료 및 유지의 환급비율이 높음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표 Ⅲ-24>). 정곡 및 제분의 환급비율은 10%를 넘는 매우 높은 환급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기준 정곡 및 제분의 전체 환급액 36억원 중 베이커리 기타 혼합물 및 반죽(HS 1901.20.9000)이 25억원을, 기타(HS 1901.90.9099)가 1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의 환급비율은 8.7%이나 후자의 환급비율은 23.8%로 매우 높아 이로 인해 전체적인 환급비율은 10.77%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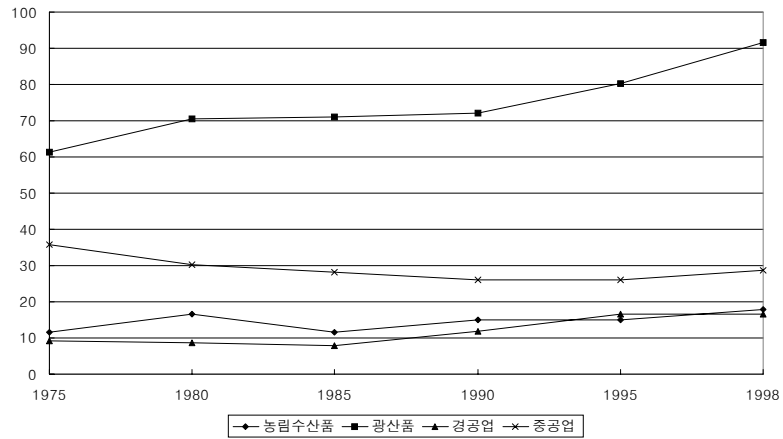
음식료품 중 조미료 및 유지의 환급비율도 2000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고춧가루(HS 0904.20.2000)의 환급액이 1998년 12.8억원에서 2000년 78.5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환급비중이 11.97%에 이르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류는 기본(잠정)세율과 시장접근 양허세율이 1998년의 경우 50%이며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에는 288%로 고액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이러한 고관세로 인해 환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림수산품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와 관련된 환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³²⁾.

32) 국내 산업의 수입의존도 변화 추이는 <부표 7> 참고.

[그림 III-5] 총수요 수입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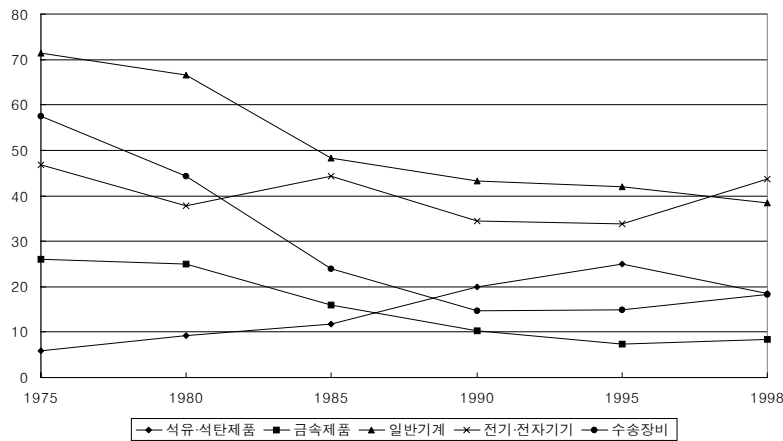
(단위: %)



전체적으로 경공업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하는 반면, 다음에서 언급할 중공업의 경우 수입의존도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6] 중공업 수입의존도

(단위: %)



나. 중공업 분야

<표 Ⅲ-23>에서 보듯이 중공업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출액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수송장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기준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중 전자기기 부분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69%로 액수면에서도 전체 경공업 수출액보다도 컸다. 그 다음으로도 역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중 컴퓨터 및 사무기기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4%이었다. 그 다음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은 수송장비의 자동차 및 부분품으로 8.66%, 선박 5.50%이었다. 그 밖에 석유제품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4%로 수출비중이 높았다. 이들 산업의 환급받은 수출액도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많았으나, 그 순서는 다르다. 예를 들어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기기 부분품의 경우 전체 환급받은 수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3%로 자동차 및 부분품 12.20%, 컴퓨터 및 사무기기 9.31%, 석유제품 10.70% 보다 낮았다.

전자기기 부분품의 경우 총수출액에서 환급받은 수출액 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표 Ⅲ-22>). 2000년 기준 모든 산업의 비율 평균이 63%였으나, 전자기기 부분품은 24.7%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³³⁾에 의해 관련 제품의 관세율이 점차 무세화됨에 따

33) ITA는 우루과이 협상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 386개 품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세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ITA에 참여한 국가는 호주, 일본, 캐나다, 대만, 노르웨이, EC(15개국),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아이슬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미국 등 29개국이며, 이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체코 공화국, 인도, 이스라엘 등 11개국이 참가하여 총 4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정보기술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5%에 달한다. ITA에 의하면 1997년 7월 1일 이후 관련 품목의 관세율을 2000년 1월 1일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면서 2000년에는 원칙적으로 완전 무세화하기로 합의

라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향후 2004년까지 계속해서 무세화를 추진할 예정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기·전자기기 품목군의 2004년 양허세율 인하효과가 두드러지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전체의 환급받은 수출액 대비 환급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그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1990년 환급받은 수출액 대비 환급비율은 2.50%이었으나, 그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1.17%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도 <표 III-24>에서 보듯이 0.38%로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선박에서도 총수출액에서 환급받은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 0.2%로 가장 낮았다. 또한 기타수송장비도 7.1%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III-16>에서 보듯이 환급액 기준으로 석유제품의 환급액은 전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환급액이 5,644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25.8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환급액을 받고 있는 자동차 및 부분품의 환급액이 1,483억원임을 감안할 때 매우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원유수입물량은 약 11억배럴로 일정하고 관세율 5%도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유 관세수입이 1999년 8천억원에서 2000년에는 1.3조원으로 증가한 것도 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급등의 원인은 2000년 원유 수입가격이 28.2달러/배럴로 1999년에 비해 67%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의 환급액이 가장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석유제품의 가장 대표적인 원재료인 원유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들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예조항으로 인하여 2000년에 193개 품목이 무세화되며 이후 2004년까지 HS 10단위 기준 386개 품목이 완전 무세화된다. 우리나라 이외에 유예조항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태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2005년까지는 전 품목이 무세화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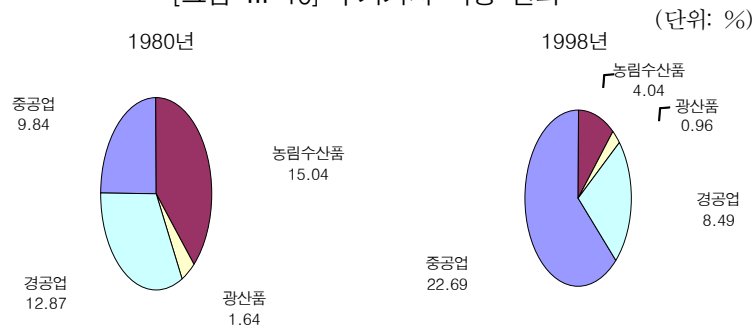
수 있다. 즉, 원유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이 안 되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여타 비경쟁 원재료의 관세율 수준인 0~2%에 비해 5%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다. 이번의 WTO DDA 협상을 위한 관세율 정책을 고려할 때 각 산업별 관세환급제도 이용을 함께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경공업의 음식료품과 중공업의 석유제품의 환급비율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섬유 및 가죽제품의 환급이용도 눈에 띈다. 이들 산업의 관세율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관세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창출부터 살펴보자. 1980~1995년 사이에 국내 부가가치의 증가는 주로 중공업에서 발생하였다(경상가격 기준). 즉, 1995년 이전 15년간 부가가치는 중공업, 경공업, 광산품, 농수산품의 순으로 증가해 왔으며 중공업은 연도에 따라 경공업의 2~3배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

[그림 III-10]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출하여 왔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중공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경공업에서도 음식료품과 섬유·가죽제품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매우 낮아 농림수산물에 가깝고 이외 인쇄·출판 및 복제는 중공업의 평균치 수준이며 목재·종이도 높은 편이다. 한편 중공업 가운데는 전기·전자기기와 수송기계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어서 3~5배에 이른다.

<표 III-10> 부가가치증가율, 무역특화지수, 수입의존도의 변화

(단위: %)

산 업	부가가치증가율 ¹⁾			무역특화지수 ²⁾			수입의존도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농림수산물	7	0	9	-52.6	-58.0	-69.1	11.6	14.9	15
광산물	1	5	10	-98.2	-98.0	-99.1	71	72	80
경공업	8	9	15	58.0	42.8	18.1	8	12	16.5
음식료품	7	10	13	-17.2	-34.1	-39.9	4	9	12
섬유·가죽제품	6	4	11	77.6	70.2	49.3	11	14	25
목재·종이제품	16	20	25	-50	-53.0	-55.1	17	21	23
인쇄, 출판및복제	20	28	34	-52.4	-49.0	-50.7	4.2	5.6	7.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7	21	16	71.6	64.2	27.3	14	12	19
중공업	22	32	28	-9.7	-12.5	-0.2	28	26	26
석유·석탄제품	3	20	12	-24.0	-48.3	-7.1	12	20	25
화학제품	17	23	24	-30.7	-28.5	-33.8	24	25	22
요업 토석제품	16	24	19	5.1	-22.8	-42.5	9	9	8
1차금속	18	23	23	-11.8	-23.3	-32.4	22	22	23
금속제품	46	25	25	61.2	52.1	41.8	16	10	8
일반기계	26	44	16	-66.5	-47.0	-53.8	48	43	42
전기 및 전자기기	33	57	46	4.0	21.5	31.8	44	34	34
정밀기기	13	25	34	-57.1	-50.6	-60.6	68	63	64
수송기계	37	40	26	51.3	24.6	39.4	24	15	15

주: 1) 부가가치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로 경상가격 기준이며 수입의존도는 불변가격 기준임.

$$2) \text{ 무역특화지수} = \frac{\text{수출} - \text{수입}}{\text{수출} + \text{수입}} \times 100$$

소득수준의 증대를 위해서는 자본 1원당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부가가치 증가율로 볼 때 1995년을 전후하여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기계 순으로 유망하며 반대로 농림수산물, 섬유·가죽제품, 그리고 음식료품은 부가가치로도 전망이 좋지 않은 산업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산업의 일부는 첨단산업화되는 부문도 있으므로 정책 결정시에는 세세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이들 통계치가 의미하는 바는 투입된 일정 규모의 자원으로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중공업 가운데 전기·전자기기와 정밀기기 등이 크고 농림수산물과 섬유·가죽제품 등은 작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에 자원이 배분되도록 관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 다른 제조업보다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음식료품과 석유제품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유로 관세환급 이용도 높다고 여겨지므로, 관세환급 등을 고려하여 섬유 및 가죽제품과 음식료품의 관세를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개별환급과 정액환급 이용

<표 Ⅲ-21>에서 보듯이 2000년 기준 전체 개별환급액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0%로 중공업의 82.21%에 비해 낮다. 이는 중공업의 환급액이 경공업에 비해 월등히 많고, 이로 인해 중공업에서 개별환급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공업 쪽에 중소기업이 더 많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정액환급액은 경공업과 중공업이 각각 50.02%와 49.8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액환급에 대한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은 1998년 각각 64.80%와 35.06%, 1999년 53.85%와 46.02%에서 그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액환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정액환급 중에서 가장 많은 정액환급을 받는 산업은 섬유 및 가죽제품으로, 특히 섬유직물의 정액환급을 받는 비중이 높다. 1998년의 경우 정액환급의 절반 이상이 섬유 및 가죽제품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산업에서 개별환급을 받은 수출액이 정액환급을 받은 수출액보다 많았지만, 단 인쇄 출판 및 복제는 예외적인 산업으로 정액환급을 받은 수출액이 더 많다. 이는 아마도 중소기업 규모의 수출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정액환급을 받은 수출액 대비 환급비율은 중공업에서 화학제품의 환급비율이 1을 넘었고, 석유·석탄제품도 환급비율이 1을 넘었지만 이는 환급을 신청한 수출액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

III.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93

<표 III-11> 산업별 관세 환급제도 이용 현황

(단위: 십억원, %)

	1997(7~12월)			1998년			1999년			2000년		
	환급액	환급수출액	환급비중	환급액	환급수출액	환급비중	환급액	환급수출액	환급비중	환급액	환급수출액	환급비중
농림수산물	3.9	28.4	13.86	10.5	117.5	8.97	18.3	201.4	9.06	7.8	129.5	6.06
광산물	0.0	2.5	1.10	0.1	4.5	1.14	0.1	7.1	1.33	0.1	5.4	2.51
제조업	1,439.8	73,914.2	1.95	4,076.7	232,326.1	1.75	3,728.2	206,271.9	1.81	3,925.7	228,909.2	1.71
(경공업)	154.7	9,042.4	1.71	450.1	29,240.3	1.54	428.4	22,509.2	1.90	424.7	21,996.9	1.93
음식료품	24.4	437.2	5.58	63.5	1,567.8	4.05	57.6	1,051.8	5.48	63.7	1,083.7	5.87
섬유·가죽제품	118.6	7,398.9	1.60	343.4	23,180.5	1.48	324.3	17,584.0	1.84	313.1	17,001.2	1.84
목재·종이제품	4.4	570.6	0.76	17.6	2,261.8	0.78	18.1	1,937.0	0.94	18.0	2,007.2	0.89
인쇄, 출판및복제	0.4	32.6	1.09	1.1	108.9	1.04	1.3	114.1	1.15	1.2	91.1	1.3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7.1	603.2	1.17	24.4	2,121.2	1.15	27.0	1,822.4	1.48	28.8	1,813.7	1.59
(중화학공업)	642.5	32,435.9	1.98	1,813.3	101,542.9	1.79	1,649.9	91,881.3	1.80	1,750.5	103,456.2	1.69
석유·석탄제품	127.1	4,679.6	2.72	431.1	9,413.8	4.58	358.5	8,514.2	4.21	564.4	13,446.9	4.20
화학제품	100.0	5,728.0	1.75	289.4	19,320.9	1.50	285.4	16,016.4	1.78	313.3	17,588.4	1.78
비금속광물제품	2.0	159.7	1.23	8.4	729.1	1.15	9.4	881.8	1.06	9.3	921.7	1.01
제1차금속	134.4	6,472.7	2.08	330.0	19,304.9	1.71	228.8	12,355.3	1.85	174.1	11,384.0	1.53
금속제품	6.3	534.1	1.19	18.2	1,896.8	0.96	21.4	1,964.3	1.09	18.8	1,751.6	1.07
일반기계	17.9	1,430.9	1.25	59.2	5,607.9	1.05	65.6	5,516.7	1.19	73.2	5,632.1	1.30
전기전자기기	198.9	8,335.5	2.39	513.2	28,190.8	1.82	507.3	29,700.1	1.71	412.8	35,331.0	1.17
정밀기기	11.6	578.1	2.00	33.9	1,962.5	1.73	28.4	1,508.7	1.88	32.7	1,882.7	1.74
수송장비	44.4	4,517.4	0.98	130.0	15,116.3	0.86	145.1	15,423.8	0.94	151.8	15,517.7	0.98
사회및기타서비스	0.1	40.8	0.21	0.2	113.3	0.22	0.2	76.0	0.32	0.2	53.2	0.30
기타	0.0	0.7	1.72	0.1	3.4	1.52	0.0	3.6	0.87	0.0	2.0	1.35
합계	801	41,551	1.93	2,274	131,022	1.74	2,097	114,679	1.83	2,183	125,643	1.74

주: HS품번의 자료를 산업연관표의 28산업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합을 구함. 관세율표상에 표기되지 않은 HS품번(2424번 등)은 자료에서 제외하여 분석함. 1997년과 1998년은 달러화로 표기된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시장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로 전환함.

<표 III-12> 산업별 개별 관세 환급제도 이용 현황

(단위: 십억원, %)

	1997(7~12월)			1998년			1999년			2000년		
	환급액	환급수출액	환급비중	환급액	환급수출액	환급비중	환급액	환급수출액	환급비중	환급액	환급수출액	환급비중
농림수산물	3.9	25.3	15.55	10.5	87.9	11.93	18.2	157.3	11.56	7.8	70.4	11.05
광산물	0.0	2.5	1.10	0.1	4.5	1.14	0.1	7.1	1.33	0.1	5.4	2.51
제조업	1,393.2	67,718.5	2.06	3,946.2	211,155.6	1.87	3,535.2	184,417.2	1.92	3,719.8	204,716.1	1.82
(경공업)	131.2	5,839.2	2.25	387.4	19,015.5	2.04	357.1	13,530.7	2.64	355.9	13,164.4	2.70
음식료품	24.1	416.2	5.80	62.6	1,449.0	4.32	56.6	952.8	5.94	62.2	929.8	6.68
섬유·가죽제품	97.9	4,620.3	2.12	289.7	14,485.3	2.00	268.5	10,145.6	2.65	260.0	9,681.2	2.69
목재·종이제품	4.0	528.3	0.76	16.5	2,104.2	0.79	16.5	1,767.4	0.93	16.1	1,796.6	0.90
인쇄, 출판및복제	0.1	5.9	1.83	0.8	59.9	1.30	0.6	42.9	1.30	0.7	36.5	1.83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5.0	268.5	1.86	17.8	917.0	1.94	15.0	622.0	2.41	17.0	720.3	2.36
(중화학공업)	631.0	30,939.6	2.04	1,779.4	96,070.0	1.85	1,589.0	85,443.2	1.86	1,681.9	95,775.9	1.76
석유·석탄제품	127.1	4,676.8	2.72	431.0	9,407.2	4.58	358.4	8,509.6	4.21	564.3	13,441.0	4.20
화학제품	97.4	5,382.9	1.81	281.6	18,088.9	1.56	271.9	14,698.9	1.85	298.7	16,203.6	1.84
비금속광물제품	1.7	131.8	1.33	7.9	642.4	1.22	8.6	786.6	1.09	7.9	768.6	1.03
제1차금속	133.4	6,347.9	2.10	326.8	18,794.9	1.74	221.7	11,669.5	1.90	167.0	10,670.1	1.57
금속제품	5.0	308.6	1.63	13.7	1,054.9	1.30	11.1	783.5	1.42	10.8	727.5	1.49
일반기계	17.0	1,285.1	1.32	54.5	4,721.3	1.15	57.4	4,469.4	1.28	63.5	4,318.2	1.47
전기전자기기	194.9	7,932.7	2.46	504.5	27,037.7	1.87	492.6	28,352.1	1.74	392.5	33,152.8	1.18
정밀기기	10.4	413.4	2.52	30.6	1,441.6	2.12	24.0	1,042.3	2.31	27.0	1,290.7	2.09
수송장비	44.1	4,460.3	0.99	128.9	14,881.1	0.87	143.3	15,131.4	0.95	150.0	15,203.5	0.99
사회및기타서비스	0.0	5.8	0.29	0.2	60.4	0.26	0.1	36.3	0.38	0.0	14.4	0.32
기타	0.0	0.4	2.76	0.1	2.4	2.07	0.0	0.7	2.82	0.0	0.5	3.55
합계	766.2	36,812.9	2.081	2,177.6	115,240.8	1.890	1,964.6	99,175.4	1.981	2,045.9	109,030.9	1.876

Ⅲ. 관세 환급제도의 이용실적 95

<표 III-14> 산업별 정액 관세 환급제도 이용 현황

(단위: 십억원, %)

	1997(7~12월)			1998년			1999년			2000년		
	환급액	환급수출액 비중	환급비중	환급액	환급수출액 비중	환급비중	환급액	환급수출액 비중	환급비중	환급액	환급수출액 비중	환급비중
농림수산물	0.01	3.11	0.20	0.04	29.52	0.14	0.07	44.06	0.15	0.06	59.09	0.11
광산품	-	-	-	0.00	0.01	0.50	0.00	0.02	1.10	0.00	0.02	0.82
제조업	46.54	6,195.70	0.75	130.45	21,170.56	0.62	199.10	21,854.70	0.88	205.90	24,193.08	0.85
(경공업)	23.57	3,203.16	0.74	62.66	10,224.75	0.61	71.28	8,978.51	0.79	68.79	8,832.51	0.78
음식료품	0.27	20.95	1.30	0.86	118.78	0.72	1.01	99.01	1.02	1.51	153.94	0.98
섬유·가죽제품	20.64	2,778.61	0.74	53.73	8,685.24	0.62	55.84	7,458.36	0.75	53.08	7,320.02	0.73
목재·종이제품	0.34	42.29	0.79	1.08	157.54	0.68	1.64	169.55	0.97	1.88	210.61	0.89
인쇄, 출판및복제	0.25	26.69	0.93	0.35	48.98	0.72	0.76	71.19	1.00	0.57	54.60	1.05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2.08	334.63	0.62	6.64	1,204.19	0.55	12.03	1,200.40	1.00	11.75	1,083.34	1.07
(중화학공업)	11.49	1,496.27	0.77	33.90	5,472.91	0.62	60.91	6,458.10	0.93	68.56	7,680.28	0.89
석유·석탄제품	0.03	2.76	1.06	0.06	6.66	0.85	0.07	4.64	1.50	0.09	5.95	1.46
화학제품	2.60	345.06	0.75	7.79	1,232.04	0.63	13.56	1,317.51	1.00	14.51	1,384.88	1.05
비금속광물제품	0.21	27.86	0.76	0.50	86.62	0.58	0.81	95.26	0.83	1.44	153.04	0.94
제1차금속	1.00	124.83	0.80	3.21	509.92	0.63	7.08	685.86	1.00	7.05	713.95	0.99
금속제품	1.31	225.45	0.58	4.46	841.83	0.53	10.29	1,180.77	0.87	7.97	1,024.11	0.78
일반기계	0.89	145.73	0.61	4.66	886.59	0.53	8.18	1,047.24	0.78	9.67	1,313.97	0.74
전기전자기기	3.98	402.77	0.99	8.75	1,153.07	0.76	14.74	1,347.92	1.00	20.33	2,178.26	0.93
경밀기기	1.13	164.67	0.68	3.35	520.95	0.64	4.34	466.48	0.93	5.68	591.92	0.96
수송장비	0.34	57.13	0.60	1.12	235.23	0.48	1.83	292.42	0.63	1.81	314.19	0.58
사회및기타서비스	0.07	35.00	0.20	0.09	52.89	0.17	0.10	39.67	0.26	0.12	38.77	0.30
기타	0.00	0.31	0.34	0.00	1.00	0.18	0.01	2.82	0.30	0.01	1.48	0.56
합계	35.13	4,737.86	0.74	96.69	15,781.07	0.61	132.37	15,503.18	0.83	137.53	16,612.15	0.83

<표 III-14> 산업별 환금수출비중 현황

(단위: 십억원, %)

	1997(7~12월)			1998년			1999년			2000년		
	수출액	환 금 수출액	비중	수출액	환 금 수출액	비중	수출액	환 금 수출액	비중	수출액	환 금 수출액	비중
농림수산물	1,085	28	2.41	1,638	117	7.03	1,631	201	12.33	1,643	129	7.88
광산물	55	3	4.22	55	5	8.20	227	7	3.11	327	5	1.66
제조업	236,324	73,914	28.86	337,392	232,326	67.68	315,217	206,272	65.4	363,547	228,909	62.97
(경공업)	25,417	9,042	32.51	34,199	29,240	84.11	30,323	22,509	74.23	30,730	21,997	71.58
음식료품	2,196	437	18.27	2,883	1,568	53.50	2,543	1,052	41.36	2,268	1,084	47.78
섬유·가죽제품	19,370	7,399	34.90	25,329	23,181	89.99	22,411	17,584	78.46	22,870	17,001	74.34
목재·종이제품	1,474	571	35.30	2,441	2,262	91.10	2,209	1,937	87.68	2,248	2,007	89.28
인쇄, 출판및복제	215	33	13.83	307	109	34.74	337	114	33.82	386	91	23.61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2,161	603	25.46	3,239	2,121	64.70	2,824	1,822	64.5	2,958	1,814	61.31
(중화학공업)	105,453	32,436	28.41	151,597	101,543	65.83	142,447	91,881	64.5	166,408	103,456	62.17
석유·석탄제품	4,960	4,680	86.04	6,350	9,414	147.04	6,852	8,514	124.25	10,443	13,447	128.77
화학제품	14,349	5,728	36.62	19,987	19,321	95.24	17,833	16,016	89.86	20,860	17,588	84.32
비금속광물제품	558	160	26.21	938	729	76.03	1,000	882	88.16	1,135	922	81.23
제1차금속	12,885	6,473	45.57	23,469	19,305	82.12	13,026	12,355	94.86	11,941	11,384	95.33
금속제품	2,522	534	19.45	3,331	1,897	56.00	3,163	1,964	62.10	3,035	1,752	57.72
일반기계	7,233	1,431	18.34	9,615	5,608	57.30	8,896	5,517	62.23	10,726	5,632	52.51
전기전자기기	38,764	8,336	19.73	52,985	28,191	52.20	60,818	29,700	48.83	74,428	35,331	47.47
정밀기기	2,113	578	25.34	3,290	1,963	58.83	2,700	1,509	55.89	3,276	1,883	57.46
수송장비	22,060	4,517	19.49	31,632	15,116	46.40	28,188	15,424	54.73	30,564	15,518	50.77
사회및기타서비스	95	41	39.35	110	113	100.12	104	76	73.22	39	53	135.16
기타	187	1	0.34	583	3	0.62	277	4	1.29	138	2	1.46
합계	132,292	41,551	31.408	188,181	131,022	69.63	175,009	114,679	65.5	199,286	125,643	63.05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97

<표 III-15> 환급액과 환급받은 수출액

(단위: 백만원, %)

	1998년			1999년			2000년		
	환급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환급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환급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농림수산물	10,536	117,468	8.97	18,251	201,381	9.06	7,843	129,465	6.06
작물	1,885	4,921	38.30	835	4,507	18.54	663	4,883	13.59
축산	43	112	38.24	40	1,073	3.74	189	2,230	8.46
임산물	1,847	32,336	5.71	1,731	49,961	3.47	1,418	71,892	1.97
수산물	6,761	80,099	8.44	15,644	145,840	10.73	5,572	50,460	11.04
광산물	52	4,543	1.14	95	7,100	1.33	136	5,417	2.51
석탄	0	0	0.00	0	0	0.00	2	125	1.34
원유및천연가스	0	0	0.00	0	0	0.00	0	13	2.32
금속광석	23	2,440	0.94	34	3,628	0.93	38	3,939	0.97
비금속광물	29	2,104	1.36	61	3,472	1.76	96	1,339	7.15
경공업	450,056	29,240,257	1.54	428,378	22,509,220	1.90	424,735	21,996,887	1.93
육류및낙농품	2,641	43,839	6.02	1,766	101,404	1.74	4,371	66,582	6.56
수산물가공품	18,080	404,305	4.47	17,176	264,523	6.49	21,258	311,502	6.82
정곡및제분	4,971	45,526	10.92	3,631	32,826	11.06	3,643	33,833	10.77
제당및전분	4,481	195,216	2.30	2,800	113,895	2.46	2,392	112,806	2.12
빵,과자및곡수류	8,960	354,431	2.53	10,150	196,676	5.16	14,722	192,867	7.63
조미료및유지	5,762	257,453	2.24	5,441	90,102	6.04	10,550	88,137	11.97
과채가공품및기타식료품	7,108	150,496	4.72	4,461	122,991	3.63	4,709	143,367	3.28
음료품	11,247	96,808	11.62	12,033	108,001	11.14	1,257	80,319	1.56
배합사료	101	6,272	1.62	36	1,432	2.52	249	10,758	2.32
담배	132	13,467	0.98	111	19,943	0.56	512	43,533	1.18
섬유사	35,700	2,007,892	1.78	29,072	1,296,669	2.24	26,121	1,443,544	1.81
섬유직물	136,377	10,234,537	1.33	122,132	7,375,947	1.66	109,493	6,960,971	1.57
의류및장신품	89,719	5,337,645	1.68	95,316	4,308,928	2.21	105,424	4,136,919	2.55
기타섬유제품	37,025	2,745,240	1.35	36,236	2,351,028	1.54	34,260	2,393,089	1.43
가죽제품및모피	44,607	2,855,197	1.56	41,538	2,251,404	1.84	37,801	2,066,661	1.83
목재및나무제품	963	108,016	0.89	843	87,416	0.96	639	90,239	0.71
펄프및종이	16,638	2,153,748	0.77	17,276	1,849,551	0.93	17,320	1,916,935	0.90
인쇄,출판및복제	1,132	108,933	1.04	1,314	114,079	1.15	1,239	91,134	1.36
가구	995	165,934	0.60	1,193	119,376	1.00	1,294	124,824	1.04
기타제조업제품	23,418	1,955,302	1.20	25,853	1,703,030	1.52	27,481	1,688,867	1.63
중공업	1,813,318	101,542,932	1.79	1,649,935	91,881,343	1.80	1,750,487	103,456,150	1.69
석탄제품	1	336	0.23	1	0	-	0	0	-
석유제품	431,070	9,413,494	4.58	358,469	8,514,215	4.21	564,413	13,446,915	4.20

<표 III-16>의 계속

	1998년			1999년			2000년		
	환금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환금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환금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유기화학기초제품	70,649	4,454,626	1.59	69,870	4,158,695	1.68	80,946	5,109,418	1.58
무기화학기초제품	21,312	1,057,181	2.02	19,637	733,232	2.68	19,508	798,476	2.44
비료및농약	1,038	259,351	0.40	1,194	187,569	0.64	972	151,868	0.64
의약품및화장품	8,990	409,314	2.20	9,051	335,418	2.70	8,705	342,000	2.55
합성수지및합성고무	82,185	5,788,427	1.42	77,183	4,358,654	1.77	93,933	5,155,635	1.82
화학섬유	25,934	1,113,049	2.33	20,875	800,959	2.61	20,639	829,138	2.49
기타화학제품	41,672	2,229,406	1.87	47,122	1,913,270	2.46	47,675	1,853,434	2.57
플라스틱제품	17,261	1,567,560	1.10	19,791	1,551,293	1.28	22,196	1,618,144	1.37
고무제품	20,337	2,442,027	0.83	20,702	1,977,311	1.05	18,677	1,730,335	1.08
유리제품	6,832	523,261	1.31	7,615	615,852	1.24	7,242	654,360	1.11
도자기및점토제품	311	24,890	1.25	205	24,560	0.84	338	34,112	0.99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200	43,931	0.46	352	129,873	0.27	168	81,547	0.2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1,023	136,988	0.75	1,196	111,543	1.07	1,568	151,668	1.03
선철및강반제품	2,897	550,392	0.53	2,666	260,096	1.03	1,976	110,816	1.78
철강1차제품	67,168	9,594,398	0.70	65,301	6,590,788	0.99	68,944	7,303,890	0.94
비철금속괴및1차제품	259,967	9,160,069	2.84	160,844	5,504,453	2.92	103,180	3,969,299	2.60
금속제품	18,184	1,896,762	0.96	21,432	1,964,316	1.09	18,820	1,751,587	1.07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36,148	3,331,618	1.09	39,825	3,455,552	1.15	45,422	3,372,336	1.35
특수목적용기계및장비	23,013	2,276,546	1.01	25,760	2,061,100	1.25	27,768	2,259,813	1.23
전기기계및장치	52,223	3,320,855	1.57	45,889	2,514,549	1.82	45,062	2,888,606	1.56
전자기기부분품	118,008	8,036,066	1.47	122,237	7,211,783	1.69	119,524	7,707,986	1.55
영상,음향및통신기기	128,130	7,378,873	1.74	120,052	7,084,480	1.69	108,239	10,716,427	1.01
컴퓨터및사무기기	198,450	6,531,118	3.04	204,504	10,375,722	1.97	124,881	11,692,942	1.07
가정용전기기기	16,335	2,923,845	0.56	14,647	2,513,535	0.58	15,140	2,325,084	0.65
정밀기기	33,948	1,962,502	1.73	28,375	1,508,735	1.88	32,723	1,882,653	1.74
자동차및부분품	127,181	14,921,221	0.85	141,495	15,153,673	0.93	148,311	15,334,405	0.97
선박	533	46,436	1.15	188	15,720	1.20	208	16,886	1.23
기타수송장비	2,256	148,392	1.52	3,454	254,398	1.36	3,309	166,370	1.99
문화오락서비스	248	113,275	0.22	242	76,001	0.32	162	53,163	0.30
분류불명	52	3,425	1.52	31	3,568	0.87	27	2,009	1.35
합계	2,274,261	131,021,900	1.74	2,096,932	114,678,613	1.83	2,183,391	125,643,091	1.74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99

<표 III-17> 개별환급액과 개별환급받은 수출액

(단위: 백만원, %)

	1998년			1999년			2000년		
	개 별 환급액	개별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개 별 환급액	개별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개 별 환급액	개별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농림수산물	10,493	87,945	11.93	18,183	157,323	11.56	7,779	70,372	11.05
작물	1,879	3,950	47.58	828	3,621	22.87	659	4,491	14.68
축산	43	112	38.24	27	104	26.15	187	1,824	10.28
임산물	1,840	21,861	8.42	1,702	14,782	11.51	1,360	13,598	10.00
수산물	6,731	62,023	10.85	15,626	138,816	11.26	5,572	50,460	11.04
광산물	52	4,534	1.14	94	7,078	1.33	136	5,398	2.51
석탄	0	0	0.00	0	0	0.00	0	0	0.00
원유및천연가스	0	0	0.00	0	0	0.00	0	0	0.00
금속광석	23	2,440	0.94	34	3,628	0.93	38	3,939	0.97
비금속광물	29	2,094	1.37	61	3,450	1.76	96	1,320	7.24
경공업	387,385	19,015,510	2.04	357,102	13,530,713	2.64	355,944	13,164,376	2.70
육류및낙농품	2,540	34,295	7.41	1,683	97,605	1.73	4,309	63,669	6.77
수산가공품	17,774	367,130	4.84	16,979	243,594	6.97	20,863	277,942	7.51
정곡및제분	4,971	45,480	10.93	3,630	32,792	11.07	3,643	33,833	10.77
제당및전분	4,480	195,078	2.30	2,799	113,804	2.46	2,391	112,704	2.12
빵,과자및곡수류	8,835	321,022	2.75	10,025	178,316	5.62	14,523	153,148	9.48
조미료및유지	5,758	256,329	2.25	5,437	89,390	6.08	10,545	87,311	12.08
과채가공품및기타식품	6,809	115,443	5.90	3,882	69,218	5.58	3,871	67,903	5.70
음료품	11,227	94,516	11.88	12,024	106,702	11.27	1,247	79,145	1.58
배합사료	101	6,272	1.62	36	1,423	2.53	248	10,573	2.34
담배	132	13,467	0.98	111	19,943	0.56	512	43,533	1.18
섬유사	34,705	1,899,883	1.83	27,796	1,179,378	2.36	25,160	1,336,513	1.88
섬유직물	112,976	6,108,829	1.85	98,723	3,884,596	2.54	86,840	3,360,156	2.58
의류및장신품	73,587	2,767,359	2.66	82,457	2,452,770	3.36	92,774	2,415,022	3.84
기타섬유제품	30,907	1,783,603	1.73	27,228	1,234,971	2.20	25,129	1,222,335	2.06
가죽제품및모피	37,520	1,925,594	1.95	32,249	1,393,903	2.31	30,116	1,347,139	2.24
목재및나무제품	946	105,663	0.90	804	82,710	0.97	603	86,662	0.70
펄프및종이	15,578	1,998,557	0.78	15,673	1,684,702	0.93	15,479	1,709,905	0.91
인쇄,출판및복제	779	59,949	1.30	557	42,886	1.30	667	36,536	1.83
가구	592	65,755	0.90	427	21,409	2.00	270	24,541	1.10
기타제조업제품	17,179	851,285	2.02	14,591	600,600	2.43	16,754	695,806	2.41
중공업	1,779,421	96,070,025	1.85	1,589,024	85,443,246	1.86	1,681,932	95,775,869	1.76
석탄제품	1	336	0.23	1	0	-	0	0	-
석유제품	431,014	9,406,837	4.58	358,398	8,509,578	4.21	564,326	13,440,960	4.20

<표 III-17>의 계속

	1998년			1999년			2000년		
	개 별 환금액	개 별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개 별 환금액	개 별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개 별 환금액	개 별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유기화학기초제품	70,463	4,433,340	1.59	69,567	4,137,898	1.68	80,094	5,051,167	1.59
무기화학기초제품	21,212	1,011,970	2.10	19,433	717,644	2.71	19,199	769,901	2.49
비료및농약	81,354	5,641,224	1.44	76,215	4,260,191	1.79	92,793	5,056,150	1.84
의약품및화장품	25,224	1,014,645	2.49	19,497	711,635	2.74	19,083	742,680	2.57
합성수지및합성고무	934	254,058	0.37	888	174,711	0.51	919	148,007	0.62
화학섬유	8,701	378,624	2.30	8,515	298,295	2.85	8,116	301,080	2.70
기타화학제품	40,009	2,082,864	1.92	43,521	1,688,813	2.58	44,486	1,619,930	2.75
플라스틱제품	13,720	897,843	1.53	14,104	805,809	1.75	15,955	859,640	1.86
고무제품	19,972	2,374,337	0.84	20,119	1,903,896	1.06	18,085	1,655,010	1.09
유리제품	6,656	495,979	1.34	7,269	572,343	1.27	6,904	618,932	1.12
도자기및섬토제품	300	20,578	1.46	172	22,066	0.78	235	22,286	1.05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192	43,306	0.44	324	128,050	0.25	139	79,419	0.17
기타비금속광물제품	716	82,583	0.87	794	64,108	1.24	602	48,006	1.25
선철및강반성품	2,895	550,023	0.53	2,659	258,968	1.03	1,974	110,735	1.78
철강1차제품	65,432	9,244,285	0.71	60,700	6,082,407	1.00	64,423	6,792,461	0.95
비철금속과및1차제품	258,497	9,000,631	2.87	158,372	5,328,104	2.97	100,651	3,766,863	2.67
금속제품	13,722	1,054,932	1.30	11,146	783,547	1.42	10,848	727,475	1.49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33,719	3,029,338	1.11	35,740	3,042,553	1.17	40,929	2,876,370	1.42
특수목적용기계및장비	20,778	1,692,239	1.23	21,661	1,426,858	1.52	22,589	1,441,804	1.57
전기기계및장치	49,044	2,872,423	1.71	40,555	2,027,370	2.00	38,918	2,278,949	1.71
전자기부분품	114,931	7,695,009	1.50	117,886	6,820,713	1.73	114,734	7,136,831	1.61
영상,음향및통신기기	126,141	7,125,030	1.77	116,783	6,756,256	1.73	100,505	9,886,155	1.02
컴퓨터및사무기기	198,036	6,475,134	3.06	203,169	10,302,235	1.97	123,703	11,605,116	1.07
가정용전기기기	16,303	2,900,091	0.56	14,182	2,445,574	0.58	14,656	2,245,736	0.65
정밀기기	30,603	1,441,551	2.12	24,034	1,042,254	2.31	27,040	1,290,732	2.09
자동차및부분품	126,100	14,695,501	0.86	139,724	14,874,628	0.94	146,585	15,035,033	0.97
선박	527	43,343	1.21	178	12,533	1.42	196	14,393	1.36
기타수송장비	2,224	141,971	1.57	3,407	244,210	1.40	3,235	154,050	2.10
문화오락서비스	159	60,386	0.26	138	36,330	0.38	47	14,392	0.32
분류불명	50	2,430	2.07	21	746	2.82	19	533	3.55
합계	2,177,570	115,240,830	1.89	1,964,563	99,175,436	1.98	2,045,856	109,030,941	1.88

III.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101

<표 III-19> 정액환급액과 정액환급받은 수출액

(단위: 백만원, %)

	1998년			1999년			2000년		
	정액 환급액	정액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정액 환급액	정액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정액 환급액	정액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농림수산물	43	29,523	0.14	68	44,058	0.15	63	59,093	0.11
작물	5	971	0.56	7	885	0.82	4	392	1.03
축산	0	0	-	13	970	1.34	1	406	0.30
임산물	7	10,475	0.07	30	35,179	0.08	58	58,294	0.10
수산물	30	18,076	0.16	18	7,025	0.26	0	0	-
광산물	0	10	0.50	0	22	1.10	0	19	0.82
석탄	0	0	-	0	0	-	0	0	-
원유및천연가스	0	0	-	0	0	-	0	0	-
금속광석	0	0	-	0	0	-	0	0	-
비금속광물	0	10	0.50	0	22	1.10	0	19	0.82
경공업	62,661	10,224,747	0.61	71,276	8,978,507	0.79	68,791	8,832,511	0.78
육류및낙농품	101	9,544	1.06	73	3,799	1.91	61	2,914	2.10
수산가공품	306	37,175	0.82	197	20,930	0.94	395	33,560	1.18
정곡및제분	0	46	0.59	1	34	2.10	0	0	-
제당및전분	1	138	0.62	1	92	0.60	0	101	0.48
빵,과자및국수류	126	33,408	0.38	125	18,360	0.68	200	39,719	0.50
조미료및유지	4	1,124	0.34	3	712	0.44	6	825	0.67
과채가공품및기타식품	299	35,053	0.85	599	53,773	1.11	838	75,464	1.11
음료품	20	2,292	0.86	9	1,299	0.71	10	1,174	0.83
배합사료	0	0	-	0	9	0.90	2	185	0.90
담배	0	0	-	0	0	-	0	0	-
섬유사	995	108,009	0.92	1,276	117,291	1.09	961	107,031	0.90
섬유직물	23,401	4,125,708	0.57	23,410	3,491,351	0.67	22,653	3,600,815	0.63
의류및장신품	16,132	2,570,286	0.63	12,859	1,856,158	0.69	12,650	1,721,897	0.73
기타섬유제품	6,118	961,637	0.64	9,009	1,116,057	0.81	9,131	1,170,754	0.78
가죽제품및모피	7,088	929,603	0.76	9,288	857,500	1.08	7,685	719,523	1.07
목재및나무제품	17	2,353	0.71	39	4,706	0.83	35	3,577	0.99
펄프및종이	1,059	155,191	0.68	1,603	164,849	0.97	1,841	207,030	0.89
인쇄,출판및복제	353	48,984	0.72	757	71,193	1.06	572	54,598	1.05
가구	403	100,178	0.40	766	97,966	0.78	1,024	100,283	1.02
기타제조업제품	6,238	1,104,016	0.57	11,262	1,102,429	1.02	10,727	993,061	1.08
중공업	33,897	5,472,907	0.62	60,911	6,438,096	0.95	68,556	7,680,282	0.89
석탄제품	0	0	-	0	0	-	0	0	-
석유제품	57	6,657	0.85	71	4,637	1.54	87	5,955	1.46

<표 III-18>의 계속

	1998년			1999년			2000년		
	정액 환금액	정액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정액 환금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정액 환금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급 비율
유기화학기초제품	186	21,286	0.87	303	20,797	1.45	852	58,251	1.46
무기화학기초제품	100	45,211	0.22	204	15,588	1.31	309	28,575	1.08
비료및농약	831	147,203	0.56	968	98,463	0.98	1,141	99,485	1.15
의약품및화장품	711	98,404	0.72	1,378	89,324	1.54	1,556	86,457	1.80
합성수지및합성고무	104	5,293	1.96	306	12,858	2.38	53	3,862	1.37
화학섬유	289	30,691	0.94	535	37,123	1.44	589	40,920	1.44
기타화학제품	1,663	146,541	1.14	3,601	224,458	1.60	3,189	233,504	1.37
플라스틱제품	3,541	669,717	0.53	5,687	745,484	0.76	6,241	758,503	0.82
고무제품	365	67,690	0.54	583	73,415	0.79	582	75,325	0.77
유리제품	176	27,281	0.64	347	43,510	0.80	338	35,429	0.95
도자기및섬토제품	12	4,313	0.27	34	2,493	1.35	103	11,826	0.87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8	625	1.28	27	1,823	1.50	30	2,128	1.39
기타비금속광물제품	307	54,405	0.57	402	47,435	0.85	966	103,662	0.93
선철및강반성품	2	369	0.51	8	1,128	0.69	2	81	2.24
철강1차제품	1,736	350,112	0.50	4,601	508,381	0.91	4,521	511,429	0.88
비철금속괴및1차제품	1,470	159,437	0.92	2,472	176,349	1.40	2,529	202,437	1.25
금속제품	4,462	841,831	0.53	10,287	1,180,768	0.87	7,971	1,024,113	0.78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2,429	302,280	0.80	4,085	413,000	0.99	4,493	495,966	0.91
특수목적용기계및장비	2,235	584,307	0.38	4,099	634,242	0.65	5,178	818,009	0.63
전기기계및장치	3,179	448,432	0.71	5,323	487,179	1.09	6,145	609,658	1.01
전자기기부분품	3,077	371,057	0.83	4,351	391,070	1.11	4,790	571,155	0.84
영상,음향및통신기기	1,989	253,843	0.78	3,269	328,224	1.00	7,734	830,272	0.93
컴퓨터및사무기기	414	55,984	0.74	1,335	73,488	1.82	1,178	87,826	1.34
가정용전기기기	91	23,754	0.38	465	67,961	0.68	484	79,349	0.61
정밀기기	3,345	520,950	0.64	4,341	466,481	0.93	5,683	591,921	0.96
자동차및부분품	1,082	225,721	0.48	1,771	279,045	0.63	1,726	299,373	0.58
선박	6	3,093	0.20	10	3,187	0.32	11	2,493	0.46
기타수송장비	32	6,421	0.50	47	10,188	0.46	74	12,320	0.60
문화오락서비스	89	52,890	0.17	104	39,670	0.26	116	38,771	0.30
분류불명	2	995	0.18	10	2,823	0.36	8	1,477	0.56
합계	96,691	15,781,071	0.61	132,369	15,503,177	0.85	137,534	16,612,151	0.83

<표 III-19> 환금액 비중(1998년)

(단위: 백만원, %)

	환금액	비중	개별환금액	비중	정액환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0,536	0.46	10,493	0.48	43	0.04
작물	1,885	0.08	1,879	0.09	5	0.01
축산	43	0.00	43	0.00	0	0.00
임산물	1,847	0.08	1,840	0.08	7	0.01
수산물	6,761	0.30	6,731	0.31	30	0.03
광산물	52	0.00	52	0.00	0	0.00
석탄	0	0.00	0	0.00	0	0.00
원유및천연가스	0	0.00	0	0.00	0	0.00
금속광석	23	0.00	23	0.00	0	0.00
비금속광물	29	0.00	29	0.00	0	0.00
경공업	450,056	19.79	387,395	17.79	62,661	64.80
육류및낙농품	2,641	0.12	2,540	0.12	101	0.10
수인가공품	18,080	0.79	17,774	0.82	306	0.32
정곡및제분	4,971	0.22	4,971	0.23	0	0.00
제당및전분	4,481	0.20	4,480	0.21	1	0.00
빵,과자및곡수류	8,960	0.39	8,835	0.41	126	0.13
조미료및유지	5,762	0.25	5,758	0.26	4	0.00
과채가공품및기타식료품	7,108	0.31	6,809	0.31	299	0.31
음료품	11,247	0.49	11,227	0.52	20	0.02
배합사료	101	0.00	101	0.00	0	0.00
담배	132	0.01	132	0.01	0	0.00
섬유사	35,700	1.57	34,705	1.59	995	1.03
섬유직물	136,377	6.00	112,976	5.19	23,401	24.20
의류및장신품	89,719	3.94	73,587	3.38	16,132	16.68
기타섬유제품	37,025	1.63	30,907	1.42	6,118	6.33
가죽제품및모피	44,607	1.96	37,520	1.72	7,088	7.33
목재및나무제품	963	0.04	946	0.04	17	0.02
펄프및종이	16,638	0.73	15,578	0.72	1,059	1.10
인쇄,출판및복제	1,132	0.05	779	0.04	353	0.37
가구	995	0.04	592	0.03	403	0.42
기타제조업제품	23,418	1.03	17,179	0.79	6,238	6.45
중공업	1,813,318	79.73	1,779,421	81.72	33,897	35.06
석탄제품	1	0.00	1	0.00	0	0.00
석유제품	431,070	18.95	431,014	19.79	57	0.06

<표 III-19>의 계속

	환금액	비중	개별환금액	비중	정액환금액	비중
유기화학기초제품	70,649	3.11	70,463	3.24	186	0.19
무기화학기초제품	21,312	0.94	21,212	0.97	100	0.10
합성수지및합성고무	82,185	3.61	81,354	3.74	831	0.86
화학섬유	25,934	1.14	25,224	1.16	711	0.73
비료및농약	1,038	0.05	934	0.04	104	0.11
의약품및화장품	8,990	0.40	8,701	0.40	289	0.30
기타화학제품	41,672	1.83	40,009	1.84	1,663	1.72
플라스틱제품	17,261	0.76	13,720	0.63	3,541	3.66
고무제품	20,337	0.89	19,972	0.92	365	0.38
유리제품	6,832	0.30	6,656	0.31	176	0.18
도자기및점토제품	311	0.01	300	0.01	12	0.01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200	0.01	192	0.01	8	0.0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1,023	0.04	716	0.03	307	0.32
선철및강반성품	2,897	0.13	2,895	0.13	2	0.00
철강1차제품	67,168	2.95	65,432	3.00	1,736	1.80
비철금속괴및1차제품	259,967	11.43	258,497	11.87	1,470	1.52
금속제품	18,184	0.80	13,722	0.63	4,462	4.61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36,148	1.59	33,719	1.55	2,429	2.51
특수목적용기계및장비	23,013	1.01	20,778	0.95	2,235	2.31
전기기계및장치	52,223	2.30	49,044	2.25	3,179	3.29
전자기기부분품	118,008	5.19	114,931	5.28	3,077	3.18
영상,음향및통신기기	128,130	5.63	126,141	5.79	1,989	2.06
컴퓨터및사무기기	198,450	8.73	198,036	9.09	414	0.43
가정용전기기기	16,395	0.72	16,303	0.75	91	0.09
정밀기기	33,948	1.49	30,603	1.41	3,345	3.46
자동차및부분품	127,181	5.59	126,100	5.79	1,082	1.12
선박	533	0.02	527	0.02	6	0.01
기타수송장비	2,256	0.10	2,224	0.10	32	0.03
문화오락서비스	248	0.01	159	0.01	89	0.09
분류불명	52	0.00	50	0.00	2	0.00
합계	2,274,261	100.00	2,177,570	100.00	96,691	100.00

<표 III-20> 환금액 비중(1999년)

(단위: 백만원, %)

	환금액	비중	개별환금액	비중	정액환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8,251	0.87	18,183	0.93	68	0.05
작물	835	0.04	828	0.04	7	0.01
축산	40	0.00	27	0.00	13	0.01
임산물	1,731	0.08	1,702	0.09	30	0.02
수산물	15,644	0.75	15,626	0.80	18	0.01
광산물	95	0.00	94	0.00	0	0.00
석탄	0	0.00	0	0.00	0	0.00
원유및천연가스	0	0.00	0	0.00	0	0.00
금속광석	34	0.00	34	0.00	0	0.00
비금속광물	61	0.00	61	0.00	0	0.00
경공업	428,378	20.43	357,102	18.18	71,276	53.85
육류및낙농품	1,766	0.08	1,693	0.09	73	0.05
수산물가공품	17,176	0.82	16,979	0.86	197	0.15
정곡및제분	3,631	0.17	3,630	0.18	1	0.00
제당및진분	2,800	0.13	2,799	0.14	1	0.00
빵,과자및곡수류	10,150	0.48	10,025	0.51	125	0.09
조미료및유지	5,441	0.26	5,437	0.28	3	0.00
과채가공품및기타식료품	4,461	0.21	3,862	0.20	599	0.45
음료품	12,033	0.57	12,024	0.61	9	0.01
배합사료	36	0.00	36	0.00	0	0.00
담배	111	0.01	111	0.01	0	0.00
섬유사	29,072	1.39	27,796	1.41	1,276	0.96
섬유직물	122,132	5.82	98,723	5.03	23,410	17.69
의류및장신품	95,316	4.55	82,457	4.20	12,859	9.71
기타섬유제품	36,236	1.73	27,228	1.39	9,009	6.81
가족제품및모피	41,538	1.98	32,249	1.64	9,288	7.02
목재및나무제품	843	0.04	804	0.04	39	0.03
펄프및종이	17,276	0.82	15,673	0.80	1,603	1.21
인쇄,출판및복제	1,314	0.06	557	0.03	757	0.57
가구	1,193	0.06	427	0.02	766	0.58
기타제조업제품	25,853	1.23	14,591	0.74	11,262	8.51
중공업	1,649,935	78.68	1,589,024	80.88	60,911	46.02
석탄제품	1	0.00	1	0.00	0	0.00
석유제품	358,469	17.09	358,398	18.24	71	0.05

<표 III-20>의 계속

	환금액	비중	개별환금액	비중	정액환금액	비중
유기화학기초제품	69,870	3.33	69,567	3.54	303	0.23
무기화학기초제품	19,637	0.94	19,433	0.99	204	0.15
합성수지및합성고무	77,183	3.68	76,215	3.88	968	0.73
화학섬유	20,875	1.00	19,497	0.99	1,378	1.04
비료및농약	1,194	0.06	888	0.05	306	0.23
의약품및화장품	9,051	0.43	8,515	0.43	535	0.40
기타화학제품	47,122	2.25	43,521	2.22	3,601	2.72
플라스틱제품	19,791	0.94	14,104	0.72	5,687	4.30
고무제품	20,702	0.99	20,119	1.02	583	0.44
유리제품	7,615	0.36	7,269	0.37	347	0.26
도자기및접토제품	205	0.01	172	0.01	34	0.03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352	0.02	324	0.02	27	0.02
기타비금속광물제품	1,196	0.06	794	0.04	402	0.30
선철및강반성품	2,666	0.13	2,659	0.14	8	0.01
철강1차제품	65,301	3.11	60,700	3.09	4,601	3.48
비철금속괴및1차제품	160,844	7.67	158,372	8.06	2,472	1.87
금속제품	21,432	1.02	11,146	0.57	10,287	7.77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39,825	1.90	35,740	1.82	4,085	3.09
특수목적용기계및장비	25,760	1.23	21,661	1.10	4,099	3.10
전기기계및장치	45,889	2.19	40,565	2.06	5,323	4.02
전자기기부분품	122,237	5.83	117,886	6.00	4,351	3.29
영상,음향및통신기기	120,052	5.73	116,783	5.94	3,269	2.47
컴퓨터및사무기기	204,504	9.75	203,169	10.34	1,335	1.01
가정용전기기기	14,647	0.70	14,182	0.72	465	0.35
정밀기기	28,375	1.35	24,034	1.22	4,341	3.28
자동차및부분품	141,495	6.75	139,724	7.11	1,771	1.34
선박	188	0.01	178	0.01	10	0.01
기타수송장비	3,454	0.16	3,407	0.17	47	0.04
문화오락서비스	242	0.01	138	0.01	104	0.08
분류불명	31	0.00	21	0.00	10	0.01
합계	2,096,932	100.00	1,964,563	100.00	132,369	100.00

<표 III-21> 환금액 비중(2000년)

(단위: 백만원, %)

	환금액	비중	개별환금액	비중	정액환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7,843	0.36	7,779	0.38	63	0.05
작물	663	0.03	659	0.03	4	0.00
축산	189	0.01	187	0.01	1	0.00
임산물	1,418	0.06	1,360	0.07	58	0.04
수산물	5,572	0.26	5,572	0.27	0	0.00
광산물	136	0.01	136	0.01	0	0.00
석탄	2	0.00	0	0.00	0	0.00
원유및천연가스	0	0.00	0	0.00	0	0.00
금속광석	38	0.00	38	0.00	0	0.00
비금속광물	96	0.00	96	0.00	0	0.00
경공업	424,735	19.45	355,944	17.40	68,791	50.02
육류및낙농품	4,371	0.20	4,309	0.21	61	0.04
수산가공품	21,258	0.97	20,863	1.02	395	0.29
정곡및제분	3,643	0.17	3,643	0.18	0	0.00
제당및전분	2,392	0.11	2,391	0.12	0	0.00
빵,과자및곡수류	14,722	0.67	14,523	0.71	200	0.15
조미료및유지	10,550	0.48	10,545	0.52	6	0.00
과채가공품및기타식료품	4,709	0.22	3,871	0.19	838	0.61
음료품	1,257	0.06	1,247	0.06	10	0.01
배합사료	249	0.01	248	0.01	2	0.00
담배	512	0.02	512	0.03	0	0.00
섬유사	26,121	1.20	25,160	1.23	961	0.70
섬유직물	109,493	5.01	86,840	4.24	22,653	16.47
의류및장신품	105,424	4.83	92,774	4.53	12,650	9.20
기타섬유제품	34,260	1.57	25,129	1.23	9,131	6.64
가죽제품및모피	37,801	1.73	30,116	1.47	7,685	5.59
목재및나무제품	639	0.03	603	0.03	35	0.03
펄프및종이	17,320	0.79	15,479	0.76	1,841	1.34
인쇄,출판및복제	1,239	0.06	667	0.03	572	0.42
가구	1,294	0.06	270	0.01	1,024	0.74
기타제조업제품	27,481	1.26	16,754	0.82	10,727	7.80
중공업	1,750,487	80.17	1,681,932	82.21	68,556	49.85
석탄제품	0	0.00	0	0.00	0	0.00
석유제품	564,413	25.85	564,326	27.58	87	0.06

<표 III-21>의 계속

	환금액	비중	개별환금액	비중	정액환금액	비중
유기화학기초제품	80,946	3.71	80,094	3.91	852	0.62
무기화학기초제품	19,508	0.89	19,199	0.94	309	0.22
합성수지및합성고무	93,933	4.30	92,793	4.54	1,141	0.83
화학섬유	20,639	0.95	19,083	0.93	1,556	1.13
비료및농약	972	0.04	919	0.04	53	0.04
의약품및화장품	8,705	0.40	8,116	0.40	589	0.43
기타화학제품	47,122	2.25	43,521	2.22	3,601	2.72
플라스틱제품	19,791	0.94	14,104	0.72	5,687	4.30
고무제품	20,702	0.99	20,119	1.02	583	0.44
유리제품	7,615	0.36	7,269	0.37	347	0.26
도자기및접토제품	205	0.01	172	0.01	34	0.03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352	0.02	324	0.02	27	0.02
기타비금속광물제품	1,196	0.06	794	0.04	402	0.30
선철및강반성품	2,666	0.13	2,659	0.14	8	0.01
철강1차제품	65,301	3.11	60,700	3.09	4,601	3.48
비철금속괴및1차제품	160,844	7.67	158,372	8.06	2,472	1.87
금속제품	21,432	1.02	11,146	0.57	10,287	7.77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39,825	1.90	35,740	1.82	4,085	3.09
특수목적용기계및장비	25,760	1.23	21,661	1.10	4,099	3.10
전기기계및장치	45,889	2.19	40,565	2.06	5,323	4.02
전자기기부분품	122,237	5.83	117,886	6.00	4,351	3.29
영상,음향및통신기기	120,052	5.73	116,783	5.94	3,269	2.47
컴퓨터및사무기기	204,504	9.75	203,169	10.34	1,335	1.01
가정용전기기기	14,647	0.70	14,182	0.72	465	0.35
정밀기기	28,375	1.35	24,034	1.22	4,341	3.28
자동차및부분품	141,495	6.75	139,724	7.11	1,771	1.34
선박	188	0.01	178	0.01	10	0.01
기타수송장비	3,454	0.16	3,407	0.17	47	0.04
문화오락서비스	242	0.01	138	0.01	104	0.08
분류불명	31	0.00	21	0.00	10	0.01
합계	2,096,932	100.00	1,964,563	100.00	132,369	100.00

III. 관세 환급제도의 이용실적 109

<표 III-22> 총수출액과 환급받은 수출액(비율)

(단위: 백만원, %)

	1998년			1999년			2000년		
	총수출액 (A)	환급받은 수출액(B)	IA	총수출액 (A)	환급받은 수출액(B)	IA	총수출액 (A)	환급받은 수출액(B)	IA
농림수산물	167,675	117,468	70	163,970	201,381	123	162,794	129,465	79
작물	165,602	4,921	3	179,910	4,507	25	215,297	4,883	2
축산	12,077	112	0.9	6,875	1,073	16	9,890	2,230	23
임산물	156,023	32,336	21	171,269	49,961	29	146,026	71,892	49
수산물	130,972	80,099	61	127,916	145,840	114	127,580	50,460	39
광산물	54,765	4,543	8.3	226,812	7,100	3.1	327,061	5,417	1.6
석탄	221	-	0	161	-	0	360	125	35
원유및천연가스	0	-	0	181,300	-	0	267,419	13	0
금속광석	6,525	2,440	37	5,289	3,628	69	7,677	3,939	51
비금속광물	48,019	2,104	4.4	40,062	3,472	8.7	51,605	1,339	2.6
경공업	349,861	292,257	84	303,244	253,820	84	307,217	249,887	81
유류및나눔품	503,178	43,839	8.7	470,126	101,404	21	162,295	66,582	41
수ანი공품	887,567	404,305	46	874,100	264,523	30	888,457	311,502	35
정공및제분	64,432	45,526	71	63,322	32,826	52	53,503	33,833	63
제당및전분	179,211	195,216	109	118,758	113,895	96	105,949	112,806	106
빵,과자및곡수류	339,389	354,431	104	281,115	196,676	70	308,546	192,867	63
조미료및유지	227,800	257,453	113	121,589	90,102	74	131,034	88,137	67
과채가공품및기타식료품	331,905	150,496	45	316,763	122,991	39	306,183	143,367	47
음료품	189,709	96,808	51	167,506	108,001	64	197,155	80,319	41
배합사료	9,041	6,272	69	10,683	1,432	13	11,218	10,758	96
담배	150,881	13,467	9	119,362	19,943	17	103,836	43,533	42
섬유사	2,121,249	2,007,892	95	1,640,403	1,296,669	79	1,683,613	1,443,544	86
섬유직물	1,033,012	1,023,457	99	838,494	737,597	88	913,086	690,971	75
의류및장신품	633,408	533,765	84	577,248	430,828	75	569,245	413,619	73
기타섬유제품	324,304	274,524	85	322,026	251,028	78	351,574	239,089	68
가죽제품및모피	329,204	285,197	87	289,863	251,404	87	284,922	206,661	73
목재및나무제품	176,555	108,016	61	148,380	87,416	59	138,300	90,239	65
펄프및종이	2,264,183	2,153,748	95	2,060,412	1,849,551	90	2,109,838	1,916,955	91
인쇄,출판및복제	307,207	108,933	35	336,867	114,079	34	386,018	91,134	24
가구	265,864	165,934	62	229,435	119,376	52	261,108	124,824	48
기타제조업제품	2,973,222	1,955,302	66	2,594,304	1,703,030	66	2,697,163	1,688,867	62
중공업	1,539,117	1,015,292	66	1,424,698	918,138	64	1,618,241	1,036,650	64
석탄제품	77	336	432	55	-	0	79	-	0
석유제품	634,989	941,344	148	682,221	851,425	125	1,042,671	1,344,695	129

<표 III-22>의 계속

	1998년			1999년			2000년		
	총수출액 (A)	환급받은 수출액(B)	B/A	총수출액 (A)	환급받은 수출액(B)	B/A	총수출액 (A)	환급받은 수출액(B)	B/A
유기화학기초제품	4,658,493	4,454,626	95.62	4,295,754	4,158,605	96.81	5,906,756	5,109,418	86.5
무기화학기초제품	1,109,705	1,057,181	95.27	869,587	733,232	84.32	890,862	798,476	89.63
합성수지및합성고무	5,297,334	5,788,427	109.27	4,697,274	4,358,654	92.79	5,655,243	5,155,635	91.17
화학섬유	1,079,249	1,113,049	103.13	881,295	800,959	90.88	980,669	829,138	84.55
비료및농약	309,549	259,351	83.78	275,235	187,569	68.15	285,858	151,868	53.13
의약품및화장품	653,129	409,314	62.67	590,459	335,418	56.81	675,890	342,000	50.6
기타화학제품	2,280,473	2,229,406	97.76	1,990,204	1,913,270	96.13	2,105,408	1,853,434	88.03
플라스틱제품	2,192,833	1,567,560	71.49	2,194,877	1,551,293	70.68	2,462,223	1,618,144	65.72
고무제품	2,406,212	2,442,027	101.49	2,038,651	1,977,311	96.99	1,897,092	1,730,335	91.21
유리제품	521,418	523,261	100.35	554,683	615,852	111.03	701,728	654,360	93.25
도자기및접토제품	90,783	24,890	27.42	70,968	24,560	34.61	79,414	34,112	42.95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114,410	43,931	38.4	180,278	129,873	72.04	157,838	81,547	51.66
기타비금속광물제품	211,021	136,988	64.92	194,293	111,543	57.41	195,692	151,668	77.5
선철및강반성품	672,835	550,392	81.8	289,514	260,096	89.84	209,249	110,816	52.96
철강1차제품	9,422,279	9,594,398	101.83	6,837,513	6,590,788	96.39	7,491,382	7,303,890	97.5
비철금속피및1차제품	13,373,471	9,160,069	68.49	5,898,764	5,504,453	93.32	4,240,634	3,969,299	93.6
금속제품	3,330,556	1,896,762	56.95	3,163,357	1,964,316	62.1	3,034,819	1,751,587	57.72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4,648,761	3,331,618	71.67	4,633,657	3,455,552	74.58	5,480,675	3,372,336	61.53
특수목적용기계및장비	4,966,380	2,276,546	45.84	4,231,856	2,061,100	48.7	5,245,509	2,259,813	43.08
전기기계및장치	3,922,020	3,320,855	84.67	3,749,718	2,514,549	67.06	4,278,593	2,888,606	67.51
전자기부분품	30,864,081	8,036,066	26.04	30,982,760	7,211,783	23.28	31,264,837	7,707,986	24.65
영상,음향및통신기기	8,541,235	7,378,873	86.39	11,108,657	7,084,480	63.77	14,205,219	10,716,427	75.44
컴퓨터및사무기기	7,337,964	6,531,118	89	12,587,662	10,375,722	82.43	22,200,788	11,692,942	52.67
가정용전기기기	2,320,102	2,923,845	126.02	2,389,438	2,513,535	105.19	2,478,433	2,325,084	93.81
정밀기기	3,290,206	1,962,502	59.65	2,699,696	1,508,735	55.89	3,276,242	1,882,653	57.46
자동차및부분품	15,856,006	14,921,221	94.1	16,109,631	15,153,673	94.07	17,255,668	15,334,405	88.87
선박	12,264,887	46,436	0.38	10,206,265	15,720	0.15	10,955,337	16,886	0.15
기타수송장비	3,511,330	148,392	4.23	1,872,496	254,398	13.59	2,353,435	166,370	7.07
문화오락서비스	110,311	113,275	102.69	103,790	76,001	73.23	39,334	53,163	135.16
분류불명	583,291	3,425	0.59	276,568	3,568	1.29	137,858	2,009	1.46
기타서비스업	83,181	-	-	88,184	-	-	98,052	-	-
합계	188,264,580	131,021,900	69.59	175,096,685	114,678,613	65.49	199,383,558	125,643,091	63.02

Ⅲ. 관세 환급제도의 이용실적 111

<표 III-23> 총수출액과 환급받은 수출액(전체비중)

(단위: 백만원, %)

	1998년				1999년				2000년			
	총수출액	비중	환급받은 수출액	비중	총수출액	비중	환급받은 수출액	비중	총수출액	비중	환급받은 수출액	비중
농림수산물	1,637,675	0.87	117,468	0.09	1,630,970	0.93	201,381	0.18	1,642,794	0.82	129,465	0.10
적목	165,602	0.09	4,921	0.00	179,910	0.10	4,507	0.00	215,297	0.11	4,883	0.00
축산	12,077	0.01	112	0.00	6,875	0.00	1,073	0.00	9,890	0.00	2,230	0.00
임산물	156,023	0.08	32,336	0.02	171,269	0.10	49,961	0.04	146,026	0.07	71,892	0.06
수산물	1,303,972	0.69	80,099	0.06	1,272,916	0.73	145,840	0.13	1,271,580	0.64	50,460	0.04
광산물	54,765	0.03	4,543	0.00	226,812	0.13	7,100	0.01	327,061	0.16	5,417	0.00
석탄	221	0.00	0	0.00	161	0.00	0	0.00	360	0.00	125	0.00
원유및천연가스	0	0.00	0	0.00	181,300	0.10	0	0.00	267,419	0.13	13	0.00
금속광석	6,525	0.00	2,440	0.00	5,289	0.00	3,628	0.00	7,677	0.00	3,939	0.00
비금속광물	48,019	0.03	2,104	0.00	40,062	0.02	3,472	0.00	51,605	0.03	1,339	0.00
경공업	34,198,661	18.17	29,240,257	22.32	30,323,444	17.32	22,509,220	19.63	30,730,217	15.41	21,996,887	17.51
육류및농산물	503,178	0.27	43,839	0.03	470,126	0.27	101,404	0.09	162,295	0.08	66,582	0.05
수산물가공품	887,567	0.47	404,305	0.31	874,100	0.50	264,523	0.23	888,457	0.45	311,502	0.25
정곡및제분	64,432	0.03	45,526	0.03	63,322	0.04	32,826	0.03	53,503	0.03	33,833	0.03
제당및건분	179,211	0.10	195,216	0.15	118,758	0.07	113,895	0.10	105,949	0.05	112,806	0.09
빵,과자및국수류	339,389	0.18	354,431	0.27	281,115	0.16	196,676	0.17	308,546	0.15	192,867	0.15
조미료및유지	227,800	0.12	257,453	0.20	121,589	0.07	90,102	0.08	131,034	0.07	88,137	0.07
과채기공품및기타식품	331,905	0.18	150,496	0.11	316,763	0.18	122,991	0.11	306,183	0.15	143,367	0.11
음료품	189,709	0.10	96,808	0.07	167,506	0.10	108,001	0.09	197,155	0.10	80,319	0.06
배합사료	9,041	0.00	6,272	0.00	10,683	0.01	1,432	0.00	11,218	0.01	10,758	0.01
담배	150,881	0.08	13,467	0.01	119,362	0.07	19,943	0.02	103,836	0.05	43,533	0.03
섬유사	2,121,269	1.13	2,007,892	1.53	1,640,403	0.94	1,296,669	1.13	1,683,613	0.84	1,443,544	1.15
섬유직물	10,339,002	5.49	10,234,537	7.81	8,934,944	5.10	7,375,947	6.43	9,139,086	4.58	6,960,971	5.54
의류및장신품	6,334,028	3.36	5,337,645	4.07	5,772,488	3.30	4,308,928	3.76	5,689,245	2.85	4,136,919	3.29
가타섬유제품	3,241,304	1.72	2,745,240	2.10	3,223,026	1.84	2,351,028	2.05	3,515,747	1.76	2,333,089	1.90
가죽제품및모피	3,292,904	1.75	2,855,197	2.18	2,839,863	1.62	2,251,404	1.96	2,841,922	1.43	2,066,661	1.64
목재및나무제품	176,555	0.09	108,016	0.08	148,380	0.08	87,416	0.08	138,300	0.07	90,239	0.07
펠트및증이	2,264,183	1.20	2,153,748	1.64	2,060,412	1.18	1,849,551	1.61	2,109,838	1.06	1,916,935	1.53
인쇄,출판및복제	307,207	0.16	108,933	0.08	336,867	0.19	114,079	0.10	386,018	0.19	91,134	0.07
가구	265,864	0.14	165,934	0.13	229,435	0.13	119,576	0.10	261,108	0.13	124,824	0.10
가타제조업제품	2,973,232	1.58	1,955,302	1.49	2,594,304	1.48	1,703,030	1.49	2,697,163	1.35	1,688,867	1.34
중공업	151,396,697	80.52	101,542,932	77.50	142,446,918	81.35	91,881,343	80.12	166,408,241	83.46	103,456,150	82.34
석탄제품	77	0.00	336	0.00	55	0.00	0	0.00	79	0.00	0	0.00
석유제품	6,349,899	3.37	9,413,494	7.18	6,882,321	3.91	8,514,215	7.42	10,442,671	5.24	13,446,915	10.70

<표 III-23>의 계속

	1998년				1999년				2000년			
	총수출액	비중	환급받은 수출액	비중	총수출액	비중	환급받은 수출액	비중	총수출액	비중	환급받은 수출액	비중
유기화학기초제품	4,658,493	2.47	4,454,626	3.40	4,295,754	2.45	4,158,695	3.63	5,906,766	2.96	5,109,418	4.07
무기화학기초제품	1,109,705	0.59	1,057,181	0.81	899,587	0.50	733,232	0.64	890,862	0.45	798,476	0.64
합성수지및합성고무	5,297,334	2.81	5,788,427	4.42	4,697,274	2.68	4,358,654	3.80	5,655,243	2.84	5,155,635	4.10
화학섬유	1,079,249	0.57	1,113,049	0.85	881,295	0.50	800,959	0.70	980,669	0.49	829,138	0.66
비료및농약	309,549	0.16	259,351	0.20	275,235	0.16	187,569	0.16	285,858	0.14	151,888	0.12
의약품및화장품	653,129	0.35	409,314	0.31	590,459	0.34	335,418	0.29	675,890	0.34	342,000	0.27
기타화학제품	2,280,473	1.21	2,229,406	1.70	1,990,204	1.14	1,913,270	1.67	2,105,408	1.06	1,853,434	1.48
플라스틱제품	2,192,833	1.16	1,567,560	1.20	2,194,877	1.25	1,551,293	1.35	2,462,223	1.23	1,618,144	1.29
고무제품	2,406,212	1.28	2,442,027	1.86	2,038,651	1.16	1,977,311	1.72	1,897,092	0.95	1,730,335	1.38
유리제품	521,418	0.28	523,261	0.40	564,683	0.32	615,852	0.54	701,728	0.35	654,360	0.52
도자기및점토제품	90,783	0.05	24,890	0.02	70,968	0.04	24,560	0.02	79,414	0.04	34,112	0.03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114,410	0.06	43,931	0.03	180,278	0.10	129,873	0.11	157,838	0.08	81,547	0.06
기타비금속광물제품	211,021	0.11	136,988	0.10	194,293	0.11	111,543	0.10	195,692	0.10	151,668	0.12
선철및강반제품	672,835	0.36	550,392	0.42	289,514	0.17	260,096	0.23	209,249	0.10	110,816	0.09
철강1차제품	9,422,279	5.00	9,594,398	7.32	6,837,513	3.90	6,590,788	5.75	7,491,382	3.76	7,303,890	5.81
비철금속괴및1차제품	13,373,471	7.10	9,160,069	6.99	5,898,764	3.37	5,504,453	4.80	4,240,634	2.13	3,969,299	3.16
금속제품	3,330,556	1.77	1,896,762	1.45	3,163,357	1.81	1,964,316	1.71	3,034,819	1.52	1,751,587	1.39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4,648,761	2.47	3,331,618	2.54	4,633,657	2.65	3,455,552	3.01	5,480,675	2.75	3,372,336	2.68
특수목적용기계및장비	4,966,380	2.64	2,276,546	1.74	4,231,856	2.42	2,061,100	1.80	5,245,509	2.63	2,259,813	1.80
전기기계및장치	3,922,020	2.08	3,320,855	2.53	3,749,718	2.14	2,514,549	2.19	4,278,593	2.15	2,888,606	2.30
전자기기부분품	30,864,081	16.39	8,096,066	6.13	30,982,760	17.69	7,211,783	6.29	31,264,837	15.68	7,707,986	6.13
영상,음향및통신기기	8,541,235	4.54	7,378,873	5.63	11,108,657	6.34	7,084,480	6.18	14,205,219	7.12	10,716,427	8.53
컴퓨터및사무기기	7,337,964	3.90	6,531,118	4.98	12,587,662	7.19	10,375,722	9.05	22,200,788	11.13	11,692,942	9.31
가정용전기기기	2,320,102	1.23	2,923,845	2.23	2,389,438	1.36	2,513,535	2.19	2,478,433	1.24	2,325,084	1.85
정밀기기	3,290,206	1.75	1,962,502	1.50	2,699,696	1.54	1,508,735	1.32	3,276,242	1.64	1,882,653	1.50
자동차및부분품	15,856,006	8.42	14,921,221	11.39	16,109,631	9.20	15,153,673	13.21	17,255,668	8.65	15,334,405	12.20
선박	12,264,887	6.51	46,436	0.04	10,206,265	5.83	15,720	0.01	10,955,337	5.49	16,886	0.01
기타수송장비	3,511,330	1.87	148,392	0.11	1,872,496	1.07	254,398	0.22	2,353,435	1.18	166,370	0.13
문화오락서비스	110,311	0.06	113,275	0.09	103,790	0.06	76,001	0.07	39,334	0.02	53,163	0.04
분류불명	583,291	0.31	3,425	0.00	276,568	0.16	3,568	0.00	137,858	0.07	2,009	0.00
기타서비스업	83,181	0.04	0	0.00	88,184	0.05	0	0.00	98,052	0.05	0	0.00
합계	188,264,580	100	131,021,900	100	175,096,685	100	114,678,613	100	199,383,558	100	125,643,091	100

Ⅲ.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113

<표 III-24> 환금액 대비 총수출액과 환급받은 수출액

(단위: %)

	1998년		1999년		2000년	
	환금액/ 총수출액	환금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금액/ 총수출액	환금액/ 환급받은 수출액	환금액/ 총수출액	환금액/ 환급받은 수출액
농림수산물	0.64	8.97	1.12	9.06	0.48	6.06
작물	1.14	38.30	0.46	18.54	0.31	13.59
축산	0.35	38.24	0.58	3.74	1.91	8.46
임산물	1.18	5.71	1.01	3.47	0.97	1.97
수산물	0.52	8.44	1.23	10.73	0.44	11.04
광산물	0.09	1.14	0.04	1.33	0.04	2.51
석탄	0.00	-	0.00	-	0.46	1.34
원유및천연가스	0.00	-	0.00	-	0.00	2.32
금속광석	0.35	0.94	0.64	0.93	0.50	0.97
비금속광물	0.06	1.36	0.15	1.76	0.19	7.15
경공업	1.32	1.54	1.41	1.90	1.38	1.93
육류및낙농품	0.52	6.02	0.38	1.74	2.69	6.56
수산물가공품	2.04	4.47	1.96	6.49	2.39	6.82
정곡및제분	7.71	10.92	5.73	11.06	6.81	10.77
제당및전분	2.50	2.30	2.36	2.46	2.26	2.12
빵,과자및곡수류	2.64	2.53	3.61	5.16	4.77	7.63
조미료및유지	2.53	2.24	4.47	6.04	8.05	11.97
과채가공품및기타식료품	2.14	4.72	1.41	3.63	1.54	3.28
음료품	5.93	11.62	7.18	11.14	0.64	1.56
배합사료	1.12	1.62	0.34	2.52	2.22	2.32
담배	0.09	0.98	0.09	0.56	0.49	1.18
섬유사	1.68	1.78	1.77	2.24	1.55	1.81
섬유직물	1.32	1.33	1.37	1.66	1.20	1.57
의류및장신품	1.42	1.68	1.65	2.21	1.85	2.55
기타섬유제품	1.14	1.35	1.12	1.54	0.97	1.43
가죽제품및모피	1.35	1.56	1.46	1.84	1.33	1.83
목재및나무제품	0.55	0.89	0.57	0.96	0.46	0.71
펄프및종이	0.73	0.77	0.84	0.93	0.82	0.90
인쇄,출판및복제	0.37	1.04	0.39	1.15	0.32	1.36
가구	0.37	0.60	0.52	1.00	0.50	1.04
기타제조업제품	0.79	1.20	1.00	1.52	1.02	1.63
중공업	1.20	1.79	1.16	1.80	1.05	1.69
석탄제품	0.98	0.23	1.59	-	0.00	-
석유제품	6.79	4.58	5.23	4.21	5.40	4.20

<표 III-24>의 계속

	1998년		1999년		2000년	
	환금액/ 총수출액	환금액/ 환금받은 수출액	환금액/ 총수출액	환금액/ 환금받은 수출액	환금액/ 총수출액	환금액/ 환금받은 수출액
유기화학기초제품	1.52	1.59	1.63	1.68	1.37	1.58
무기화학기초제품	1.92	2.02	2.26	2.68	2.19	2.44
합성수지및합성고무	1.55	1.42	1.64	1.77	1.66	1.82
화학섬유	2.40	2.33	2.37	2.61	2.10	2.49
비료및농약	0.34	0.40	0.43	0.64	0.34	0.64
의약품및화장품	1.38	2.20	1.53	2.70	1.29	2.55
기타화학제품	1.83	1.87	2.37	2.46	2.26	2.57
플라스틱제품	0.79	1.10	0.90	1.28	0.90	1.37
고무제품	0.85	0.83	1.02	1.05	0.98	1.08
유리제품	1.31	1.31	1.37	1.24	1.03	1.11
도자기및점토제품	0.34	1.25	0.29	0.84	0.43	0.99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0.18	0.46	0.20	0.27	0.11	0.2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48	0.75	0.62	1.07	0.80	1.03
선철및강반성품	0.43	0.53	0.92	1.03	0.94	1.78
철강1차제품	0.71	0.70	0.96	0.99	0.92	0.94
비철금속및1차제품	1.94	2.84	2.73	2.92	2.43	2.60
금속제품	0.55	0.96	0.68	1.09	0.62	1.07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0.78	1.09	0.86	1.15	0.83	1.35
특수목적용기계및장비	0.46	1.01	0.61	1.25	0.53	1.23
전기기계및장치	1.33	1.57	1.22	1.82	1.05	1.56
전자기기부분품	0.38	1.47	0.39	1.69	0.38	1.55
영상,음향및통신기기	1.50	1.74	1.08	1.69	0.76	1.01
컴퓨터및사무기기	2.70	3.04	1.62	1.97	0.56	1.07
가정용전기기기	0.71	0.56	0.61	0.58	0.61	0.65
정밀기기	1.03	1.73	1.05	1.88	1.00	1.74
자동차및부분품	0.80	0.85	0.88	0.93	0.86	0.97
선박	0.00	1.15	0.00	1.20	0.00	1.23
기타수송장비	0.06	1.52	0.18	1.36	0.14	1.99
문화오락서비스	0.22	0.22	0.23	0.32	0.41	0.30
분류불명	0.01	1.52	0.01	0.87	0.02	1.35
기타서비스	0.00	-	0.00	-	0.00	-
합계	1.21	1.74	1.20	1.83	1.10	1.74

IV.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고찰: 부분균형분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세환급제도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줌으로써 정책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환급제도의 주요 정책목표는 수출용 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그 만큼 국내수출업체의 수출용품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환급은 사전면세제도와는 달리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한 후 환급받을 때까지 관세납부액에 대한 자금부담을 부과하고 환급절차라는 행정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은 적은 편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로 인해 관세환급 또는 사전면세제도를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낮은 혹은 0의 세율을 부과하고 보세공장과 같은 관세지원제도를 통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원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도 적었다.

기존 연구들 중 Panagariya(1992)는 수출품에 대한 사전면세가 후생(welfar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전면세제도가 없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후생의 증가 혹은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둘째, 사전면세가 이루어질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완제품이 생산뿐만 아니라 소

비에서도 대체재인 경우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수출기업에 대한 환급비용의 부과를 통하여 국산화 및 수출지원을 추구하는 관세환급제도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국내 연구로 이영휘(1980)는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제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환급제도 실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관세환급제도가 당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던 수출주도적 개발전략의 적정한 정책수단인가를 실효보호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은 수출산업에 대해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할 자유무역정책의 교란이라는 대가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면서,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상황을 지원하고 국산화는 다른 직접적인 정책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국내에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관세환급제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장근호·김진수(1997)와 정재완(1999)이 있다. 두 논문은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가 국산화 및 수출 촉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논문 모두 관세환급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국산화에 미친 영향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들 논문들에서 부분적으로 국내 후생감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전체적인 후생변화와 이와 연관되어 정부가 왜 환급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관세환급제도의 실시로 국내 후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우선 관세환급제도의 두 가지 정책목적인 국산화 및 수출 촉진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을 검토한다. 또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잉여 등 후생변화도 함께 검토하면서 정부의 목적함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후생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는 이유, 환급제도에 의한 수출증대의 의미와 후생의 변화, 정책적 가중치가 관세환급제도 유지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분석해 본다.

1. 모형 도입

가. 소국경제모형

관세환급제도의 효과를 부분균형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자. 우선 논의대상 국가는 국제무역에서 소국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자. 소국으로서 n 개의 재화 중에서 몇몇 재화는 수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재화들은 수출을 하고 있다.

GATT협약 제16조에 의해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할 수 없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수송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transport cost)도 없다고 가정하자. 각 나라들은 GATT협약 제1조에 언급한 MFN원칙에 입각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모든 교역국들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소국의 i 재화에 대한 국내시장가격 p_i 는 국제시장가격 P_i^W 에 관세 t_i 의 합으로 나타난다³⁴. 대국은 관세부과로 인해 교역조건(terms of trade)을 자의로 바꿀 수 있으나 소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국제시장가격은 대국의 관세에 의해 결정되며 소국에게 국제시장가격은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소국의 국내시장가격은 단순하게 세계시장에 소국의 관세를 합한 것이 된다. 즉, $P_i = P_i^W + t_i$ 로 표시된다. 세계시장가격은 대국의 관세에

34) 여기서 관세 t_i 는 non-prohibitive이다.

대해 감소함수이지만, 각 국가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내 시장가격은 상승한다고 가정한다³⁵⁾.

원자재가 완제품 생산에 일정 비율로 투입된다고 가정하고 자본 및 노동 등 기타 생산요소는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소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은 모두 동일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재화 i 에 대해 선형의 수요함수를 가지고 있다.

$$Q_i = \frac{D}{b} - \frac{p_i}{b}, \quad \text{for } i=1, 2, \dots, n.$$

모든 국가들은 단위가격(numeraire)재화 0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재화 0의 국내시장가격은 1이다. 단위가격재화 0을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균형은 노동 한 단위에 대한 가격(임금)이 1이 될 때 이루어진다. 이 밖의 다른 재화들은 노동과 특정 산업에 이용되는 투입요소(sector specific input)에 의해 생산된다.

노동 생산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의해 기업들의 이윤함수는 국내시장가격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i_i = \pi_i(p_i)$. 이에 호텔링의 정리(Hotelling's Lemma)를 이용하여 공급함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S_i = \pi_i'(p_i)$. 고정비용 성격의 A 가 존재할 때 각국의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Q_i = \frac{p_i}{c} - \frac{A}{c}, \quad \text{for } i=1, 2, \dots, n.$$

35) 극단적인 Metzler's case와 Lerner's case는 제외한다. Gandolfo(1994), pp. 118~120 참고.

나. 소국의 목적함수

소국은 소비자잉여(CS; Consumer Surplus), 생산자잉여(PS; Producer Surplus), 관세수입(TR; Tariff Revenue), 그리고 수출(EX; Export)의 합으로 이루어진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이 과정에서 소국은 가중된 사회후생(weighted social welfare)함수를 사용하며, 생산자와 수출량에 대해 특별히 고려하여 CS와 TR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PS와 EX에 부여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목적함수는 기존의 political economy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중된 사회후생 함수³⁶⁾에 수출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형태이다. 수출은 절대적인 수출량, 혹은 수출액을 대변할 수도 있고, 또는 수출품 생산에 대한 생산자잉여 부분을 대변할 수도 있다.

목적함수는 간단한 선형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PS에 대해 α 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W_i = CS_i + \alpha PS_i + TR_i + \beta EX_i, \quad \text{for } i=1, 2, \dots, n.$$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가 관세부과로 인하여 세계시장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경우(terms of trade effect), 둘째, 국가가 각 경제집단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하여 특별히 생산자 집단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political economy consideration)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가 가중된 사회후생을 사용하지 않아도($\alpha=1$)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양(+)의 관세를 부과할 인센티브가 있으며, 후자는 교역조건 개선 효과 없이도 생산자 집단에 대해 높은 가중치($\alpha>1$)를 두어 양(+)의 관세부과로 가중된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³⁷⁾. 본 논

36) Baldwin(1987) 참고.

37) Staiger(1995) 참고.

문에서는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수 없는 소국은 가중된 사회후생($\alpha > 1$)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여, 소국임에도 양(+)¹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한편, 정부는 목적함수에 EX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변수를 도입하고 수출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소국 정부가 수출증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국내 생산자의 국내공급과 해외공급에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을 통한 개발전략(Expor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수출은 이들 국가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목적함수에 EX를 포함시켰다.

2. 국산 원재료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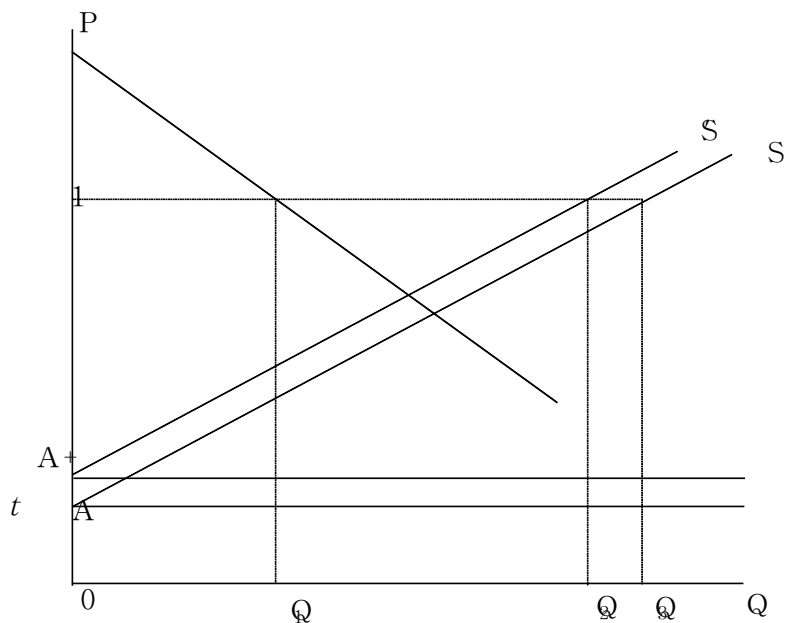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는 모두 수입 원재료로서 국내에서는 해당 원재료를 생산할 수 없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가 전량 수입재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원유, 천연고무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정 기술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부품으로 기술수준 혹은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가. 자유무역 상황

현재 완제품인 수출 가능재화와 이에 투입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즉 자유무역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완제품에 대한 국내 공급곡선(S), 즉 완제품 한계비용곡선은 완제품 1

단위 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간재의 수입가격(A)과 기타의 생산요소로부터 파생되는 한계비용곡선의 합으로 주어진다. 원자재가 완제품 생산에 일정비율로 투입된다고 가정하고 자본 및 노동 등 기타 생산요소는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완제품에 대한 국제시장가격은 자국이 소국이기에 때문에 $p_{\text{외종재}}^w$ 로서 주어져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p_{\text{외종재}}^w$ 는 1이라 하자($p_{\text{외종재}}^w = 1$). 따라서 국내수요곡선에 의해 국내에서는 $Q_1 = \frac{D-1}{b}$ 만큼 소비되고 국내기업에 의해 생산된 나머지 $Q_3 - Q_1 = \frac{1-A}{c} - \frac{D-1}{b}$ 은 세계시장에 공급(수출)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체제 아래서 국내기업의 수출량은 $\frac{1-A}{c} - \frac{D-1}{b}$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수입 원재료에 관세 부과



나. 수입 원재료에 관세 부과

이제, 수입 원재료에 관세 t 를 부과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수입 원재료의 가격은 $A+t$ 로 상승하게 된다³⁸⁾. 따라서 국내기업의 공급곡선도 관세 t 의 부과로 인해 좌측(S')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국산 원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는 생산세(production tax)와 동일하게 작용하여 공급비용이 단위당 관세 t 만큼 증가하여 그 만큼 한계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입 원재료의 수입은 감소하고 총생산량도 $Q_2 = \frac{1-(A+t)}{c}$ 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총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총생산량이 감소한 $\frac{t}{c}$ 만큼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자유무역 상황과 비교하여 정부의 목적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CS , PS 그리고 TR 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제품의 국내시장가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CS 에는 변화가 없다($\Delta CS=0$).

둘째, PS 는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인 자유무역 상황의 $PS = \frac{(1-A)^2}{2c}$ 에 비해 원재료에 새롭게 관세 t 가 부과되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관세부과 후의 $PS = \frac{(1-(A+t))^2}{2c}$ 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재료에 관세 t 를 부과함으로써 PS 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Delta PS = \frac{t(t-2(1-A))}{2c}$$

38) 완제품은 현재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가정하였듯이 이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서 $A < 1$, 그리고 $A+t < 1$ ³⁹⁾ 이므로 $\Delta PS < 0$ 이다. 즉, PS 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TR 의 변화를 살펴보자. 원재료에 새롭게 관세 t 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수입이 발생하여 증가하게 된다.

$$\Delta TR = t \left[\frac{1-(A+t)}{2c} \right] > 0$$

결과적으로 CS , PS , 그리고 TR 의 변화만을 살펴보면, CS 는 변화가 없고($\Delta CS=0$), PS 는 감소하는($\Delta PS < 0$) 반면, 새로운 관세 부과로 관세수입 TR 은 증가하게($\Delta TR > 0$)되어 전체적인 후생의 변화는 모호한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ΔPS 와 ΔTR 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Delta PS + \Delta TR = -\frac{t^2}{2c} < 0$$

이와 같이 후생이 감소하는 이유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관세수입을 발생시키지만 완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세 효과로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유발한다. 따라서 $\Delta TR - \Delta PS < 0$ 이므로, 자유무역인 상태에 비해 그만큼 사회적으로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수출 감소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국내소비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사전면세 또는 관세환급제도가 있을 수 있다.

39) 원재료의 가격인 A 는 완제품 가격인 1보다 낮고,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한 가격($A+t$)도 역시 완제품의 가격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다. 사전관세면세 및 관세환급효과

정부에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정책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사전에 관세를 면세해 주는 관세면세제도와 사후에 관세를 환불하여 주는 관세환급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이해하기 쉬운 사전면세제도부터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효과를 논의하기로 하자.

정부가 수출재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국내업체의 공급곡선은 수입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의 S로 이동하게 된다. 관세라는 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할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의 가격이 모두 1로 동일하지만, 수출을 할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비용이 없지만 국내에 공급할 경우 그만큼의 관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업체는 생산하는 전량을 모두 수출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내공급 부족으로 인해 국내시장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자국이 소국이고 세계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기에 국내수요는 모두 외국의 수입에 의해 충족되고, 이로 인해 국내시장가격은 전과 동일하게 세계시장가격과 같게 된다. 또한 소국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소국의 업체가 세계시장에 전량 수출하여 공급을 증가시켜도 세계시장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수입은 전혀 없게 되며, 국내 총생산량과 수요량은 수입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제도는 수입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게 된다.

Proposition 1. 원재료 x 는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수입 x 에 대해서는 관세 $t > 0$ 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원재료 x 를 사용한 수출품에 대해 사전관세면제제도를 실시하면, 수입 원재료 x 의 관세수입은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사전관세면제제도는 실질적으로 원재료 x 의 관세를 $0(t=0)$ 으로 만든다.

증명: 원재료 x 의 관세 $t > 0$ 이므로 이를 수입하여 사용할 경우 양(+)¹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사전면제제도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자. 즉, 기업이 원재료 x 를 이용하여 수출품목을 생산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국산공급용 품목을 생산할 경우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동일하고, 소국의 가정에 의해 소국의 기업에게는 주어진 가격이므로 기업의 한계비용에 의해 모두 수출품목만을 생산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최상의 선택이다.

여기서 기업이 생산품을 모두 세계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국내에 공급이 없어)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완제품에 대해 현재 관세가 없기 때문에 세계시장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게 된다. 이는 세계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높은 곳에 수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국의 경제에서 국내시장가격은 세계시장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게 된다. 또한 국내업체는 국내시장가격의 조그마한 가격 상승으로는 수출에 대한 순이익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국내에는 공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품목을 수출하므로 수입 원재료 x 에 대한 관세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관세수입은 없게 되고, 실질적으로 원재료 x 의 관세 $t=0$ 과 같다.

Proposition 1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알려지

지 않은 분석 결과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전면세제도 혹은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할 경우 완제품의 국내시장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였으나, 분석결과에서는 소국 개방경제에서 소국 교역재의 가격이 공급부족으로 상승할 경우 다른 나라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가격 상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로 인해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함께 운영되어야 하며,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의 감소와 함께 국내소비 감소만큼의 수출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지금까지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서 사전면세제도 대신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할 경우를 고려해 보자. 관세환급제도는 단어가 뜻하는 그대로 관세를 사후에 환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에는 관세징수에 대한 행정비용,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행정비용, 관세를 납부한 시점과 환급받는 시점의 차이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행정비용은 사회적 손실로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전면세제도에 비해 그만큼 혜택이 적어진다. 다시 말해 관세환급제도는 사전면세제도와는 달리 제반비용으로 인해 관세의 일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면세제도에 비해 부분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는 부분면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관세환급제도의 효과는 사전면세제도처럼 자유무역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게 된다.

이렇게 관세환급제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완제품 단위당 제반비용들을 C 라고 하자.

$$C = (1-\lambda)t$$

여기서 λ 는 환급률이라 명명하자. 환급률이란 단위당 납부한 관세 중에서 사후에 환급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단위당

100원의 관세를 납부하였고, 수출 후에 80원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환급률은 0.8이 된다. 이 경우 20원은 관세 사후 환급에 따른 제반비용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WTO의 규정에 따라 수출 보조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λ 는 1 이하의 수치를 가지게 된다($\lambda \leq 1$)⁴⁰).

특히, $\lambda=1$ 이면, 전혀 제반비용 없이 전액 환급을 받은 것을 의미하여 사전면세제도와 동일한 제도가 된다.

만약 $0 < \lambda < 1$ 이면, 관세환급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일부만 환급받음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에도 Proposition 1은 여전히 성립된다. 그 이유는 국내업체는 국내에 공급하는 것보다 수출을 할 경우에 더 높은 순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여전히 전량 수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0 < \lambda < 1$ 인 경우, *CS*와 *TR*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PS*는 환급비용으로 인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제도에 의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비용으로 인해 *PS*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만약 $\lambda=0$ 이면, 전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국내 업체는 국내공급과 수출이 무차별적이 된다. 만약 $\lambda < 0$ 이면, 환급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므로 아무도 환급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에는 환급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효과면에서 동일하므로 그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 완제품에 관세 부과

정부가 여전히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부과를 하고 이를 통해 관세수입을 얻고자 한다면, 또는 완제품의 수입 없

40) λ 가 1보다 클 경우($\lambda > 1$) 관세환급액이 관세납부액보다 많아짐으로 보조금을 지불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이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국내시장에 공급되기를 원할 경우 현재 사전면세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량 수입되는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시장가격을 그 만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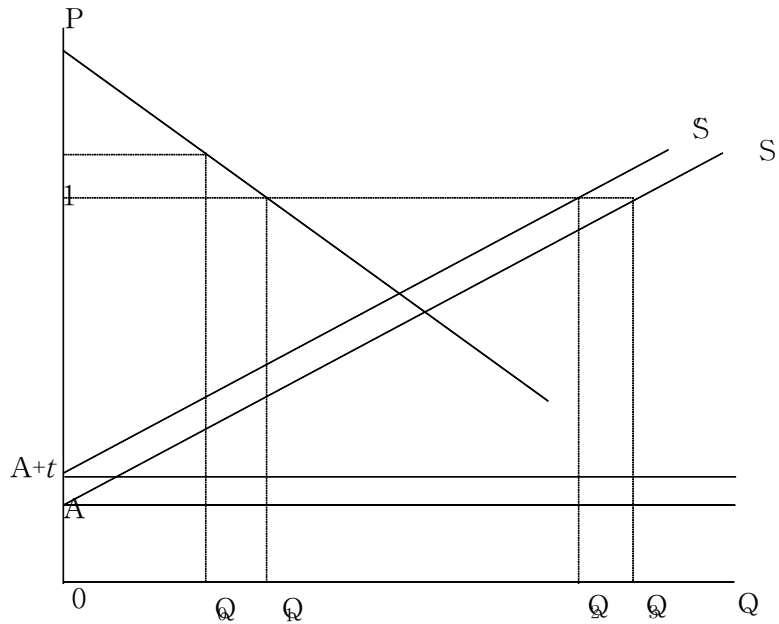
국내업체가 전량 수출을 하는 이유는 수출을 할 경우 순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 공급할 경우에도 그만큼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국내업체는 내수공급과 수출에 무차별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제품에 대해 수입 원재료에 부과한 관세 t 만큼을 부과하여야 한다.

완제품과 수입 원재료에 모두 t 의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하자. 정부는 물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국내 총생산은 관세부과 이전의 자유 무역상황과 동일하게 $Q_3 = \frac{1-A}{c}$ 만큼 생산이 된다. 그러나 관세 부과 이전에 비해 국내에 공급하는 물량은 $Q_0 = \frac{D-(1+t)}{b}$ 으로 감소하게 되고, 수출은 $\frac{1-A}{c} - \frac{D-(1+t)}{b}$ 로 증가하게 된다.

국내에 공급하는 물량이 $\frac{D-(1+t)}{b}$ 로 감소하는 이유는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시장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여 국내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분인 $\frac{t}{b}$ 만큼 수출은 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는 국내수요 감소로 인한 것으로 소비자의 후생의 감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text{국내수요 감소} = \frac{t}{b} = \text{수출 증가}$$

[그림 IV-2] 수입 완제품에 관세 부과



혹자는 이런 수출 증가를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국내업체에 수출 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완제품에 대한 소비세는 수출업체에게 수출 보조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로 인해 발생한 완제품의 수입을 국산재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전면세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수출 보조금의 역할로 해석할 수 있지만, 완제품에 대한 소비세부과는 그만큼의 수요 감소에 따라 자연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에 불과하다.

완제품에 대한 과세는 국내시장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불러오고,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수입의 증가를 가지고 온다.

첫째, CS의 변화를 살펴보자. 완제품에 t 가 부과되기 이전의 CS

는 $CS = \frac{(D-1)^2}{2b}$ 이다. 그 후 완제품에 t 가 과세되어 국내시장가격이 상승하면 $CS = \frac{[D-(1+t)]^2}{2b}$ 으로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완제품에 대한 t 부과로 CS 의 변화분은 다음과 같다.

$$\Delta CS = \frac{t[t-2(D-1)]}{2b}$$

여기서 $1 < D$, $t+1 < D$ 이므로 $\Delta CS < 0$ 으로 CS 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완제품에 관세 t 를 부과함으로써 국내공급용에 사용되는 원재료 수입으로 발생하는 TR 을 살펴보자.

$$\Delta TR = \frac{t[D(1+t)]}{b}$$

셋째 PS 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CS 는 감소($\Delta CS < 0$)하는 반면, 새로운 관세부과로 정부의 관세수입은 증가($\Delta TR > 0$)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회 후생은 모호한 상태가 된다. ΔCS 와 ΔTR 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Delta CS + \Delta TR = -\frac{t^2}{2b} < 0 \text{ 이다.}$$

즉, 관세부과는 관세수입을 발생시키지만 완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효과로 국내소비를 감소시키면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CS , PS 그리고 TR 의 변화는 완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비해 그만큼 사회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마. 소국 정부의 목적함수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왜 실시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수출에 대해 큰 가중치를 두고 있는 소국 정부의 목표로 인해 정책이 실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소국 정부의 목적함수는 CS , PS , TR 그리고 EX 의 합으로 표시하였다.

$$W_i = CS_i + \alpha PS_i + TR_i + \beta EX_i, \quad \text{for } i=1, 2, \dots, n.$$

우선, 자유무역상황에서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면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TR 은 증가하였으나, PS 와 EX 는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PS 의 감소분이 TR 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위의 목적함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함수를 가진 소국이 사전면세제도 없이 전량 수입되는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그 후 사전면세를 도입하면 앞서도 보았듯이 Proposition 1로 인해 자유무역과 동일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사전면세제도를 도입한 후 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면, PS 에는 변화가 없지만, CS 는 감소하고, TR 과 EX 는 증가하게 된다. CS 의 감소분은 TR 의 증가분보다 크다.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그만큼 후생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소국의 목적함수는 EX 에 대해 β 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β 의 크기는 소국이 얼마만큼 EX 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수출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출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β 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이 같은 소국의 목적함수로 인해 만약 $|\Delta CS + \Delta TR| < \beta EX$ 이면, 즉, $\beta > \frac{t}{2}$ 이면, 소국은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사중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뿐만 아니라 완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완제품 관세부과 이후 사전면세제도 대신 관세환급제도가 운영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관세환급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앞서 논의하였듯이

$$\Delta CS = \frac{t[t-2(D-1)]}{2b} < 0,$$

$$\Delta TR = \frac{t[D(1+t)]}{b} > 0 \text{와 함께}$$

생산자도 사전면세에 비해 관세를 전액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PS도 감소하여

$$\Delta PS = \frac{-(1-\lambda)t[(1-\lambda)t-2(1-A)]}{2c} < 0 \text{이다.}$$

따라서 CS, PS, 그리고 TR의 전체적인 변화는 사전면세제도가 운영되는 경우에 비해 감소폭이 더 크게 된다.

$$\Delta CS + \Delta TR + \Delta PS = -\frac{t^2}{2b} + \frac{(1-\lambda)t[(1-\lambda)t-2(1-A)]}{2c} < 0.$$

한편, 국내소비 감소에 따른 수출 증가도 사전면세제도 아래서는 국내수요 감소폭과 동일한 $\frac{t}{b}$ 만큼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급제도 아래서는 사후환급의 제반비용으로 인해 $\frac{(1-\lambda)t}{c}$ 만큼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출의 변화는

$$\Delta EX = \frac{t[c - (1-\lambda)b]}{bc} \text{ 이다.}$$

여기서 ΔEX 의 크기는 알 수 없다. 만약 $c > (1-\lambda)b$ 이면, $\Delta EX > 0$ 으로 수출은 증가하게 되지만, 반면 $c < (1-\lambda)b$ 이면, $\Delta EX < 0$ 으로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소비함수와 생산함수의 기울기에 의존하여 만약 $c > b$ 이면 λ 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Delta EX > 0$ 이며, 그 반대로 $c < b$ 이면 λ 의 크기에 따라 ΔEX 의 부호가 결정된다.

소국의 목적함수를 고려하여 만약 $|\Delta CS + \alpha \Delta PS + \Delta TR| < \beta EX$ 이면, 즉, $\beta > \frac{\alpha(1-\lambda)b\{(1-\lambda)t - 2(1-A)\} - ct}{2\{c - (1-\lambda)b\}}$ 이면, 소국은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사중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뿐만 아니라 완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β 의 크기는 사전면세제도에서의 β 의 크기에 비해 더 크다. 이는 관세환급제도로 인해 CS , PS , 그리고 TR 의 후생이 더 많이 감소하고 수출은 이에 비해 덜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국의 정부가 수출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경우에만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3. 국산 원재료 생산이 가능한 경우

국산 원재료가 존재하여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앞의 절과 동일하게 현재 수입 원재료에 관세 t 를 부과하고 이와 함께 사전면세도 함께 실시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수입 원재료에 관세 t 만을 부과하고 사전면세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앞서 논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생산이 감소하게 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PS 도 감소하며, TR 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이미 논의한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사전면세제도를 함께 실시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국내업체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을 할 경우 사전면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출용 원재료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공급용으로 생산하는 완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사전면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용에 국내업체는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게 된다⁴¹⁾.

이런 전제 아래 국내업체가 국내공급용으로 생산하는 완제품에 투입되는 국산 원재료가 부족하여 수입 원재료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와 이와는 달리 국산 원재료가 충분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국산 원재료가 존재하여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지만 국산 원재료의 생산비용함수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 국산화 수준이 낮은 경우

먼저 국내공급용으로 생산하는 완제품에 투입되는 국산 원재료가 부족하여 수입 원재료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자.

수입 원재료에 관세 t 를 부과하면, 그만큼 해당 원재료에 대한 국내시장가격은 관세 t 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국산 원재료의 생산은 증가하게 된다. 즉 관세부과로 인해 국내생산 증가(국산화 진척)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국내업체는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수출을 할 때 더 많은 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된 모든 완제품을 수출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원재료는 전량 수입에 의해 충당되거나 혹은 국산 원재료의 가격이 원래대로 하락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국산 원재료

41) 이럴 경우 국내업체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기본적으로 본고에서는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의 품질 등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논의하고 있다.

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수입 원재료의 경우 사전면세가 되기 때문에 수출재화를 생산하는 국내업체는 비싼 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산 원재료의 가격도 관세부과 이전의 가격으로 하락하고 그만큼 국내생산도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국산 원재료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제도가 수입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 다른 점은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관세부과로 증가하였으나, 사전면세로 다시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산화 진척(국내생산 증가)에 도움을 주었지만, 사전면세는 그 반대의 경우를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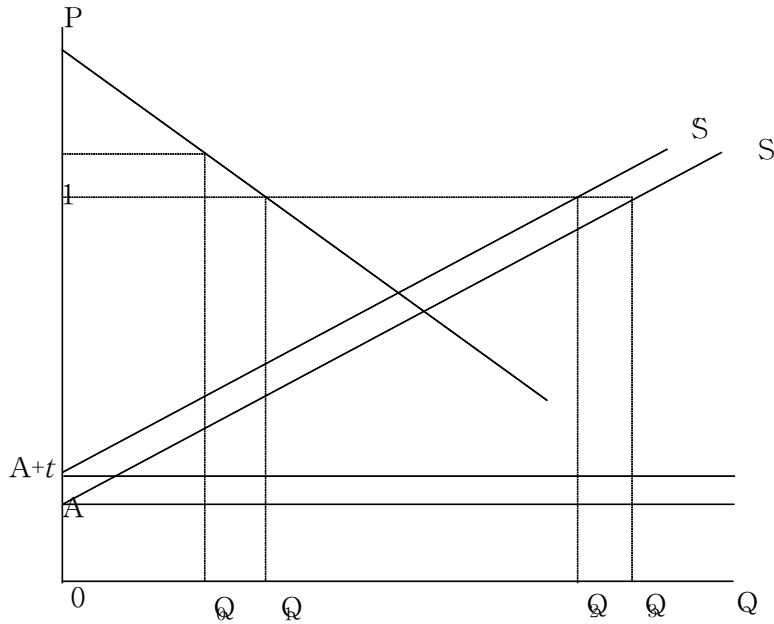
Proposition 2. 원재료 x 는 국내 생산이 가능하며, 수입 x 에 대해서는 관세 $t > 0$ 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원재료 x 를 사용한 수출품에 대해 사전관세면제제도를 실시하면, 수입 원재료 x 의 관세수입은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사전관세면제제도는 국산 원재료의 보호수준을 $0(t=0)$ 으로 만든다.

Proposition 2도 Proposition 1과 유사한 결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분석 결과이다. 이들 두 Proposition의 차이점은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와 국산 원재료 생산이 가능하지만 생산 수준이 적은 경우이다.

국내수요는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충당되게 된다. 소비자는 국내시장가격이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자유무역 상황의 후생수준과 동일하게 된다.

$$\Delta CS = \Delta PS = \Delta TR = 0$$

[그림 IV-3] 국산화 수준이 낮을 경우



1) 완제품에 관세 부과

정부가 만약 국산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통한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시장가격을 그만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산 원재료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 그 자체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결과, 첫째, 국산 원재료의 생산은 증가하게 된다. 둘째,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국내시장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이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Delta CS = \frac{t[t - 2(D-1)]}{2b} < 0$$

셋째, 국내업체의 총생산량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 감소로 인해 이전보다 국내수요 감소 $\frac{t}{b}$ 만큼 수출은 더 증가하게 된다.

넷째, TR 은 이전의 국산용 원재료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 국산용 원재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덜 증가하게 된다. 국산 원재료의 생산량을 F 라 가정할 때, TR 의 증가는 다음과 같다.

$$\Delta TR = \frac{t[D(1+t)]}{b} - tF$$

PS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ΔCS 와 ΔTR 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Delta CS + \Delta TR = -\frac{t^2}{2b} - tF < 0 \text{ 이다.}$$

즉, 관세부과는 관세수입을 발생시키지만 완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효과로 국내소비를 감소시키면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CS , PS 그리고 TR 의 변화는 완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비해 그만큼 사회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소국 정부의 목적함수를 고려할 때 CS , PS 그리고 TR 의 후생 변화 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이들 변화의 절대치 합이 가중치를 적용한 수출의 증대보다 작기 때문이다($|\Delta CS + \Delta TR| < \beta EX$). 다시 말해, $\beta > \frac{t}{2} + bF$ 이면, 소국은 사중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뿐만 아니라 완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β 의 크기는 앞의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크다. 이는 국산 원재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세수입 증가폭이 작아 CS , PS 그리고 TR 의

후생이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국의 정부가 수출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경우에만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서 사전면세제도 대신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한다면,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β 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세환급에는 제반비용이 수반되어 CS , PS 그리고 TR 의 후생이 더 많이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사전면세제도에 비해 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앞의 모든 경우에 비해 소국의 정부가 수출에 더욱 더 큰 비중을 둘 경우에만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시사점

가장 눈에 띄는 주요 사항은 관세부과는 국산화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부과는 직접적으로 국내시장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전면세제도는 국산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여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완제품에 대한 관세 없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제도는 관세로 인해 국산 원재료의 생산 증가 요인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사전면세제도이건 관세환급제도이건 간에 국산 원재료의 생산증가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산 원재료의 보호를 위해서는 결국 완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후생)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희생을 통해 국산 원재료가 보호되고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증가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내수요 감소만큼만 수출 증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진정한 수출 증가라고 할 수 없다. 즉, 원재료 비용 감소 등을 통한 생산력 증가로 수출이 증가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한편 사전면세는 완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자유 무역 상황을 기준으로 수출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자유무역 상황을 기준으로 소비자 수요는 수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사전면세가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유무역 상황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이 경우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국 정부의 수출에 대한 가중치 β 가 앞의 경우들에 비해 가장 커야 된다. 즉, 앞의 모든 경우에 비해 소국의 정부가 수출에 더욱 더 큰 비중을 둘 경우에만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국의 정부가 개발 초기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수출에 대해 큰 가중치(비중)를 두고 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국산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한 관세(소비자 잉여의 감소 등으로)로 인해 발생하는 사중손실도 충족될 수 있었지만,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룬 상태에서도 이렇게 큰 가중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가중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직도 합당한 정책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국산화 수준이 높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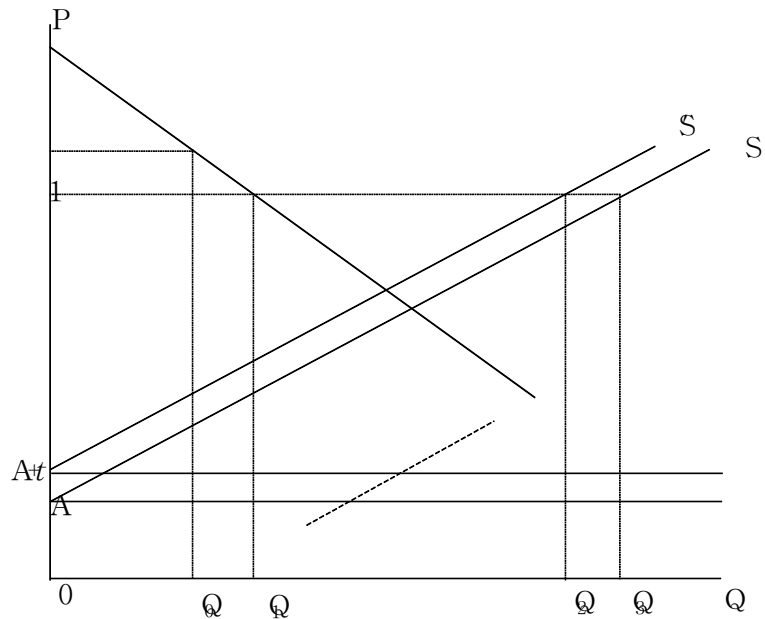
1) 수입 원재료 관세 부과

앞의 국산화 수준이 낮은 경우와 동일하게 수입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고 한편으로 사전면세가 실시되면, Proposition 2가 적용되어, 관세에 의한 수입 원재료의 보호는 없게 된다.

2) 완제품에 관세 부과

완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관세면세제도로 인해 수출용으로 생산되는 완제품에는 수입 원재료가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공급용으로 생산되는 완제품에는 국산 원재료가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국산 원재료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국

[그림 IV-4] 국산화 수준이 높은 경우



내시장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더 생산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국내업체는 국내공급용 생산에만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과공급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국산 원재료의 국내시장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내업체는 수출보다는 국내공급에 더 많은 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완제품의 국내시장가격도 함께 하락하고 결국 시장균형은 완제품과 국산 원재료의 국내시장가격이 국제시장가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CS도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경우들과는 달리 자유무역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의 경우에는 국내소비 감소만큼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그러한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산 원재료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완제품과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사전면세제

도로 인해 전혀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앞의 국산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국산 원재료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국산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완제품과 수입 원재료에 함께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산화 및 수출 촉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Delta CS = \Delta PS = \Delta TR = 0$$

관세환급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산 원재료의 국내시장가격이 $1-\lambda$ 만큼 오르게 된다. 그 이유는 $1-\lambda$ 만큼의 환급비용이 발생하여 수출을 할 경우 국내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국내 공급에 따른 순이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산 원재료의 국내시장가격이 $1-\lambda$ 만큼 상승하고 국산 원재료의 생산도 그 가격 상승만큼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국내소비 감소에 의한 수출증가가 없이, 오히려 관세환급으로 인한 환급비용이 존재하여 자유무역 상황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로 인해 관세부과 및 관세환급제도 이전에 비해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만 부과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없을 경우에 비해 관세부과와 함께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할 경우 수출의 증가에 기여를 한다. 이는 관세라는 비용을 그만큼 낮추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부과도 하지 않고 관세환급도 실시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많은 경우 원재료의 국산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수입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실시하는 것은 국

산화 촉진에도 도움을 못 줄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3) 국산화 수준이 중간적인 경우

국산화 수준이 앞의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중간인 경우 국산 원재료에 대한 국내시장가격은 국제시장가격과 관세가 포함된 가격의 어느 중간에서 결정되게 된다. 그 수준은 완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산 원재료의 초과공급이 없고, 수출재와의 순이익이 같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begin{aligned} & \text{완제품의 국제시장가격} < \text{완제품 가격} < \text{완제품의 국제시장가격} + t \\ & \text{원재료의 국제시장가격} < \text{국산 원재료 가격} < \text{원재료의 국제시장가격} + t \end{aligned}$$

따라서 사전면세제도가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관세부과 이전에 비해 증가하며, 완제품의 관세부과 역시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완제품의 국내시장가격화 상승에 의한 국내소비 감소만큼 수출 증가와 CS감소가 나타난다.

4) 시사점

관세부과는 국산 원재료의 국내시장가격을 상승시켜 생산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국산화 촉진을 추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전면세제도는 이러한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사전면세제도로 인해 국산 원재료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과 동일해짐으로써 관세를 통한 국산화 촉진효과를 없애고 있다.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없이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사전면세제도 아래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나 완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도 원재료의 국산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국산화 및 수출 촉진

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즉 사전면세제도는 관세부과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린다. 반면 국산화 수준이 낮을수록 완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그 효과를 발휘하여 국산화 및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존재할 경우 사전면세는 수출을 증가하여 자유무역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는 관세라는 비용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완제품 관세부과 후의 수출증가는 가격경쟁력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아니라 국내수요 감소만큼 국내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완제품 관세부과로 인한 변화이지 사전면세제도에 의한 변화는 아니다.

지금까지 사전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사전면세제도가 사후적으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관세환급제도에 비해 제반(행정 및 금융)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 제도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사전면세제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세환급 이상의 행정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Ⅱ장 제3절에서 사전면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언급하였다.

4. 관세환급비용과 국산화 촉진

관세환급제도는 단어가 뜻하는 그대로 관세를 사후에 환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관세징수에 대한 행정 비용,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행정비용, 관세를 납부한 시점과 환급받는 시점의 차이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행정비용은 사회적 손실로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전면세제도에 비해 그만큼 혜택이 적어진다.

이렇게 관세환급제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완제품 단위당 제반 비용들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C 라고 하자.

$$C = (1-\lambda)t$$

여기서 λ 는 환급률을 의미한다. WTO의 규정에 따라 수출 보조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λ 는 1 이하의 수치를 가지게 된다($\lambda \leq 1$)⁴²⁾. 즉 $\lambda=1$ 이면, 전혀 제반비용 없이 전액 환급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lambda < 0$ 인 경우에는 제반비용이 사후 관세환급액보다도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업체의 입장에서 $\lambda > 0$ 인 경우에는 언제나 관세환급을 신청하게 된다. 다시 말해, 수출용 원재료로는 국산 원재료에 비해 수입 원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용 원재료로 전부 수입 원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lambda < 0$ 인 경우에는 제반비용이 환급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국산 원재료를 이용하거나 혹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고 환급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두 원재료간의 선호는 무차별적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간 경우인 $\lambda=0$ 인 경우에도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에 대한 선호가 무차별적이 된다. 즉, 어느 것을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관세만큼의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업체로서는 어느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관세환급제도가 국산 원재료를 더 사용하여 국산화를 촉진시킬 아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관세환급에는 항상 제반비용이 존재하며, 이러한 제반비용이 환급으로 얻는 수입보다 작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국산 원재료를 특히 더 선호하게 관세환급제도가 유도하지는 못한다.

42) λ 가 1보다 클 경우($\lambda > 1$) 관세환급액이 관세납부액보다 많아지므로 보조금을 지불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5. 요약 및 평가

국산 원재료의 생산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없는 경우,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를 구분하였다.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을 유발시키는 관세환급제도로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없이는 수출증가가 불가능하였다. 즉, 이 경우 관세환급제도는 국산화 장려라는 정책목표는 이룰 수 없으며, 단지 국내 소비자의 희생만큼 자유무역상황에 비해 수출을 더 증가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잉여의 감소가 함께 발생하며, 사중손실의 발생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불가능하기에 수입 원재료를 이용하여 수출을 할 경우 모두 환급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 및 행정상의 여타 제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전에 설정한 소국의 목적함수로서 수출지향적인 정책이 설명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의 수출에 대한 가중치가 지금도 여전히 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낮은 경우를 살펴보자. 수입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약한 국산 원재료에 대해 보호하기 위함이다. 수입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산 원재료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관세를 통해 국산화를 촉진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산 원재료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면 이 원재료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국내업체는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다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관세환급제도(사전면세제도)는 국산 원재료에 부과된 보호장벽(관세)을 무력화시킨다. 즉, 관세환급은 국산 원재료의 국산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완제품의 관세부과 없이는 관세환급은 관세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국산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온다. 따라서 수출은 증가하지만 이는 국내 소비 감소에 의해 그 만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역시 국내 소비자 잉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적으며, 또한 관세환급제도가 실시될 경우 정부의 수출에 대한 가중치는 전자의 경우에 비해 더 커야만 정부가 이런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국산 원재료의 생산이 많은 경우에는 앞서 보았듯이 사전면세제도는 국산화 효과도 없고, 수출증가도 없었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의 경우 수입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고 이로 인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시 관세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환급으로 인한 제반비용만큼이 국산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제반비용만큼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 오히려 자유무역 상황에 비해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에 가중치를 두는 소국의 목적함수를 고려할 경우 관세환급으로 인해 제반비용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국산 원재료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를 없애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소비자의 희생뿐만 아니라 정작 돕고자 하는 수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쟁력이 약한 국산 원재료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이로 인해 국내 수출업체는 환급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환급제도는 앞서도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제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국내 수출업체는 생산자 잉여의 희생이 뒤따른다. 물론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느냐에 따라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 수입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출업자의 생산자 잉여에 비해 관세환급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생산자 잉여가

크므로 관세환급이 수출 및 생산자 잉여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국산 원재료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기업의 희생은 불가피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할 경우 완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의 희생과, 기업도 원재료 관세부과 이전의 수출 및 잉여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희생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경쟁력이 약한 국산 원재료를 돕기 위해 수출 기업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세환급을 통한 국산화는 환급의 제반비용에 따른 국산화 촉진 이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관세부과는 국내 산업보호로 국산화에 확실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관세환급제도는 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비해 수출을 증가시킨다. 이는 관세환급으로 그만큼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급관련 제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상황으로의 수출 증가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은 자유무역상황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소비자의 희생에 기반을 둔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온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희생 없이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단계에서는 생산자와 수출증가에 대해 소비자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활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의 완제품에 하나의 원재료가 사용되는 간단한 부분균형분석이기에 현실적으로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하나의 완제품을 위해 수만 가지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이론

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관세환급이 국산화 및 수출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후생 변화와 함께 정부의 목적함수를 설정하여 수출에 대한 가중치를 도입함으로써 후생감소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행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V. 관세환급제도 폐지시의 경제적 효과: 일반균형분석

이 장에서는 관세환급제도의 폐지가 소비자 후생과 산업별 생산, 수입 및 수출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환급의 폐지와 관세율의 인하가 병행되는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정책결합을 분석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이 따라 수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수출용 원자재 사전면세나 관세환급의 정책체계가 전반적인 저(低)관세율 체계로 바뀌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세환급의 폐지가 검토된다면 그 경우 정책목표는 재정재원의 확보에 있기보다는 수입과 수출과 관련된 가격체계의 왜곡을 시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책 수용성(受容性)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존의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이라는 혜택의 폐지와 더불어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한편, 관세환급 폐지와 병행되는 관세율 인하가 어느 정도로 행해지는가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장의 분석에서는 정부의 실질세수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⁴³⁾ 전 산업의 관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인하되는 경우 등을 상정한다.

43) 정확한 의미는 제V장 제3절 참조.

1. 모형의 구조

본장에서는 일반균형계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명헌·성명재(2001)가 사용한 모형과 동일하지만, 관세환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계층간 소득분배 효과에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가계를 하나의 대표적 가계로 간략히 표현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하에서 모형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명헌·성명재(2001)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개괄적 구조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⁴⁴⁾.

일반균형모형의 구조는 우선 모형이 상정하는 주체간의 지급의 흐름을 나타내는 사회계정행렬도를 통해 파악가능하다. 이 연구에 사용된 사회계정행렬도는 이명헌·성명재(2001)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관세환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표 V-1> 참조). 우선, 재화계정으로부터 정부로 귀속되는 관세수입액이 산업연관표상의 관세징수액이 아니라 조(粗)징수액으로 조정된다. 산업연관표상의 관세징수액은 조정수액에서 관세환급액을 차감한 순징수액인데, 실제로 수입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일차적으로 지게 되는 세부담은 순징수액보다 조정수액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로부터 해외거래계정에 대하여 관세환급액만큼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즉, 산업연관표상에서는 관세환급이라는 정부의 재정지출활동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정부계정은 균형이 유지되지만 재화계정과 해외거래계정은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재화의 해외로의 수출에서 수취되는 액수는 순수출액에 관세환급액을 더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

44) 모형에 대한 기술적 서술은 부록3 참조.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수입된 재화의 총액산출에는 관세환급액을 반영해 준 반면 그 처분의 측면에서는 수출로 인해 취득되는 가액이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직접적 대가지불은 물론 관세환급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재화의 처분 중에서 수출액을 관세환급액만큼 증가시켜 줌으로써 이같은 사실을 반영한다. 이로써 재화부분과 해외부분도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표 V-0> 사회계정행렬의 개요

	생산부문	재화	요소	가계	정부	투자	해외
생산부문		국내생산					
재화	중간투입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총액	순수출액+관세환급
요소	요소비용						
가계			요소소득		이전지출		
정부	간접세	순(純)관세액 +관세환급액 +수입상품세	요소세	소득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			
투자			감가상각	저축	정부저축		해외로부터의저축
해외		수입	해외요소 보수		관세환급		

이제 경제 내의 주체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제약조건들을 간단히 언급한다. 경제는 가계, 정부, 기업의 3개 주체로 구성되며 28종류의 상품 및 그것을 생산하는 산업이 존재한다. 가계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그것을 생산요소시장에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요소소득과 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의 합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것이 가처분 소득이 되며 그것을 소비와 저축기금으로 지출한다. 저축을 위해서는 실물 텀으로 일정량이 지출되고 가처분 소

득에서 저축지출을 차감한 부분을 효용최대화 원리에 의하여 28종의 상품에 나누어 지출한다. 각 산업은 하나의 기업에 대표된다. 이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요소시장에서 구매하여 본원투입으로 사용하며 자신과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투입을 이용한 산출물은 수출재와 내수재로 배분된다. 정부는 간접세, 법인세, 가계소득세, 관세 및 수입상품세를 징수하고 관세환급(수출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남은 수입을 정부소비, 정부저축,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으로 지출한다. 간접세와 관세는 각각 국산재와 재화가격의 증가세로 징수된다. 자본소득세와 가계소득세는 각각 자본소득과 가계소득세의 일정비율로 과세되고 관세, 수입상품세는 각각 수입가격과 '수입가격 \times (1+관세율)'의 증가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관세환급은 수출가격에 대한 음(-)의 증가세 형태로 부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부저축은 실물 텀으로 일정량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소비는 총세입에서 다른 지출항목을 지출한 후 남은 부분을 레온티에프적 효용함수 최대화 원리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세환급을 수출보조금으로 모형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관세환급을 이와 같이 시간차원이 배제된 일반균형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을 내수재 생산부분과 수출재 생산부분으로 명시적으로 세분하고 내수재용 부문에 투입재로 사용되는 수입재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수출재용 부문에 사용되는 수입재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준연도에 각 부문별로 수입재를 포함한 생산요소가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를 구득할 수 없었다. 산업연관표는 각 산업별 생산요소에 대한 지출 중에서 수입재가 어느 만큼인가에 대한 정보와 각 산업의 총공급이 내수와 수출 사이에 어떻게 처분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수출을

위해 수입재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된 모형에서는 각 산업이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수출재와 내수재를 결합생산(joint production)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관세환급의 효과를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조세우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선택으로 최종생산물 중 한 가지에 대해 부여되는 조세우대로 처리한 것이다.

가계의 저축, 정부의 저축,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저축으로 투자재원이 마련되며 이것이 투자재의 구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끝으로 해외거래에 있어서는 개방소국경제를 가정하여 수출재와 수입재는 각기 일정한 세계시장가격으로 수출입된다고 가정하고 각각에 대해 증가 베이스로 수출보조금과 관세가 징수된다.

2. 자료 및 모수설정

이 연구에 사용된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수는 크게 요소부존량, 생산함수와 효용함수의 비율모수 및 탄력성모수, 그리고 조세와 보조금의 세율(보조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요소부존량과 비율모수(share parameter)의 설정을 위해서는 1995년의 산업연관표의 28개 부문 통합대분류에서 제공되는 산업별 생산요소 이용에 대한 정보 및 소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 탄력성 모수는 구체적으로 재화별 국산재·수입재간의 용도별(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대체탄력성, 각 산업별 생산함수에서 노동·자본 대체탄력성 그리고 내수재·수출재간의 전환탄력성이다. 이 모수들은 모두 이명현·성명재(2001)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세율과 보조율은 모두 기준연도의 자료에서 과세기준 대비 세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 비율이 정률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관세를 제외한 조세와 이전지출의 규모는 국세통계연보 및

문형표 외(2000)의 수치를 이용한다.

산업별 관세환급액에 대해서는 공식통계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산업별 관세 조(粗)징수액은 관세청에서 제공된 HS별 징수액 통계를 한국은행이 이용하는 HS의 IO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얻은 수치를 이용한다. 다음으로 산업별 관세 순징수액은 1995년 산업연관표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끝으로 관세환급액은 관세조정수액과 관세순징수액의 차이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얻은 산업별 관세조정수액, 관세순징수액, 관세환급액은 <표 V-2>와 같다. 이 중 관세순징수액의 총액과 관세환급액 총액에 대해서는 공식통계와의 비교가 가능한데, 관세순징수 총액의 경우는 산업연관표로부터의 수치와 관세연감상의 합계 통계와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17억원), 환급액 총액의 경우는 위의 방법에 따른 환급액 규모가 관세연감의 통계에 비하여 1,300억원, 즉 약 10% 정도 적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장의 분석에서는 다른 모수의 설정에 있어서 산업연관표에 의존하였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의 산업별 환급 추정액을 사용한다⁴⁵⁾.

이같이 산출한 산업별 조관세징수액과 순관세징수액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수입액으로 나눔으로써 각각 조관세율과 순관세율을 얻는다. 또한 환급액을 수출액으로 나눔으로써 환급에 의한 수출보조율을 얻게 된다. 이 세율은 <표 V-3>과 같다. 결과적으로 이명현·성명재(2001)의 경우 초기 모수 설정에 있어서 관세환급이 고려되지 않았고, 관세순징수액으로부터 수입재에 대한 관세율을 계산

45) 이상과 같이 추정한 산업별 환급액수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장근호·김진수(1997)에 수록된 1993년도 산업별 환급액 수치와 비교하여 보았다. 장근호·김진수(1997)에 제시된 1993년 산업별 환급액과 1993년 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된 산업별 수출액에서 구해진 1993년 환급률과 본문에서 구해진 1995년 수출액 대비 환급률을 비교해 본 결과 광산품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던 반면, 이 연구에서는 관세환급을 고려함으로써 관세조(粗)징수액을 기준으로 조관세율을 설정하였다는 차이점, 그리고 환급에 의한 수출보조효과가 고려되었다는 차이점이 있게 된다.

<표 V-1> 산업별 환급액

(단위: 억원)

산 업	조정수액 (A)	산업연관표상 관세징수액 (B)	환급액(추정) A-B
1. 농림수산물	2,796	2,720	75
2. 광산물	2,575	2,521	54
3. 음식료품	5,936	5,657	279
4. 섬유 및 가죽 제품	4,086	1,636	2,450
5. 목재 및 종이제품	1,834	1,710	124
6. 인쇄, 출판, 복제	0,050	45	5
7. 석유 및 석탄제품	1,165	807	357
8. 화학제품	7,782	6,328	1,455
9. 비금속광물제품	0,923	881	42
10. 제1차금속	5,367	3,897	1,470
11. 금속제품	0,675	505	169
12. 일반기계	9,135	8,543	592
13. 전기, 전자기기	9,371	6,360	3,011
14. 정밀기기	2,849	2,560	289
15. 수송장비	1,836	1,535	301
16. 가구 및 기타	0,857	644	212
합 계	57,235	46,349	10,887

<표 V-2> 환급액의 수출액 및 수입액 대비 비율

(단위: 억원, %)

산 업	환급액 A	수출액 B	보조율 A/B	순관세율 ¹⁾	조관세율 ²⁾
1. 농림수산물	75	9,434	0.795	5.264	5.409
2. 광산품	54	593	9.102	2.005	2.048
3. 음식료품	279	18,439	1.513	13.179	13.829
4. 섬유, 가죽	2,450	163,345	1.500	2.948	7.362
5. 목재, 종이	124	9,617	1.289	5.145	5.518
6. 인쇄, 출판, 복제	5	1,401	0.357	1.041	1.158
7. 석유, 석탄제품	357	23,765	1.502	1.679	2.422
8. 화학제품	1,455	100,813	1.443	5.448	6.700
9. 비금속광물제품	42	4,836	0.869	7.355	7.706
10. 제1차금속	1,470	54,299	2.707	3.663	5.045
11. 금속제품	169	24,956	0.677	4.931	6.580
12. 일반기계	592	45,374	1.305	5.664	6.056
13. 전기, 전자기기	3,011	313,846	0.959	3.917	5.772
14. 정밀기기	289	11,613	2.489	5.401	6.011
15. 수송장비	301	125,713	0.239	2.808	3.358
16. 가구 및 기타	212	19,201	1.104	5.872	7.804

주: 1) 순관세율은 산업연관표에서 계산

2) 조관세율은 관세청자료에서 계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환급에 의한 수출보조율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1%와 2% 사이이다. 그 중 특히 높은 산업은 광산품(9.1%)이고, 그 이외에 1차 금속(2.7%), 정밀기기(2.5%) 등의 보조율이 2%를 넘고 있으며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등의 경우가 1.5% 수준이다. 한편 환급액의 수입액에 대한 비율 즉 조관세율과 순관세율의 격차는 많은 사업에서 1% 이하이며 섬유산업의 경우가 4.4%로 높으며, 금속제품(1.6%), 전기 및 전자

기기(1.9%), 가구 및 기타 산업의 경우(1.9%)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3. 정책변화와 그 경제적 효과

가. 정책대안

위에서 설명한 모형을 이용하여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별 정책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대안 1) 관세환급을 폐지하면서 모든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되 실질세수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도록 인한다. 실질세수 중립적 정책변화란 관세환급에 의한 수출보조율을 0으로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정부의 소비가 실질 텀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세율을 모든 산업에 걸쳐 일정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관세환급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상의 잉여를 관세율 인하에 이용하되, 새로운 세수수준도 정책변화 이전의 정부의 소비수준만큼을 달성하는 데 필요충분하도록 그 인하율을 조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는 사후적-실질적 세수 중립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관세율 인하비율 $(1-\rho)$ 는 다음의 관계를 만족하도록 모형에 의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sum_s p_c^t(s)g^0(s) = \sum_s \tau^t t m^0 p_m^t(s)q_m^t(s) + t\text{기의 관세 이외 세수} \\ - (t\text{기의 관세환급액} + t\text{기의 정부저축액} + t\text{기의 이 전지출액})$$

단, $g(s)$: 정부의 부문별 소비적 지출

$$\tau^0 = 1$$

대안 2) 관세환급 폐지와 더불어 관세율을 앞의 <표 V-3>에 보인 기준연도의 순관세율로 낮춘다. 대안 1이 사후적 실질세수 중립적 정책변화인 반면 이것은 사전적 명목세수 중립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실질세수가 중립을 이룬다는 보장은 없다.

대안 3) 관세환급 폐지와 더불어 중간투입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수입재의 관세율만을 1%로 낮추고 다른 산업의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안이다. 이것은 관세환급이 수출재 생산에 대해 주고 있던 중간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혜택을 수출재, 내수재에 공통으로 돌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안도 사후적으로 실질세수가 중립을 이룬다는 보장은 없다. 관세율을 1%로 인하하는 산업은 산업연관표의 수입거래표상 산업별 총수입액 중 중간재로 사용되는 액수의 비율이 90%를 넘는 5개의 산업들로 광산품, 목재·종이,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그리고 제1차 금속이다. 인하후 세율을 1%로 한 것은 정책변화 이전상태에서 위의 품목 중 조관세율이 가장 낮은 광산품의 관세율이 약 2%라는 점과, 원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과세기반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세율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대안은 현행 관세환급의 대상품목이 중간재, 원자재이므로 관세환급이 폐지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안 1과 대안 2와 같이 중간재·소비재를 막론한 전 산업의 관세율 인하보다는, 중간재·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나. 정책효과

1) 대안 1의 효과

정책 대안의 설명에서 제시되었던 수식을 만족하는 τ 는 0.79로 계산되었으며, 이것은 관세환급을 폐지할 경우 정부의 실질세수를 중립적으로 유지시키면서 관세율을 각 산업에서 현행 수준에 비해 21% 인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실질세수 중립적 정책변화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가계의 후생, 산업별 산출수준 그리고 수출입의 측면에서 살펴 보자.

가계의 후생은 0.017%의 증가가 계측되었다. 이것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효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관세환급에 의한 수출보조를 환급폐지와 이에 상응하는 관세율 인하로 대체했을 경우 주목할 만한 후생 증진 효과가 기대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산업별 생산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크기는 1%를 밑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수송장비의 경우는 1.5% 정도의 생산수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은 3.3%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산업에 대한 환급에 의한 수출보조율이 1.5%로 상당히 높았고 또한 정책변화 이전 총매출 규모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7.4%로 매우 높았음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1차 금속제품(-1.2%), 정밀기기(-1.2%)의 산출수준도 상대적으로 큰 감소율을 보인다. 이 두 산업 역시 수출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총매출 규모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은 산업이다.

<표 V-3> 관세환급폐지와 실질세수 중립적 관세율 인하의 효과

(단위: %)

	생 산	수 출	수 입
1. 농림수산물	-0.069	1.025	-0.171
2. 광산품	-0.753	-20.766	-0.436
3. 음식료품	-0.057	-1.147	0.394
4. 섬유 및 가죽 제품	-3.323	-4.351	0.262
5. 목재 및 종이제품	-0.123	-0.586	-0.093
6. 인쇄, 출판, 복제	0.154	1.760	-1.695
7. 석유 및 석탄제품	-0.475	-2.185	-0.187
8. 화학제품	-0.757	-1.639	-0.228
9. 비금속광물제품	0.027	0.251	0.300
10. 제1차금속	-1.160	-5.167	0.098
11. 금속제품	0.116	0.625	0.470
12. 일반기계	-0.099	-0.756	0.116
13. 전기, 전자기기	0.644	0.951	0.401
14. 정밀기기	-1.187	-4.210	0.045
15. 수송장비	1.544	3.500	-0.524
16. 가구 및 기타	-0.238	-0.353	1.018

다음으로 산업별 수출물량의 변화를 살펴보자, 16개 산업 중에서 10개 산업의 수출물량이 감소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감소를 보이는 것은 광산품으로 20.1%의 감소를 보인다. 이것은 광산품에 대한 수출보조율이 단연 높았던 점, 그리고 수출재와 내수재 간의 전환탄력성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상정된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석유 및 석탄제품(-2.1%), 1차 금속(-5.2%), 정밀기기(-4.2%) 등도 높은 정책변화 이전 높았던 수출보조율에 상응하여 수출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수출이 증가하는 산업도 있는데 수송장비가 3.5%로 가장 두드러지

며 농림수산물(1.0%), 인쇄 및 출판(1.8%)의 수출도 증가한다.

다음으로 수입물량의 변화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에 비하여 수입의 변동률은 적다. 다만, 인쇄·출판·복제(-1.70%)와 수송장비(-0.52%)가 소폭의 감소를 보여준다. 반면 음식료품(0.39%), 금속제품(0.47%), 전기 및 전자기기(0.40%), 가구 및 기타제품(1.02%) 등의 수입이 약간의 증가를 보인다. 이와 같이 수입의 증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은 정책변화 이전 관세의 수준이 높거나, 국산재·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⁴⁶⁾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음식료품의 경우 정책변화 이전 관세율이 13.8%로 모든 산업 중 가장 높으며, 금속제품의 경우는 자본재 용도에서 국산재·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이 6.5로 매우 높다. 가구 및 기타제품의 경우에는 관세율도 7.8%로 높고 자본재 용도에서 국산재·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이 10.5로 높다⁴⁷⁾.

2) 대안 2 및 대안 3의 효과

다음으로 대안 2와 대안 3의 경제적 효과를 대안 1과 비교해 보자.

먼저 소비자 후생 측면을 보면, 대안 2의 경우 소비자 후생은 0.01%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거의 0으로 볼 수 있는 수치이다. 반면, 실질세수는 정부의 소비적 지출수준으로 평가했을 때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안 3, 즉 관세환급 폐

46) 이 연구에 사용된 이명현·성명재(2001)의 수치는 문석웅(1998)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47) 일부 산업에서 수입과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모형이 수입재와 국산재 사이에 불완전 대체가능성을 상정하는 '아밍턴가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부록 3 참조). 완전대체가능성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상승이 일어난 산업으로 국내자원이 이동하여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아밍턴가정하에서는 생산수준이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의 함수로 결정되는 일종의 생산자가격 지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수출가격인하의 효과가 클 경우,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준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지와 더불어 중간재 투입비율이 높은 5개 품목의 세율을 1%로 낮추는 이 대안을 실행할 경우 소비자 후생은 0.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미한 증가이지만 대안 1이나 대안 2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실질세수는 소비적 지출 기준으로 보아 0.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관세율의 인하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즉 사중(死重)손실의 감소에 힘입는 것은 물론 정부의 실질세수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 즉 정부로부터 소비자로의 소득이전의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산업별 생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대안 1과 대안 2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반기계의 생산수준이 대안 1에서는 미세하게 감소하지만, 대안 2에서는 미세하게 증가하는 정도가 차이점이다. 대안 3 아래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보인다. 우선, 순관세율이 약 4% 내지 7% 수준에 있던 이들 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1%로 낮아짐에 따라 대안 1이나 대안 2에 비해 감소품목의 감소율이 더 커지고 비금속광물제품과 같이 생산증가를 보이던 품목이 대안 3에서는 감소로 돌아선다. 또한, 인쇄출판, 금속제품, 수송장비와 같이 대안 1과 대안 2에서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의 증가율이 더욱 커진다. 이렇게 볼 때 대안 3은 대략적으로 소재산업의 생산수준을 감소시키고 일부 산업의 산출수준을 다른 대안보다 더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생산요소 배분에 있어 보다 양극화의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안 2의 경우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이 산업의 조관세율이 5.5%이고 순관세율이 2.9%이므로 대안 1에 따른 조관세율 기준 20% 인하로 도달하는 순관세율 4.4%보다 대안 2에 따른 순관세율 2.9%의 실제 관세율화가 훨씬 더 강한 관세율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차 금속,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도 비

슷한 패턴을 보여준다. 대안 3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교적 관세율이 4% 내지 7% 수준에서 1%로 인하되는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에서 수입량 증대가 다른 대안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루어진다.

<표 V-4> 대안별 생산효과

(단위: %)

대안	1	2	3
1. 농림수산물	-0.069	-0.243	-0.044
2. 광산품	-0.753	-0.880	-0.716
3. 음식료품	-0.057	-0.331	-0.139
4. 섬유 및 가죽 제품	-3.323	-3.764	-1.867
5. 목재 및 종이제품	-0.123	-0.209	0.205
6. 인쇄, 출판, 복제	0.154	0.114	0.356
7. 석유 및 석탄제품	-0.475	-0.773	-0.085
8. 화학제품	-0.757	-0.831	-0.900
9. 비금속광물제품	0.027	0.110	-0.186
10. 제1차금속	-1.160	-1.204	-1.783
11. 금속제품	0.116	0.107	0.605
12. 일반기계	-0.099	0.014	0.214
13. 전기, 전자기기	0.644	1.196	0.060
14. 정밀기기	-1.187	-1.126	-1.334
15. 수송장비	1.544	1.563	1.983
16. 가구 및 기타	-0.238	-0.348	0.846

수출의 경우에는 수입의 경우와 같이 대안 간의 질적인 차이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세 대안 모두가 수출 측면에서는 환급의 폐지로 동일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쇄·출판·복제와 금속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대안 3의 경우 다른 대안들에 비해 더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 산업에 중간투입으로 사

용되는 수입재의 관세율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V-5> 관세환급폐지와 사전적 명목세수 중립적 관세율 인하의 효과(수출입)

(단위: %)

항 목	수 입			수 출		
	1	2	3	1	2	3
1. 농림수산물	-0.171	-0.505	-0.273	1.025	0.605	0.535
2. 광산품	-0.436	-0.622	-0.262	-20.766	-20.925	-21.080
3. 음식료품	0.394	-0.344	-0.311	-1.147	-2.014	-1.863
4. 섬유 및 가죽 제품	0.262	5.239	-2.113	-4.351	-3.873	-3.107
5. 목재 및 종이제품	-0.093	-0.173	0.270	-0.586	-0.998	0.686
6. 인쇄, 출판, 복제	-1.695	-1.785	-2.467	1.760	1.477	2.541
7. 석유 및 석탄제품	-0.187	0.118	-0.806	-2.185	-2.930	-1.224
8. 화학제품	-0.228	-0.334	2.418	-1.639	-1.844	-0.518
9. 비금속광물제품	0.300	-0.135	2.394	0.251	0.112	0.315
10. 제1차금속	0.098	0.393	1.947	-5.167	-5.152	-4.358
11. 금속제품	0.470	0.764	-1.511	0.625	0.654	2.112
12. 일반기계	0.116	-0.034	-0.074	-0.756	-0.763	-0.330
13. 전기, 전자기기	0.401	0.737	0.065	0.951	1.792	-0.006
14. 정밀기기	0.045	0.038	0.018	-4.210	-4.111	-4.685
15. 수송장비	-0.524	-0.710	-1.489	3.500	3.484	4.081
16. 가구 및 기타	1.018	1.573	-2.334	-0.353	-0.448	1.302

4. 소 결

이 장에서는 관세환급 폐지와 그와 관련된 수입관세율의 변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비교하였다.

실질세수가 유지되도록 관세환급 폐지와 관세율의 일정비율 인하

를 병행시키는 정책변화(대안 1)는 소비자의 후생측면에서는 미세한 증가를 가져옴을 보였다. 또한 산업별 산출에 있어서는 수송장비의 생산을 증대(1.54%)시키고 섬유 및 가죽제품의 생산을 감소(-3.3%)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출측면에서는 광산품, 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송장비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측면에서는 음식료품,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가구 및 기타제품의 수입을 약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질세수 중립적인 정책변화가 소비자의 후생측면에 그리 큰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정책체계가 개선을 시급히 요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체계를 운용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고려하면, 이 장의 분석은 관세환급의 축소 또는 폐지와 결합된 관세율의 인하가 국민 경제적으로 적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아님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사전적 명목 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세환급폐지와 더불어 기준연도의 순관세율을 실제관세율로 하는 정책변화(대안 2)는 대안 1과 크게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대안 1에 비해 관세율이 크게 떨어지는 품목, 즉 조관세율과 순관세율의 격차가 큰 산업의 수입이 다른 대안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끝으로 관세환급 폐지와 더불어 수입재가 집중적으로 중간재로 사용되는 품목군(광산품, 목재·종이,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그리고 제1차금속)의 관세율을 1%로 낮추는 정책변화(대안 3)는 대안 1 및 대안 2와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대안 3은 정부의 실질세수를 다른 대안에 비해 많이 감소시킨다(0.54% 감소). 또한, 중간재 중심의 산업들의 산출수준이 감소하고 인쇄·출판·복제, 금속제품, 수송장비의 산출 및 수출 증가율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높아진다. 이것은 이 대안이 정태적인 비교우위에 보다 충실한 방향으로의 자원 재배분을 불러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대안

은 정태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이 장의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은 장기적 측면들, 예컨대 유치산업 보호에 힘입은 비교우위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간재의 생산수준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산업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I. 요약 및 결론

1. 현 황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1975년 7월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그 규정을 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환급특례법의 제정 목적으로 수출물품제조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내국소비세 등의 사전면세 및 사후관리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산원자재의 사용과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출물품제조용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법·내국소비세법 등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세환급법은 그 동안 여덟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모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단순한 환급제도를 만들도록 환급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왔다. 개별환급이 전체 환급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2001년 기준 94.2%)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액환급의 비중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중소기업이면서 2년간 환급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수입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1.8%로 가장 낮았으며, 1998년 59.3%, 그리고 2001년 38.4%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은 미국의 약 2% 수준, 일본의 0.5%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 전체 관세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1995년 20.8%로 가장 낮았고,

2001년 27.8%이다. 따라서 관세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환급업무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처럼 환급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수출지향의 가공수출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재료, 특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미미한 면세제도 및 보세제도의 이용 부진,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원재료의 관세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총수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기준 35.71%이지만 개별환급액 비중은 11.56%로 이들 기업의 총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0.33%에 불과하였다. 상위 20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약 3만여개의 기업들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07%이지만, 이들이 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별환급 59.86%, 정액환급 98.58%로 매우 높다. 총환급액이 전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개별환급 1.98%+정액환급 0.22%)로 상위 20개 기업에 비해 7배 정도 월등히 높다.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공업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환급 이용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정액환급을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섬유직물과 의류 및 장신품의 환급액이 많았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섬유관련 관세율은 다른 여타 공산품의 기본관세율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 관세율 개편에서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경공업 중에서는 음식료품의 환급비율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고추와 같이 고 관세의 농산물이 그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림수산품의 수입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와 관련된 환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공업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산업은 석유제품으로 전 산업 중에서 관세환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산업으로 2000년 환급액이 5,644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25.8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환급액을 받고 있는 자동차 및 부분품의 환급액이 1,483억원임을 감안할 때 4배 이상 되는 매우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기기 부분품의 경우 환급받은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전체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도 0.38%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ITA 협정 등에 의해 무세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무세화 추세는 2004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도 이들 산업의 환급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2.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분석

본고에서는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가 수출과 국산화 촉진에 미치는 영향 및 관세인하와 함께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분균형분석 결과 우선 관세환급을 통한 국산화는 환급의 제반 비용에 따른 국산화 촉진 이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관세부과는 국내산업 보호로 국산화에 확실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관세환급제도는 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비해 수출을 증가시킨다. 이는 관세환급으로 그만큼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급관련 제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상황으로의 수출 증가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은 자유무역상황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소비자의 희생에 기반을 둔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온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희생 없이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단계에서는 생산자와 수출증가에 대해 소비자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활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의 완제품에 하나의 원재료가 사용되는 간단한 부분균형분석이기에 현실적으로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하나의 완제품을 위해 수만 가지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이론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관세환급이 국산화 및 수출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후생 변화와 함께 정부의 목적함수를 설정하여 수출에 대한 가중치 정도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균형분석과 함께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관세 수입을 유지하면서 관세환급을 대신하여 관세율을 전체적으로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변화를 측정하였다. 즉, 관세환급의 폐지와 관세율의 인하가 병행되는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한 이유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제발전에 따라 수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원자재 관세환급의 정책체계가 전반적인 낮은 세율 체계로 바뀌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현 상태의 세수입을 유지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고 그리고 환급제도도 폐지할 경우 후생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로 관세환급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견해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물론 관세환급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 및 행정비용을 고려한다면 관세환급의 축소 또는 폐지와 결합된 관세율의 인하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3. 향후 방향

다른 나라들의 정책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개발을 하면서 수출 등을 위해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고 그 후 경제가 어느 일정 수준에 이르면, 사후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전면세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면 한편으로는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관세환급제도에 의한 문제점이 부각되게 된다. 그 후 환급제도를 없애고 관세를 더 낮추는 것이 후생을 더욱 증대시키는 때가 되면 관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보세제도 등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책 수순이다.

이러한 추이에 견주어 보아 행정 및 순응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세를 낮추는 것과 후생이 같은 정점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 및 순응비용을 고려할 경우 관세환급의 축소 또는 폐지와 이에 따른 관세율의 인하가 국민경제적으로 적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관세환급제도에 의한 행정 및 순응비용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이는 또 다른 연구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관세수입 대비 비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통해 추측할 때 환급관련 비용이 클 것으로 여겨지며, 이럴 경우 환급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관세율 조정은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부분균형분석에서 이용하였던 수출지향적인 정책 가중치이다. 위의 관세제도 폐지에서는 수출에 대한 정책적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출증대에 대해 정부가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관세환급 유지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부의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수출에 대한 가중치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 예로 미국에서는 생산자 잉여에 대한 정부의 가중치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시도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수출 가중치 분석은 또 다른 연구의 과제로 넘겨야 할 사항이다.

부분균형분석은 관세환급제도가 국산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산화 장려 혹은 국내산업 보호는 관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후정산제도(일괄납부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재료수입에서 환급을 받기까지 약 100여일이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이와 연관된 여타 비용을 감안할 때 사후정산제도는 사전관세면세와 상당히 가까운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수는 약 200여개이며, 그 금액도 전체 환급액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업체별 그리고 산업별로 관세환급제도 실적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세환급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 본고에서도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업체별, 산업별 관세환급 실적 등을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

업체별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총수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총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0.33%이지만 나머지 약 3만여개의 기업들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상위 20개 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놀라운 결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많은 큰 기업에 비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한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우나,

이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공업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이 관세환급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정액환급 중에서 가장 많은 정액환급을 받는 산업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섬유직물 산업의 정액환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 예로 1998년의 경우 정액환급의 절반 이상이 섬유 및 가죽제품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개별환급을 받은 수출액이 정액환급을 받은 수출액보다 많았지만, 단 인쇄, 출판 및 복제는 예외적인 산업으로 정액환급을 받은 수출액이 더 많다. 이런 특징은 아마도 이들 분야에 중소기업 규모의 수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정액환급 대상 품목 선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관세율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다. 이번의 WTO DDA협상을 위한 관세율 정책을 고려할 때 각 산업별 관세환급제도 이용을 함께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경공업의 음식료품과 중공업의 석유제품의 환급비율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섬유 및 가죽제품의 환급이용도 눈에 띈다. 이들 산업의 관세율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1980~1995년 사이에 국내 부가가치는 중공업, 경공업, 광산품, 농수산품의 순으로 증가해 왔으며 중공업은 연도에 따라 경공업의 2~3배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왔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중공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경공업에서도 음식료품과 섬유·가죽제품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매우 낮아 농림수산품에 가깝고 이외 인쇄·출판 및 복제는 중공업의 평균치 수준이며 목재·종이도 높은 편이다. 한편 중

공업 가운데는 전기·전자기기와 수송기계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어서 3~5배에 이른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 투입된 일정 규모의 자원으로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중공업 가운데 전기·전자기기와 정밀기기 등이 크고 농림수산물과 섬유·가죽제품 등은 작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에 자원이 배분되도록 관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 다른 제조업보다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음식료품과 석유제품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유로 관세환급 이용도 높다고 여겨지므로, 관세환급 등을 고려하여 섬유 및 가죽제품과 음식료품의 관세율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환급제도를 없앨 경우 전자기기 및 수송장비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큰 산업에 자원을 배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하나 눈에 두드러지는 산업은 석유제품으로 전 산업 중에서 관세환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산업으로 2000년 환급액이 5,644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25.8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환급액을 받고 있는 자동차 및 부분품의 환급액이 1,483억원임을 감안할 때 4배 이상 되는 매우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석유제품의 환급액이 가장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석유제품의 가장 대표적인 원재료인 원유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원유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이 안 되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여타 비경쟁 원재료의 관세율 수준인 0~2%에 비해 5%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대안 3에서 제시하였듯이 광산품(원유 등) 등 5개

부문의 관세를 1%로 대폭 낮추고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할 경우 정태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중간재의 생산수준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산업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대안 1과 2의 결과가 제시하듯이 일정부분 관세율을 낮추고 이에 환급제도 비중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많은 환급액을 수령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여타 비용을 고려하면 국민경제적으로 나온 결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⁴⁸⁾.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기기 부분품의 경우 환급받은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 1/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전체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도 0.38%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ITA 협정 등에 의해 무세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무세화 추세는 2004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도 이들 산업의 환급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관세율과 환급제도와의 관계를 볼 때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면서도 낮은 관세율로 환급에 대한 의존이 낮기 때문에 그 만큼 환급에 따른 비용도 적을 것이며, 이러한 낮은 관세율이 절대 수출액과 관계없이 환급제도의 이용을 낮춤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어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제도가 시행된 이후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절차 및 제도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48) 원유관세 인하에 따른 국내 석유소비 증가를 염려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국내 석유소비에 대한 조절은 내국세(교통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등)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휘발유를 기준으로 주유소 판매액의 약 70%가 세금이며 관세는 판매액의 약 0.8%를 차지하여 매우 미미하다.

이런 변천과정이 뚜렷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세계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고, 빠르고 단순한 그리고 정확한 환급을 원하는 개별기업들의 상반된 요구에 이끌려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세환급제도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제도이다. 원자재 수입 근거를 밝히고 이를 수출재에 체화시킨 정도(원재료 소요량)를 증명하여, 그 품목을 수출했음을 밝혀야 한다. 한편 경제가 발전할수록 품목수가 증가하고 기술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증명사항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빠르고 단순하고 정확한 환급은 근본적으로 이루기 불가능한 과제인지도 모른다. EDI시스템 도입 등으로 환급신청 및 결제에는 상당한 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환급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행정을 통한 관세환급의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복잡한 제도에서 행정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잦은 행정개편은 오히려 이미 안정된 제도에 혼란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세환급의 행정적인 개선보다는 경제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론적 설명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업체별,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은 많지 않다. 이에 이론적인 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도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업체별 그리고 산업별로 관세환급제도 실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세환급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 본고에서 제한된 자료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업체별, 산업별로 분석을 시도한 것도 관세환급제도 연구에 기여한 바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산업별 관세환급 실적을 분석하고, 산업별 관세율과 관세환급제도 사이의 관계를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관세와 관세환급이 일관

된 정책기조로 진행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된다. 한편, 관세환급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환급을 폐지하고 관세율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그 해답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제반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후생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시도한 것도 이번 연구의 또 하나의 의의라고 여겨지며, 정책당국에게도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관세환급제도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비로 인해 EDI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업체별, 산업별 분석을 한 것에 부족함을 느낀다. 향후에도 EDI 시스템을 통해 환급이 처리되기 때문에 관세환급자료는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세환급제도는 행정적으로 분명 복잡한 제도 이기에 향후 관세율이 낮아져 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하더라도 환급에 따른 여타 비용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므로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도 추후 과제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 문석웅, 「산업별 국내재/수입재간 대체탄력성에 관한 연구—CGE모형에 의한 업데이트 시뮬레이션 기법의 응용」,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8.
- 문형표·오영주·이희숙,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 비봉출판사, 2000.
- 신동천,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세경사, 1999.
- 이명헌·성명재, 『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1-06,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이명헌·정재호, 『뉴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00-10,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 이영휘, 『한국의 관세환급제도 실시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제경제연구원, 1980.
- 장근호·김진수,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7-13, 한국조세연구원, 1997. 11.
- 정인교, 「CGE모형에 의한 APEC의 배타적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연구』, 제45집 제2호, 1997.
- 정재완, 『관세환급실무자·관세사시험 수험생을 위한 관세환급특별법 —관세환급의 이론과 실무—』, 두남출판사, 2000.
- _____, 「조세면제의 수출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제경영 박사학위 논문, 1999.
- 한국무역협회, 「2001년 한국무역의 현황과 특징」, 무역의 날 보도

-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실, 2001. 11.
일본재무성, 『국고세입세출현황』, 각 연도.
- Arvind Panagariya, “Input tariffs, duty drawbacks, and tariff refo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2, pp. 131~147, 1992.
- Baldwin, Richard, “Politically Realistic Objective Functions and Trade Policy,” *Economic Letters*, 24, 1987, pp. 287~290.
- Jota Ishikawa · Barbara J. Spencer, “Rent-Shifting Export Subsidies with an Imported Intermediate Product,” NBER Working Paper Series 5458, February 1996.
- Gandolfo, Giancarlo, *International economics I*, 2nd (ed.) New York: Springer-Verlag, 1994.
- Staiger, Robert W., “International Rules and Institutions for Trade Policy,” in Grossman and K. Rogoff,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 New York: Elsevier Science Publishing, 1995, pp. 1495~1551.
- US Customs Service, 『Customs Annual Report』, 각 연도.

부록 1: 산업별 관세환급제도 현황 (1990~1994년)

<부표 0> 관세환급제도의 산업별 이용 현황

(단위: 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농림수산업	501	37	7.40	573	43	7.49	677	59	8.68	639	59	9.19	973	89	9.10
광산업	40	0.3	0.78	45	0.3	0.73	145	0.1	0.09	40	0.2	0.38	131	0.4	0.27
제조업	318,383	8,212	2.58	421,928	9,137	2.17	479,406	7,010	1.46	533,663	9,397	1.76	591,444	9,736	1.65
(경공업)	133,503	3,136	2.35	144,469	2,998	2.08	152,325	2,959	1.94	149,104	2,836	1.90	151,564	2,805	1.85
음식료품	4,082	128	3.13	4,753	161	3.38	5,247	178	3.40	4,990	177	3.54	5,509	177	3.21
섬유·가죽제품	116,453	2,721	2.34	125,641	2,579	2.05	132,538	2,524	1.90	129,351	2,409	1.86	130,505	2,381	1.82
종이·나무제품	3,130	51	1.63	3,297	44	1.33	3,549	51	1.44	4,047	60	1.48	5,379	68	1.26
기타제조업제품	9,837	235	2.39	10,775	215	2.00	10,992	40	0.36	10,711	190	1.77	10,168	179	1.76
(중공업)	184,880	5,077	2.75	277,460	6,139	2.21	327,081	4,051	1.24	384,559	6,561	1.71	439,881	6,931	1.58
화학제품	29,340	936	3.19	37,027	1,093	2.95	47,149	1,130	2.40	64,960	1,231	1.90	73,804	1,293	1.75
석유·석탄제품	11,149	711	6.38	15,842	202	1.27	23,839	232	0.98	20,032	215	1.07	25,941	365	1.52
요업·토석제품	1,984	28	1.41	1,813	28	1.56	1,996	32	1.60	1,803	24	1.30	1,677	22	1.32
계1차금속	28,073	379	1.35	34,359	498	1.45	40,004	658	1.64	47,157	702	1.49	44,998	755	1.68
금속제품	12,270	286	2.33	18,679	293	1.57	22,446	180	0.80	18,001	307	1.70	17,317	289	1.67
일반기계	21,906	696	3.18	33,559	988	2.94	37,784	338	0.90	50,287	1,046	2.08	56,654	988	1.74
전기 및 전자기기	62,859	1,570	2.50	107,954	2,474	2.29	110,833	1,121	1.01	126,940	2,381	1.88	139,491	2,439	1.75
정밀기기	2,178	87	3.98	3,157	111	3.53	3,670	110	2.98	4,672	132	2.82	4,900	116	2.38
운송기계	15,122	284	1.88	25,069	452	1.80	39,360	251	1.01	50,706	524	1.03	75,099	633	0.8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96	2	0.88	292	2	0.73	329	2	3.14	473	2	0.44	815	4	0.46
전체	319,114	8,251	2.59	412,955	9,183	2.22	480,527	9,475	1.97	534,818	9,458	1.77	593,364	9,829	1.66

주: 1. 수출액은 관세환급대상 수출액임

2. 1990년과 1991년 통계에는 부재료정액환급액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자료의 미비로 제외됨

3. 환급비율 = 환급액 ÷ 수출액 × 100

자료: 장근호 · 김진수(1997), p. 89.

<부표 1> 정액환급제도의 산업별 이용 현황

(단위: 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농림수산업	2	0.1	6.14	1	0.03	2.44	0.8	0.2	2.56	0.8	0	0.00	0.09	0.0009	1.00
광산업	2	0.001	0.66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제조업	3,731	76	2.03	10,981	189	1.72	18,257	336	1.84	29,330	394	1.34	53,534	637	1.19
(경공업)	2,208	36	1.62	3,642	49	1.33	9,077	100	1.10	18,286	189	1.03	36,525	369	1.01
음식료품	55	0.6	1.15	103	0.5	0.48	47	0.3	0.72	70	0.3	0.47	116	0.4	0.36
섬유·가죽제품	1,321	23	1.76	2,283	33	1.45	7,127	76	1.06	14,908	139	0.94	31,007	289	0.93
종이·나무제품	117	1	0.87	181	2	0.92	187	2	1.24	406	4	0.94	716	9	1.25
기타제조업제품	715	11	1.51	1,075	13	1.25	1,715	21	1.23	2,896	45	1.55	4,687	71	1.51
(중공업)	1,522	40	2.63	7,339	140	1.91	9,181	237	2.58	11,044	205	1.86	17,008	268	1.57
화학제품	280	12	4.36	1,014	29	2.85	1,208	33	2.71	1,775	35	1.98	2,881	53	1.83
석유·석탄제품	0.4	0.03	7.89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요업·토석제품	47	0.4	0.90	33	0.2	0.70	69	0.8	1.11	238	2	1.03	241	3	1.43
계1차금속	105	4	3.45	2,488	45	1.80	3,307	133	4.03	2,109	68	3.22	2,024	40	1.97
금속제품	210	4	1.73	357	7	2.03	537	8	1.53	1,594	23	1.43	3,542	45	1.27
일반기계	14	0.2	1.61	84	2	2.28	126	3	2.00	236	3	1.22	841	9	1.08
전기 및 전자기기	577	16	2.78	2,854	51	1.78	3,240	48	1.48	3,961	58	1.45	5,723	92	1.60
정밀기기	287	4	1.32	507	6	1.16	685	11	1.62	1,075	16	1.48	1,686	25	1.46
운송기계	1	0.005	0.44	1	0.02	1.90	9	0.2	2.20	55	0.8	1.44	71	1	1.7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	0.008	0.52	0	0	0.00	5	0.01	0.20	92	0.2	0.25	447	1	0.25
전체	319,114	8,251	2.59	412,955	9,183	2.22	480,527	9,475	1.97	534,818	9,458	1.77	593,364	9,829	1.66

주: 1. 수출액은 관세환급대상 수출액임

2. 1990년과 1991년 통계에는 부재료정액환급액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자료의 미비로 제외됨

3. 환급비율 = 환급액 ÷ 수출액 × 100

자료: 장근호 · 김진수(1997), p. 90.

<부표 3> 개별환급제도의 산업별 이용 현황

(단위: 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농림수산업	499	37	7.41	572	43	7.50	677	59	8.69	639	59	9.19	973	89	9.10
광산업	38	0.3	0.79	45	0.3	0.73	145	0.1	0.09	40	0.2	0.38	131	0.4	0.27
제조업	314,653	8,137	2.59	410,947	8,949	2.18	461,149	6,674	1.45	504,333	9,003	1.79	537,911	9,099	1.69
(경공업)	131,295	3,100	2.36	140,826	2,950	2.09	143,248	2,859	2.00	130,819	2,647	2.00	115,038	2,455	2.12
음식료품	4,028	127	3.16	4,651	160	3.44	5,200	178	3.43	4,921	177	3.59	5,394	176	3.27
섬유·가죽제품	115,132	2,699	2.34	123,359	2,546	2.06	125,410	2,448	1.95	114,443	2,270	1.90	99,498	2,092	2.10
종이·나무제품	3,013	50	1.66	3,116	42	1.35	3,361	49	1.45	3,640	56	1.54	4,663	59	1.26
기타제조업제품	9,122	224	2.45	9,701	202	2.08	9,277	19	2.00	7,815	145	1.86	5,481	108	1.97
(중공업)	183,358	5,037	2.75	270,121	5,999	2.22	317,900	3,815	1.20	373,515	6,355	1.70	422,872	6,663	1.58
화학제품	29,059	924	3.18	36,013	1,064	2.96	45,941	1,097	2.39	63,185	1,196	1.89	70,923	1,241	1.75
석유·석탄제품	11,148	711	6.38	15,842	202	1.27	23,839	233	0.98	20,032	215	1.07	25,941	365	1.52
요업·토석제품	1,938	28	1.42	1,781	28	1.57	1,928	31	1.62	1,565	21	1.35	1,436	19	1.31
제1차금속	27,968	376	1.34	31,870	453	1.42	36,697	524	1.43	45,048	634	1.41	42,974	716	1.66
금속제품	12,060	282	2.34	18,322	286	1.56	21,909	171	0.78	16,407	284	1.73	13,775	244	1.77
일반기계	21,891	696	3.18	33,475	986	2.95	37,658	336	0.89	50,051	1,043	2.08	55,813	979	1.75
전기 및 전자기기	62,281	1,554	2.50	105,100	2,423	2.31	107,593	1,073	1.00	122,979	2,324	1.89	133,768	2,348	1.76
정밀기기	1,891	83	4.39	2,650	106	3.98	2,986	98	3.30	3,597	116	3.22	3,214	92	2.86
운송기계	15,121	284	1.88	25,068	452	1.80	39,350	251	1.01	50,650	523	1.03	75,028	632	0.8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94	2	0.88	292	2	0.73	324	2	0.72	381	1	0.48	369	3	0.70
전체	315,384	8,176	2.59	411,856	8,994	2.18	462,294	9,138	1.98	505,393	9,064	1.79	539,383	9,190	1.70

주: 1. 수출액은 관세환급대상 수출액임

2. 환급비율 = 환급액 ÷ 수출액 × 100

자료: 장근호·김진수(1997), p. 91.

부록 2: 관세환급제도의 이용실적 부표

<부표 3>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의 비중

(단위: 억원, %)

	정액환급		개별환급		합 계
		비 중		비 중	
1975	100	16.3	514	83.7	614
1976	1,083	25.7	3,132	74.3	4,215
1977	1,120	25.3	3,306	74.7	4,426
1978	802	19.3	3,356	80.7	4,158
1979	774	17.1	3,754	82.9	4,528
1980	838	14.0	5,153	86.0	5,991
1981	2,397	29.3	5,779	70.7	8,176
1982	2,842	35.5	5,160	64.5	8,002
1983	3,567	37.7	5,906	62.3	9,473
1984	4,143	36.2	7,301	63.8	11,444
1985	5,070	44.6	6,286	55.4	11,356
1986	1,454	10.5	12,332	89.5	13,786
1987	1,590	8.0	18,260	92.0	19,850
1988	684	3.7	17,953	96.3	18,637
1989	310	2.0	15,184	98.0	15,494
1990	242	2.0	11,997	98.0	12,239
1991	307	2.8	10,625	97.2	10,932
1992	342	3.4	9,603	96.6	9,945
1993	393	4.1	9,284	95.9	9,677
1994	639	6.4	9,420	93.6	10,059
1995	817	6.7	11,380	93.3	12,197
1996	777	5.4	13,580	94.6	14,357
1997	764	6.1	11,861	93.9	12,625
1998	967	4.3	21,776	95.7	22,743
1999	1,324	6.3	19,650	93.7	20,974
2000	1,375	6.3	20,459	93.7	21,834
2001	1,328	5.8	21,442	94.2	22,770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부표 4> 관세수입 대비 환금실적

(단위: 억원, %)

	관세수입 (A)	환 금 액 (B)	관세수입 대비 환금비율 (B/A)	전체 관세징수액 대비 환금비율 (B/(A+B))
1975	1,810	614	33.9	25.3
1976	2,755	4,215	153.0	60.5
1977	3,858	4,426	114.7	53.4
1978	6,464	4,158	64.3	39.1
1979	7,322	4,528	61.8	38.2
1980	7,660	5,991	78.2	43.9
1981	8,906	8,176	91.8	47.9
1982	10,126	8,002	79.0	44.1
1983	14,632	9,473	64.7	39.3
1984	15,939	11,444	71.8	41.8
1985	15,661	11,356	72.5	42.0
1986	19,426	13,786	71.0	41.5
1987	26,965	19,850	73.6	42.4
1988	25,736	18,637	72.4	42.0
1989	21,176	15,494	73.2	42.3
1990	27,654	12,239	44.3	30.7
1991	34,355	10,932	31.8	24.1
1992	31,532	9,945	31.5	24.0
1993	28,859	9,677	33.5	25.1
1994	34,489	10,059	29.2	22.6
1995	46,332	12,197	26.3	20.8
1996	53,095	14,357	27.0	21.3
1997	57,976	12,625	21.8	17.9
1998	38,360	22,743	59.3	37.2
1999	46,873	20,974	44.7	30.9
2000	57,997	21,834	37.6	27.4
2001	59,234	22,770	38.4	27.8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부표 5> 관세수입액, 환급액, 수출액의 비교

(단위: 억원, %)

연도	관세수입액 (A)	환급액 (B)	수출액 (C)	B/A	B/C
1975	1,810	614	24,592	33.9	2.5
1976	2,755	4,215	37,342	153.0	11.3
1977	3,858	4,426	48,625	114.7	9.1
1978	6,464	4,158	61,520	64.3	6.8
1979	7,322	4,528	72,868	61.8	6.2
1980	7,660	5,991	115,515	78.2	5.2
1981	8,906	8,176	148,883	91.8	5.5
1982	10,126	8,002	163,638	79.0	4.9
1983	14,632	9,473	194,460	64.7	4.9
1984	15,939	11,444	241,972	71.8	4.7
1985	15,661	11,356	269,580	72.5	4.2
1986	19,426	13,786	299,030	71.0	4.6
1987	26,965	19,850	374,607	73.6	5.3
1988	25,736	18,637	415,224	72.4	4.5
1989	21,176	15,494	423,915	73.2	3.7
1990	27,654	12,239	465,773	44.3	2.6
1991	34,355	10,932	546,788	31.8	2.0
1992	31,532	9,945	604,163	31.5	1.6
1993	28,859	9,677	664,548	33.5	1.5
1994	34,489	10,059	757,256	29.2	1.3
1995	46,332	12,197	968,824	26.3	1.3
1996	53,095	14,357	1,095,055	27.0	1.3
1997	57,976	12,625	1,926,996	21.8	0.7
1998	38,360	22,743	1,598,078	59.3	1.4
1999	46,873	20,974	1,645,773	44.7	1.3
2000	57,997	21,834	2,170,054	37.6	1.0
2001	59,234	22,770	1,994,973	38.4	1.1

<부표 6> IO28 교역재산업 총내수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농림수산물	11.57	16.61	11.55	14.94	14.98	17.94
광산품	61.38	70.49	70.96	72.02	80.20	91.59
음식료품	6.96	6.42	4.28	9.06	11.46	13.62
섬유·가죽제품	15.39	12.06	11.42	13.76	24.69	23.92
목재·종이제품	13.37	12.56	17.23	20.67	22.84	20.33
인쇄, 출판및복제	4.77	6.43	3.77	4.15	5.60	7.62
석유·석탄제품	5.89	9.23	11.80	19.89	25.00	18.47
화학제품	26.35	20.07	23.85	24.49	22.18	24.68
비금속광물제품	5.48	6.43	8.68	9.23	7.84	7.62
제1차금속	32.45	25.58	22.28	21.67	23.28	24.52
금속제품	26.09	24.97	15.93	10.25	7.45	8.32
일반기계	71.47	66.64	48.36	43.18	42.08	38.53
전기전자기기	46.82	37.76	44.40	34.43	33.74	43.60
정밀기기	68.41	59.23	67.45	64.10	64.37	68.35
수송장비	57.43	44.29	24.00	14.63	14.85	18.28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11.17	10.53	14.11	11.83	18.69	21.21
전력가스및수도	0.06	0.01	0.06	0.13	0.17	0.15
건설	0.07	0.01	0.01	0.00	0.02	0.03
도소매	0.25	1.09	1.99	1.23	0.62	1.43
음식점및숙박	0.67	7.12	11.92	16.80	27.46	20.00
운수및보관	4.51	10.89	8.05	7.29	13.36	19.40
통신및방송	0.62	4.29	4.23	3.88	3.55	5.31
금융및보험	5.41	2.12	2.03	0.24	0.94	0.90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15	0.58	0.58	2.24	4.04	5.97
공공행정및국방	0.00	0.84	0.47	0.18	0.00	0.00
교육및보건	0.05	0.25	1.10	2.04	3.96	2.94
사회및기타서비스	0.26	0.75	0.99	1.73	4.64	4.20
기타	9.07	7.88	5.06	2.30	4.43	5.60

부록 3: 일반균형계산모형의 구조

여기서는 본문의 일반균형분석이 사용된 모형의 내용을 설명한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명현·성명재(2001)에 사용된 모형과 동일하며 따라서 이하의 설명은 상당부분 그 연구와 중복됨을 밝혀둔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정책변화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므로 가계의 소득계층별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대표적 가계로 나타냈다.

1. 경제주체의 여건과 행태에 관한 가정

가. 기 업

28개 부문 각각에 1개의 대표적 기업을 상정한다. 이 기업은 자신의 부문과 다른 부문이 생산한 재화를 구입하여 중간투입으로 사용하고, 가계가 소유한 노동과 자본을 중간투입과 결합함으로써 국내생산에 판매되는 내수재와 해외시장에 판매되는 수출재를 만들어 낸다. 물론 노동, 자본, 중간투입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금, 자본임대료, 투입재 가격을 지불한다. 또한 기업은 내수재 판매액 중 일정비율을 간접세로 정부에 납부한다. 이 비율은 산업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부문 s 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기업은 이를 최대화하려 한다.

$$\pi_s = (1 - t_{s,d})p_{s,d}y_{s,d} + p_{s,x}y_{s,x} - [(\sum_i p_i^Q Q_{is}) + wL_s + rK_s], \quad (1)$$

$$s = 1, \dots, 28$$

여기서 π_s : s부분의 대표적 기업의 이윤
 t_s^d : 내수재에 부과되는 간접세율
 $b_{s,d}$: 내수재 가격
 $y_{s,d}$: 내수재 공급량
 $b_{s,x}$: 수출재 가격
 $y_{s,x}$: 수출재 공급량
 p_i^Q : 중간투입재 가격
 Q_{is} : i재화에 대한 s부분의 중간투입수요량
 w : 임금
 L_s : 노동수요량
 r : 자본임대료
 K_s : 자본수요량

이 기업의 생산기술은 다투입-다산출(multi-input, multi-output)이며 다음과 같이 투입·산출이 분리가능한 기술로 표현된다.

$$y_s = \min \left[\frac{Q_{1s}}{a_{1s}}, \dots, \frac{Q_{ns}}{a_{ns}}, \frac{V^s(L_s, K_s)}{a_{vs}} \right], \quad (2)$$

$$V^s(L_s, K_s) = A_s [a_s L_s^{\nu_s^V} + (1 - a_s) K_s^{\nu_s^V}]^{1/\nu_s^V}, \quad \text{단 } \nu_s^V < 1 \quad (3)$$

$$y_s = B_s [b_s y_{s,d}^{\nu_s^T} + (1 - b_s) y_{s,x}^{\nu_s^T}]^{1/\nu_s^T}, \quad \text{단 } \nu_s^T > 1 \quad (4)$$

여기서 y_s : s부분의 산출수준
 a_{is} : s부분 산출(y_s) 1단위 생산에 필요한 i재 중간투입량
 V_s : s부분 부가가치량
 a_{vs} : s부분 산출(y_s)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부가가치량

즉, 부문은 식 (2)가 보여주듯 투입재와 부가가치부분을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 의해 결합하며, 부가가치 부분은 식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과 자본간의 불변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함수로 주어진다. 이때 노동과 자본간의 대체탄력성 σ_s^V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igma_s^V = 1/(1 - \nu_s^Q) \quad (5)$$

한편 이렇게 생산된 산출물은 식 (4)에 나타난 불변변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함수에 의해 내수재와 수출재로 전환된다. 이때 내수재와 수출재 사이의 변환탄력성 σ_s^T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igma_s^T = 1/(\nu_s^T - 1) \quad (6)$$

가격체계가 주어지면 위에 주어진 이윤최대화 문제의 풀이로서 $(y_{s,d}, y_{s,m}, Q_{is}, L_s, K_s)$ 의 벡터, 즉 내수재와 수출재의 공급량, 중간투입수요량,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수요량이 결정된다.

나. 가 계

가계는 다음과 같이 가치분 소득의 일정부분을 소비에 지출하면서 소비로부터의 효용을 최대화하려 한다.

$$U = \prod_i (c_i)^{\beta_i}, \quad \sum_i \beta_i = 1 \quad (7)$$

여기서 U : 효용지표
 c_i : i 재화의 소비량

한편, 가계가 직면한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1 - a)Y^* = \left(\sum_i p_i^C c_i\right) \quad (8)$$

여기서 Y^* : 가계의 가치분소득

p_i^C : 소비재 i 의 가격

위에서 보듯이 가계의 저축행태와 관련해서는 시간에 걸친 효용 최대화를 상정하지 않고 가계별로 일정한 저축성향을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은 저축과 관련하여 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형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별도의 다른 모수에 대한 추정 없이 기준연도의 자료로부터 쉽게 저축성향을 얻을 수 있다는 편리함때문에 정확적 일반균형모형에서 가계의 저축행태를 묘사하는 가정으로 흔히 사용된다⁴⁹⁾.

가계가 자신의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분 소득(Y^*)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 = [wL + r(1 - t_r - d_K)K] - TI - TC + TR \quad (9)$$

여기서

L : 노동부존

K : 자본부존

t : 법인세율

d : 감가상각률

TI : 소득세

TC : 사회보장부담금

TR :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이전지출

49) 예컨대, 신동천(1999), Decaluwe, Patry, Savard and Thorbecke(1999), Wobst, P. (1999)

즉, 가계는 소유한 노동력과 자본의 요소를 판매 및 임대하여 요소소득을 얻는다. 이 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해 각각 일정한 비율로 법인세가 징수된다. 또한 자본에 대한 임대료 수입 중 일부분이 감가상각 자금으로 지출된다. 그리고 정부에게 소득세(TI)를 징수당하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로부터 이전지출(TR)을 받는다.

가계의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세율은 위 식의 대괄호 부분에 대한 일정비율로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즉, 다음의 식에서 세율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TI = t_y [wL + r(1 - t_r - d_K)K] \tag{10}$$

$$TC = t_c [wL + r(1 - t_r - d_K)K] \tag{11}$$

가격체계가 주어지면 위의 효용최대화 문제에 대한 해로써 소비재에 대한 수요 $c_{i,h}$ 가 결정된다.

다. 정 부

정부는 생산부분의 내수재 판매에 대해 간접세를, 자본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가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물품세를 징수하고 이를 이전지출, 소비적 지출 그리고 정부저축으로 돌린다. 따라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begin{aligned} \sum_i t_{i,d} b_{i,d} y_{i,d} + r t_r K + TI + \sum_i (t_{i,m} + (1 + t_{i,m}) t_{i,z}) p_{i,m}^0 y_{i,m} \\ = TR + \sum_i p_i^c c_{i,G} + p_{inv} g_s \end{aligned} \tag{12}$$

여기서 $t_{i,m}$: i 재화에 대한 관세율
 $t_{i,z}$: i 재화에 대한 수입상품세율

$$\begin{aligned}
 p_{i,m}^0 &: i\text{재화 수입재 세전가격} \\
 y_{i,m} &: i\text{재화 수입재 수입량} \\
 c_{i,G} &: i\text{재화 정부소비량} \\
 gs &: \text{실물정부투자량}
 \end{aligned}$$

이때 식의 좌변, 즉 재정수입은 세율이 정해지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생적으로 정해진다. 반면, 이렇게 정해진 재정수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모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은 ‘실질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보다 엄밀하게는 재화소비에 의한 효용이 외생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액수로 정해진다. 즉, 다음이 어떤 가격체계 벡터 p 에서도 성립함을 의미한다.

$$TR_h = E_h(p; U_h^0)$$

이 가정은 정부의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이 가계의 소비수준에 대하여 어떤 최소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는 실물로 일정한 양의 투자를 행한다.

셋째, 정부는 이와 같이 이전지출과 투자에 대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후에 남은 재원을 소비항목간 명목지출액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즉 콕터클러스 효용함수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이 지출한다. 이것은 정부의 항목별 지출액의 비율이 정치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 투자재 시장

투자재원인 총저축액은 다음과 같이 요소시장에서 유보되는 감가상각, 가계의 저축, 정부의 저축(GS), 해외저축(FS)의 합으로 정해진다.

$$TS = rd_K K + aY^* + GS + eFS \quad (13)$$

여기서 TS : 총저축액

FS :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해외저축규모(외환표시)

e : 환율

$GS = p_{imgS}$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투자함수를 상정하지 않고 총투자액이 자동적으로 총저축액과 일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신고전학파적 일반균형계산모형에서 일반적이다⁵⁰).

그리고 투자재(I) 1단위는 투자용 재화(I_1, \dots, I_n)들을 일정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즉, 투자재의 생산 함수가 다음과 같은 레온티에프 함수라고 가정한다.

$$I = \min\left[\frac{I_1}{k_1}, \dots, \frac{I_n}{k_n}\right] \quad (14)$$

여기서 I_s : 재화 s 의 투자용 수요

k_s : 투자재 1단위 형성을 위해 필요한 s 재화의 양

50) 독립적 투자함수를 신고전파적 일반균형계산모형에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동천(1999) p. 136 이하의 논의를 참조하라.

따라서 투자재 1단위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I = \sum_i p_i^I k_i \quad (15)$$

여기서 p^I : 투자재의 가격

p_i^I : I_s 의 가격

그러므로 투자총량과 각 재화별 투자용 수요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 = TS/p^I$$

$$I_s = k_s I$$

마. 해외부분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출재를 구입함으로써 외환을 공급하고, 국내 시장에 수입재를 판매함으로써 외환을 수요한다. 총수입액과 총수출액의 차이는 국내시장으로의 유입자본이 됨으로써 외환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균형이 성립한다.

$$p_{s,x}^W y_{s,x} + FS = p_{s,m}^W y_{s,m} \quad (16)$$

여기서 $p_{s,x}^W$: 수출재의 세계시장가격(외환표시)

$p_{s,m}^W$: 수입재의 세계시장가격(외환표시)

국내화폐 표시 수출재 및 수입재의 가격은 외환으로 표시한 가격에 환율을 곱함으로써 얻어진다. 또한, FS 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

으로 가정한다.

바. 아밍턴(Armington) 재화의 가정

앞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되는 Q_i 가격과 정부의 소비재로 사용되는 c_i , 투자재로 사용되는 I_i 는 각기 하나의 재화인 것처럼 서술되었으나, 사실은 국산재와 수입재가 다음과 같이 결합한 것으로 가정한다. 예컨대 소비재 c_i 의 1단위는 다음과 같은 불변대체탄력성 함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c_i = A_i^C [a_i^C c_{i,d}^{\nu_i^C} + (1 - a_i^C) c_{i,m}^{\nu_i^C}]^{1/\nu_i^C}, \quad \text{단 } \nu_i^C < 1 \quad (17)$$

이때 $\sigma_{dm,i}^C = 1/(1 - \nu_i^C)$ 로 주어지는 $\sigma_{dm,i}^C$ 가 국산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낸다. 중간투입재(Q_i)와 투자재(I_i)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sigma_{dm,i}^Q, \sigma_{dm,i}^I$ 가 정의된다.

따라서 예컨대 앞의 설명에서 제시된 가격 p_i^C 는 산업부문별로 국산재 가격 $p_{i,d}$ 와 수입재 가격 $p_{i,m}$ 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지출최소화 문제의 간접목적함수로 주어진다. 또한 p_i^Q 와 p_i^I 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된다.

$$p_i^C = \text{Min}_{c_{i,d}, c_{i,m}} (p_{i,d} c_{i,d} + p_{i,m} c_{i,m}) \quad (18)$$

$$\text{s.t. } 1 = c_i$$

여기서 $p_{i,d}$: 국산재 가격

$p_{i,m}$: 수입재 가격

그러므로 s 부분의 국산재에 대한 소비재로서의 수요($c_{i,d}$)와 그와 같은 부분의 수입재에 대한 소비재로서의 수요($c_{i,m}$)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c_{i,k} = c_i \frac{\partial p_i^C}{\partial p_{i,k}}, \quad k = d, m \quad (19)$$

또한 국산재 및 수입재에 대한 중간투입으로서의 수요($Q_{ij,d}, Q_{ij,m}$)와 투자재로서의 수요($I_{i,d}, I_{i,m}$)도 같은 요령으로 Q_{ij} 및 I_i 와 지출함수 p_i^Q 와 p_i^I 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2. 시장의 균형조건

일반균형은 다음과 같이 재화시장, 요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된다.

$$\begin{aligned} \sum_j Q_{sj,d} + c_{s,d} + c_{s,d}^G + I_{s,d} &= y_{s,d} \\ \sum_i L_i &= L \\ \sum_i K_i &= K \\ \sum_s p_{s,x}^W y_{s,x} + FS &= \sum_s p_{s,m}^W (\sum_j Q_{sj,m} + c_{s,m} + c_{s,m}^G + I_{s,m}) \end{aligned}$$

여기서 $c_{s,d}^h$: 가계의 국내재 s 에 대한 소비수요

$c_{s,d}^G$: 정부의 국내재 s 에 대한 소비수요

$c_{s,m}^h$: 가계의 수입재 s 에 대한 소비수요

$c_{s,m}^G$: 정부의 수입재 s 에 대한 소비수요

3. 탄력성 수치

이 모형은 내수재와 수출재간의 전환탄력성, 노동과 자본의 대체 탄력성, 그리고 소비, 투자, 중간투입에 있어서 국산재와 수입재간의 대체탄력성 모수를 필요로 한다. 이 모수들은 모두 이명헌, 성명재(2001)에 사용된 것을 이용한다. 이 모수들은 아래의 표들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전환탄력성은 이명헌·성명재(2001)에서 호탄력성 개념으로 추정된 수치이다.

둘째, 생산에 있어서 내수재와 수출재 사이의 전환탄력성(σ_T)은 미국경제에 대해 de Melo and Tarr가 추정한 수치와 Go(1994)가 필리핀 경제의 분석에 사용했던 수치의 단순평균을 사용하였다⁵¹⁾.

셋째, 국산재와 수입재간이 대체탄력성들(σ_{dm}^C , σ_{dm}^Q , σ_{dm}^J)은 기본적으로 문석웅(1998)의 수치를 이용한다. 단, 이 연구에서 별도로 독립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은 문석웅의 제품분류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타 제조업품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문석웅의 경우 서비스산업에서의 대체탄력성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정인교(1997)의 연구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51) 두 연구 모두 전환탄력성의 크기 순위가 농림업, 제조업군, 서비스업군의 순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제조업군의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는 같은 탄력성을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업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표 7> 노동자본 대체탄력성과 전환탄력성

(단위: %)

산 업	노동자본 대체탄력성	전환탄력성
1. 농림수산물	1.26	3.45
2. 광산물	1.55	2.95
3. 음식료품	1.06	2.95
4. 섬유·가죽제품	1.28	2.20
5. 목재·종이제품	1.23	2.20
6. 인쇄·출판·복제	0.00	2.20
7. 석유·석탄제품	3.33	2.20
8. 화학제품	1.01	2.20
9. 비금속광물	0.77	2.20
10. 제1차금속	1.08	2.20
11. 금속제품	0.29	2.20
12. 일반기계	0.65	2.20
13. 전기·전자기기	2.08	2.20
14. 정밀기기	0.63	2.20
15. 수송장비	0.11	2.20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02	2.20
17. 전력가스 및 수도	0.65	0.85
18. 건설	0.70	0.85
19. 도소매	0.00	0.85
20. 음식점 및 숙박	0.82	0.85
21. 운수 및 보관	0.93	0.85
22. 통신 및 방송	0.84	0.85
23. 금융 및 보험	0.70	0.85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22	0.85
25. 공공행정 및	1.00	0.85
26. 교육 및 보건	1.24	0.85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87	0.85
28. 기타	1.00	0.85

<부표 8> 모형에 사용된 국산재 - 수입재간 대체(σ_{dm})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1. 농림수산물	0.5	0.05	0.1
2. 광산물	0.05		0.01
3. 식음료품	0.5		0.1
4. 섬유·가죽	3.5	10.5	3.5
5. 종이·나무제품	0.05	0.05	0.05
6. 석유·석탄제품	1.3		0.1
7. 화학제품	1		0.125
8. 요업토석제품	0.5		0.1
9. 제1차금속	1.25		0
10. 금속제품	0.5	6.5	3
11. 일반기계	0.65	0.05	9.75
12. 전기 및 전자기기	0.1	0.125	0.1
13. 정밀기기	0.1	0.05	0.1
14. 운송기계	0.45	3	4
15. 기타 제조업제품	0	10.5	0
16. ~ 28. 서비스업	1.94	1.94	1.94

<국문요약>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 · 이명헌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정부의 수출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통해 국산화에 이바지 한다는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197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의 자유무역상황으로 국내생산과 수출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부분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국산화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관세부과와 함께 실시된 관세환급제도는 국내 소비를 억제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에 대해 정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유지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관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보세제도 등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 예로 관세수입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은 약 2%, 일본은 약 0.5%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1년 38.4%로 매우 높다. 이처럼 높은 환급비율은 관세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환급업무가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행정 및 순응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세를 낮추고 환급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후생이 같은 정점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 및 순응 비용을 고려할 경우 관세환급의 축소 또는 폐지와 이에 따른 관세율의 인하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정부가 수출증대에 여전히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관세환급 유지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부의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업체별, 산업별 관세환급 실적에 대해 함께 분석하였다. 총수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총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0.33%이지만 나머지 약 3만여개의 기업들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상위 20개 기업에 비해 높았다.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공업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 음식료품의 관세환급 이용이 두드러졌다. 이는 섬유 및 농산물 관련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섬유 및 가죽제품의 정액환급 이용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정액환급 대상 품목 선정과 함께 관세율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공업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산업은 석유제품으로 전 산업 중에서 관세환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산업으로 전체 환급액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경쟁 원재료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원유 관세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기기 부분품의 경우 환급받은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전체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ITA 협정 등에 의해 무세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무세화 추세는 2004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도 환급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낮은 관세율이 절대

수출액과 관계없이 환급제도의 이용의 낮춤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관련된 사항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다. 이번의 WTO DDA 협상을 위한 관세율 정책을 고려할 때 관세정책이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각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과 함께 관세환급제도 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ffect of Drawback of Custom Duty on Korean Economy

Cheung, Jaeho and Myung-heon Lee

Customs drawback is a system in which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levied on imported raw materials can be refunded after they are incorporated as a part of export goods.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economic effect of customs drawback on Korean economy. The primary reason that we analyze this effect i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Korean government sustains the drawback system, which helps to increase export, on the other side, which yields both an administration and a compliance cost, called social cost.

We compare two policy options: sustaining the current drawback system, or lowering tariff burdens with the discontinuance of the current drawback system.

Without considering the social cost, we find that there is no change in welfare between two policy options. That is, we can say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n incentive to discontinue the current drawback system. However, when we do consider the social cost, the lowering tariff burdens with the discontinuance of the current drawback system might increase our welfare.

In Korea, the proportion of amount of drawback to tariff revenue is 38.2%. Its rat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for example, the rate in U.S. is about 2% and Japan is about 0.5%. Therefore, in Korea, we can say that we are paying much more social cost to sustain the current drawback system. However, if Korean government has an incentive to promote export which drives Korea economy as it believes, and government is imposing more weight on export than other welfare surplus, the sustaining the current drawback system might still optimize government objective.

In Korea, since July 1, 1975, the drawback system was adopted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by removing tariff burden impos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domestic raw materials.

We find that the drawback system could eliminate tariff barriers to input used in export as well as in domestic. Hence, the drawback system might not promote the use of domestic raw materials, but might remove their tariff protections supporting the use of them. The drawback system accompanied by tariffs on output can increase export but it reduces consumers surplus and then make distortion loss. Therefore, the drawback system can be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having a higher weight on export.

<著者略歷>

鄭在皓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Wisconsin-Madison大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李明憲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獨逸 Göttingen大 農業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政策報告書 02-06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2年 12月 28日 印刷

2002年 12月 31日 發行

著者 鄭在皓·李明憲

發行人 宋大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18]-[7171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番地

電話: 2186-2114(代), 팩시밀리: 2186-2179

登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一志社

©韓國租稅研究院 2002

ISBN 89-8191-220-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